
거울프로젝트 3 투자·출연기관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 투자 · 출연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 I. 들어가며	5
■ II.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9
1. 인사·조직분야	10
2. 급여·수당분야	17
3. 예산·회계분야	24
4. 시설물 관리분야	41
5. 공사 분야	46
6.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분야	49
7. 사업자 선정 분야	51
8. 지원금 정산·관리 분야	54
9. 일반사업 분야	57
■ III. 부 록	65
1. 투자출연기관 감사개요	66
2. 기관별 감사보고서	68
서울산업통상진흥원	68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80
서울디자인재단	84
서울여성가족재단	89
서울문화재단	99
서울복지재단	105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승무분야)	115
서울시설관리공단	122
서울신용보증재단	137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145



I 들어가며

본 서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분야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서울시에는 모두 17개의 투자·출연기관이 설립되어 있으며, 각각의 기관마다 복지, 문화, 여성, 경제, 대중교통 등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등 엄격한 법령상 제약을 받고 있는 공무원 조직에 비해 투자·출연기관은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표이사의 전횡에 의한 인사권 남용이나 회계처리과정에서의 부적정한 사례 등이 관행처럼 계속되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8개월여간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인사·조직분야, 급여분야, 예산·회계분야 등 기관 내부적으로 벌어진 많은 부정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책에는 시민들께 밝히기 부끄러운 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야 하고,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본서를 펴내게 되었습니다.

투자·출연기관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을 집행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출연기관 임직원에게는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높은 윤리적 기준이 적용되며, 시민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청렴과 공정의 길은 서울시 공무원과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모두가 함께 가야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본 서를 계기로 이러한 사례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음은 물론 각 기관 내부적으로 부정부패를 더욱 경계하고, 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직을 운영했으면 합니다.

Ⅱ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1. 인사·조직분야
2. 급여·수당분야
3. 예산·회계분야
4. 시설물 관리분야
5. 공사 분야
6.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분야
7. 사업자 선정 분야
8. 지원금 정산·관리 분야
9. 일반사업 분야

거울프로젝트 3
투자·출연기관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1. 인사·조직분야

대표이사, 상임고문 등 채용·운영 부적정

- ❖ 대표이사를 공개채용하기로 했음에도 이와 별도로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특정 헤드헌팅사에 후보자 추천을 구두로 의뢰하여 000을 선정한 후 000으로 하여금 공개모집에 응모토록 하는 방식으로 선발함. 이후, 헤드헌팅사에 근거없이 추천수수료 명목으로 2,530만원을 부당 지급
 - 대표이사(사장) 채용 방법 및 기준을 정비토록 하고 서울시 00과 기관경고

- ❖ 계약이 만료된 00무역관 수석관장 000을 직제에도 없는 ‘자문역’으로 특별채용하고 특별한 과제부여 없이 매월 530만원씩 총 4,770만원 지급하는가 하면, 정년퇴임한 00본부장 000을 ‘자문역’으로 특별채용하여 매월 530만원씩 총 6,360만원 지급
 -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본부장, 팀장, 담당) 문책

- ❖ 상임고문이 상시 근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 역할수행이나 업무실적도 없는데도, 상임고문을 위촉·운영하면서 고문료 등으로 각각 3,9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씩 총 2억5,350만원 부당지급
 - 상임고문 폐지, 퇴직금 환수, 본부장 경고조치

- ❖ 이사장 방침으로 비상근 자문위원을 위촉·운영하면서 월 1~2회 이사장과 상담하는 외에 특별한 역할 수행이나 업무실적이 없음에도 자문료 명목으로 월 3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27백만원 부당지급
 - 비상근 자문위원 운용 재검토

대표이사의 지인 등 특정한 부당 채용

- ❖ 직제에도 없는 00팀장(일반3급)을 공개채용하면서 자격 기준을 12년 이상 경력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채용공고한 후, 대표이사의 전 근무지에서 함께 근무한 000을 채용하거나, 직제에 없는 대표이사 기획담당보좌관을 임의로 만들어 채용절차도 밟지 않고 000을 특별채용
 - 관련자(대표이사, 본부장, 팀장, 담당) 문책

❖ 면접시 대표이사가 최고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대표이사 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한 2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해당분야 경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방침으로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부당하게 전환

○ 관련자(대표이사, 본부장, 팀장, 담당) 문책

❖ 사장 운전원을 채용하면서 공사 계약직원 운영관리내규에 맞지 않게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없는 자(고향친구의 아들)를 부당하게 채용하고, '차량업무'만을 수행토록 계약한 사장 운전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110일간) 되었음에도 계약해지하지 않고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업무와 무관한 현장업무에 활용하고, 운전원 보수에 해당되는 급여 9,425,310원을 부당지급

○ 급여차액 환수, 담당직원, 팀장, 본부장 경고조치

❖ 00팀에서 전문계약직 C급(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을 일반직 3급(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규정에도 없는 '000 전문회사에서 총괄 경력 10년 이상인자'라는 자격기준을 임의로 만들어 부당채용

○ 특정인을 부당 채용한 담당, 팀장, 본부장 문책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등 부적정하게 채용

❖ 센터장 지원자격을 000 분야 15년 이상 경력자로 한정하였음에도,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000을 센터장으로 채용하는가 하면,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 3월 선고를 받고 복역후 출소한 자를 신원조회 결과 '이상없음'으로 통보받고(검찰에서 수형자료관리 시스템에 미입력) 0000부장으로 채용

○ 허위경력 제출자 면직조치, 임용결격자 당연퇴직 처리, 담당직원 징계

❖ 이미 근무상한연령(60세)이 초과된 65세인 자를 000센터장으로 채용하여 68세까지 매년 갱신하여 고용하고, 계약직 직원을 인사발령도 하지 않고 근무토록 하다가 나중에 계약기간을 소급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채용절차를 부당하게 임의로 운영

○ 관련자(대표이사, 본부장, 팀장, 담당) 문책 및 000센터장 채용계약 해지

- ❖ '00시설 보조금의 합리적 지원기준' 연구에 필요한 외부 A급 공동연구원을 채용하면서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학사학위 소지자를 채용하고 A급(대학조교수)에 해당되는 인건비 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등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격 미달자 4명을 채용하고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지급
 - 연구개발 사업의 정원외인력은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주의조치
- ❖ 2008. 1월 '000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평가'에 필요한 위촉연구원을 채용하면서 해당 자격기준 부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지 않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만으로 위촉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56명 채용
 - 연구개발 사업의 정원외인력은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주의조치

공개모집 절차 없이 부당하게 특별채용

- ❖ 2008. 1월 '000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평가' 사업에 필요한 연구보조원을 채용하면서 연구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별도 모집공고 없이 재단의 다른 연구에 참여한 적이 있는 연구원을 채용하는 등 위촉연구원 11명을 공고절차 없이 채용
 - 연구개발 사업의 정원외인력은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주의조치
- ❖ 총 23회 63명의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아무런 사유없이 비공개 특별채용하였을 뿐 아니라 인사위원회 의결도 받지않고 대표이사 방침만으로 10회 26명(채용인원 대비 41.2%)을 채용
 - 관련자 징계 및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전형관리 개선
- ❖ '09년~'12년도까지 총 415명의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30%인 124명은 특별한 사유 및 공고 절차 없이 단지 고용부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특별채용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훼손
 - 경력직원 및 계약직 채용시 관련 규정 준수
- ❖ 초빙연구원을 채용하면서 공개모집 등의 절차 없이 채용하고, 급여를 2회분할(사업 착수시 50%, 완료시 50%) 또는 연말에 일괄 지급하는 등 총 69회 101,969천원을 규정에 맞지않게 지급
 - 대표이사 경고 및 市 주관부서는 인력관리 철저

근무성적평정 등 승진인사 부적정

- ❖ 정기근무평정(4회)을 실시하면서 대표이사 방침으로 규정에도 없는 대표이사 가점(5점)을 신설하고, 평가자별 평정비율을 임의로 변경하여 적용하였으며, 일반직 4급의 근무평정 배분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고 2명인 기능직은 전원 A등급으로 평가하는 등 전 직급 및 직종에서 근무평정 배분기준을 준수하지 않음
 - 근무평정제도를 임의로 변경 운영한 대표이사 경고
- ❖ 대표이사 방침으로 승진가능인원을 초과하여 총 9명을 부당 승진임용하고, 사업계약직 직원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승진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총 14명의 사업계약직을 승진임용하고 기본연봉을 인상하여 지급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본부장, 팀장, 담당 경징계) 문책
-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임의로 교육훈련평정점(10%)를 제외한 채 근무성적 평정점 60%, 경력평정점 30%, 가감평정점 10%를 기준으로 변형하여 작성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 6명을 승진키로 의결하여 추천하였음에도 대표이사가 1명을 임의로 추가하여 7명을 승진임용
 -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대표이사, 본부장, 팀장) 문책
- ❖ 근무성적 정기평정은 인사규정 제38조 및 근무성적 등 평정내규에 따라 6월, 12월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하여야 함에도, 근무성적 평정기간을 임의적으로 1개월 단축하여 5월 기준(2011.1.1~5.31)으로 실시
 -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대표이사, 본부장, 팀장) 문책
- ❖ 대표이사 방침으로 「승진제도 시행에 관한 내규」를 「인사규정」과 다르게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서열을 심의·의결한 후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최종 승진자를 임용”하도록 개정하여, 5명을 정기 승진시키면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된 최종 승진서열 4위를 배제하고 10위를 승진임용 하는 등 대표이사 의사에 따라 승진임용
 - 승진제도 시행에 관한 내규 개정, 업무 관련자 문책, 재단 기관경고
- ❖ 재단 「인사규정」 개정으로 7급→6급으로의 최저 승진소요기간이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었음에도 근무평정 반영기간에 관한 내규를 개정하지 않아 승진심사대상자 명부 작성 시 다른 직급과 동일하게 최근 3년간의 근무평정 성적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부적정하게 운용
 - 승진제도 시행에 관한 내규 개정, 업무 관련자 문책, 재단 기관경고

❖ 승진 임용은 인사규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대비 결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인사처에서는 '09.4.1. 일반직 5급을 결원이 없는데도 7명 승진시키는 등 5회에 걸쳐 32명을 결원이 없는데도 승진 임용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부당하게 정원을 증원하는 등 인력운용 부적정

❖ 직제 및 정원규정에서 위임되지 않은 「초빙연구원 임용내규」 및 「위촉연구원 등 임용내규」를 대표이사 방침으로 제정하여, 비정규직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고, 인건비(연평균 3억원 상당)는 각 사업비나 기본경비에 편성하여 부당하게 집행

○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한 대표이사 경고, 市 주관부서는 인력관리 철저

❖ 수탁사업 수행 등을 위해 채용한 3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서울시 승인 및 이사회 의결 등 없이 대표이사 방침으로 '사업지원직'이라는 별도직군(정원 45명)을 무단 신설하고 채용 당시 업무분야와 무관한 업무에 배치하여 사실상 일반직으로 운용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본부장, 팀장, 담당) 문책

❖ 특수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채용한 전문직은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토록 하여야 함에도, 전문직 총 20명 중 10명을 당초 채용시 전문분야와 무관한 보직에 임용하고, 대표이사 방침으로 '전문직 재계약 업무처리지침 개선안'을 수립하여 직제 및 정원규정, 전문직관리규정을 위반하면서 일반직화하여 운용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본부장, 팀장, 담당) 문책

❖ 수탁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계약직 4명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6월~1년 연장하고, 계약직 4명을 정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신규채용인원을 산정하여 정원초과된 3명을 신규채용

○ 대표이사 경고 및 市 주관부서는 인력관리 철저

기타 지적사항

- ❖ 정규직원(3급 1명)을 공개채용하면서 응시자 6명에 대해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거쳐 000이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음에도, 내부위원 2명의 면접 채점표를 수정하여 응시자 전원을 탈락시키고, 재채용 공고를 하여 직원 1명을 부적정하게 채용
 - 대표이사 경고 및 인력채용시 재단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 준수

- ❖ 전산경력직원(3급)을 채용하면서 당시 일반직원 3급 현원이 정원보다 2명 초과되어 채용이 불가한데도 이사장 방침으로 채용계획을 세우고, 인사규정에서 정한 3급 채용보다 과도하게 자격요건을 설정한 결과, 응시자 6명 중 5명이 자격요건 미달자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전원 면접을 실시한 후 이사회 승인없이 채용
 - 경력직원 및 계약직 채용시 관련 규정 준수

- ❖ 특정직에서 일반직 전환시 정원의 범위내에서 전환하고, 다면평가는 10명의 평가위원 점수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야 함에도 특정직(기술직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일반(토목·건축) 4~6급의 결원이 2명인데도 6명을 선발하는 등 정원과 관계없이 전환하고, 다면평가를 기준없이 부적정하게 운영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자 문책

- ❖ 징계사유에 대한 시효규정 미비로 징계책임에 시간적 제약이 없어 직원 신분상 불안정 상태 지속
 - 징계사유별로 징계처분의 필요성과 직원의 신분상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 징계시효 규정 마련

- ❖ 인사위원회가 내부위원만으로 구성되어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미흡하고, 직원의 채용, 승진 등 주요 인사사항에 대한 심의기능이 없어 이사장의 인사 전횡 우려
 -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고, 직원의 채용, 승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기능 부여

거울프로젝트 3
투자·출연기관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2. 급여·수당분야

편법으로 부당한 급여 인상 및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

- ❖ 임직원 기본급 산정시 서울시에서 총액 2% 범위 내에서 기본급 2.3%를 인상하는 것으로 승인하였음에도, 전년도 기본급보다 3.74% 높게 개정된 보수규정 기본급표에 2.3%를 추가로 인상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총 6.19% 편법 인상
 - 편법 인상한 관련자(본부장, 팀장, 담당) 문책 및 부당급여 인상분 삭감 검토
- ❖ 서울시에서 2009년도 예산승인시 인건비를 동결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방침으로 1~4급 임직원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한 후, 연봉제 취지에 맞지않게 매년 1%씩 기본급을 인상하는 연차급 신설을 협약하고 보수규정시행내규 개정 후 소급 시행하는 방법으로 급여 편법 인상
 - 관련자(본부장, 팀장, 담당) 문책 및 보수규정 개정
- ❖ 출연기관 대표이사는 매년 서울시장과 체결하는 경영성과계약에 따라 기본연봉에 제수당 및 금전적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부가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가족수당, 연차수당, 선택적복지수당 등을 추가로 부당지급
 - 대표이사 경고 및 관련자 문책, 부당지급한 수당 환수
- ❖ 재단 보수규정에는 학력에 따라 보수를 차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특정인의 연봉을 우대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방침에 의거 석·박사 학위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연봉 총 40,723천원 과다지급
 - 대표이사 '경고' 조치 및 해당자 재임용 제외조치, 담당직원 '징계' 조치

근거없이 임의로 성과급 신설

- ❖ 이사장 방침으로 전직원(203명)에 대하여 특별한 공적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규직 1인당 1,000천원, 계약직 1인당 500천원씩 총 178,000천원을 지급하는 등 5년간 직원격려금 명목으로 총 1,343,786천원을 부당하게 지급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및 예산승인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市 주관부서 기관경고

- ❖ 특별성과급은 사업비 절감, 수익증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근거 없이 '클린이행성과급'을 복리비 예산으로 편성하고, 징계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전 직원에게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등 7년간 총 2,230,330천원을 부당지급
 - 지급 근거가 없는 클린이행성과급 폐지 및 관련자 문책

- ❖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을 통해 시간외 근무수당 월 최대인정분 50시간 중 20시간을 재원으로 개인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연 2회 타겟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하고, 1,682,607천원 상당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실제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인센티브로 부당 지급
 - 타겟인센티브 제도 폐지, 시간외 근무수당은 관리자를 제외한 실제 시간외 근무자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부당지급한 금액 환수 검토 및 관련자 문책

- ❖ 자기개발비(120만원)를 신설하여 전 직원에게 지급하다가 이를 기본연봉에 편입시켜 부당하게 연봉을 4.8% 인상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재원 중 일정부분을 성과연봉재원으로 부당하게 전환하여 시간외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927백만원 부적정 지급
 - 성과연봉으로 부당 전환된 시간외 근무수당 재원 재편성 및 관련자 문책

성과급 지급 기준 미준수

- ❖ 개인성과급 지급시 등급별 강제인원 배분없이 지급대상자 98%에게 S등급을 부여하는 등 단순 나눠먹기식으로 개인성과급을 부당지급하거나 평가등급기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을 50%를 적용하고, 기관성과급 지급시 개인의 근무성적 및 성과와는 무관하게 전 직원 동일하게 개인별로 기준월봉의 220%를 지급하는 등 부적정 운영
 - 기관 경고조치 및 성과급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개선요구

- ❖ 서울시 및 다른 투자·출연기관에서는 2006년도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는 봉급조정수당을 2011년까지 계속 지급하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집행기준에 의거 2010년부터 투자기관에 지급하지 않는 개인성과급을 부당 지급
 - 市 주무부서에 보수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 대표이사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성과급에 포함하지 않아야 할 부가월봉(1,666천원)을 포함하여 3,987천원을 과다 지급하고,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닌 교육훈련 해외파견 중인 직원에게 성과급 6,276천원 부당 지급

○ 관련자(담당) 문책 및 과다 지급된 성과급 환수

❖ 연도 중 입사자 등의 기관성과급 산정시 월할 계산된 금액을 반영해야 하는데도 월할 계산하는 대신 전액을 지급총액에 반영하고, 근무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닌 직원에게 성과급 부당지급

○ 관련자(담당 경징계) 문책, 부당 지급한 기관성과급 환수,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성과급 제도를 내규로 규정 마련 통보, 출연기관 개인성과급 폐지(투자기관은 2010년 폐지) 등 성과급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통보

각종 수당 등 지급 부적정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주 40시간의 사업장은 부가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정의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음에도, 174시간으로 적용하거나, 「복무규정」에서 일요일외에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경우 월 근무시간은 226시간이 되므로 시간당 통상 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26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174~209시간을 적용하여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과다 지급

○ 재단 기관경고, 「재단 보수규정」 개정 조치, 市 주관부서 '기관주의' 조치

❖ 관리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재단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2급 4명에게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부당 지급하고, 대표이사 방침으로 무급휴일인 토요일까지 임의로 휴일근무수당 지급

○ 대표이사 경고 및 휴일근무수당 환수

❖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뿐 대체휴무를 실시할 근거가 없음에도 대표이사 방침으로 대체휴무를 부적정하게 실시하고, 대체휴무시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지 않고, 개인의 필요에 따라 사실상 연가로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부당 사용

○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대체휴무를 실시토록 한 대표이사 경고

- ❖ 반일연가(09:00~14:00)를 사용하고도 12:39에 조기출근하였다는 이유로 시간외 근무 51분을 인정하고, 근무상황부에 휴가 등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초과근무확인대장을 작성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급

 - 부당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 전액 환수 및 업무관련자 문책

- ❖ 대표이사의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월평균 보수는 기본연봉과 성과급을 합한 금액을 재임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하여야 함에도, 기본연봉에 직책수당을 포함한 평균연봉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산출하여 부당지급

 - 과다 지급된 수당·퇴직금 (7,218천원) 환수 조치

- ❖ 특별교육프로그램(공로연수)에 참여한 퇴직예정자에게는 재단 보수규정에 따라 직책급, 시간외근무수당 및 타겟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직책급, 시간외근무수당 등 명목으로 18,207천원을 부당 지급

 - 관련자(본부장, 팀장, 담당) 문책 및 부당지급한 금액 환수 검토

- ❖ 가족수당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에 대하여 지급이 가능함에도,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모(母)의 가족수당 등을 부당 지급

 - 가족수당(4,559천원) 환수 조치 및 업무관련자 경고

- ❖ 강사수당은 재단 「예산집행기준」 및 「교육프로그램 내규」에 의거 등급별 강의시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에도, 강사료 산정을 잘못 하여 총 172명에게 30,845천원의 강사료를 과다 지급

 - 강사료를 과다 지급한 관련자(부장, 담당) 문책

- ❖ 각종 자문회의 참석수당은 20만원이며 서면인 경우 10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음에도, 서면자문을 실시하고도 각각 20만원 자문료 지급

 - 수당지급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기타 지적사항

- ❖ 대표이사 등 총 17명에 대해 국외여행경비 집행시 직급별, 국가별 적용기준을 따르지 않아 총 4,161천원을 과다지급하고, 여행경비 총 48,971천원을 단위사업비인 '000 전시프로그램 사업비'에서 전용절차 없이 부당집행
 - 부당지급한 국외여행경비 환수, 관련자 문책(주의)

- ❖ 서울시 000담당관에서 0000지원사업을 위탁함에 따라 변리사를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하면서 특허청 지식센터운영지침에 의거 변리사 연봉은 55백만원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수탁 기관의 요구에 따라 60백만원으로 부당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00기관 연봉심사위원회에서는 서울시에서 통보한 연봉을 초과하여 의결한 후 계약 체결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 ❖ 수탁사업의 직접 추진을 위하여 변리사 등 계약직 9명(변리사 5명, 컨설턴트 4명)을 신규 채용하였음에도, 선행기술 조사, 명세서 작성 등 명목으로 외부용역을 의뢰하여 155백만원 상당의 예산낭비 초래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 ❖ 연봉제 직원의 연봉은 대상 직원의 업무성과를 반영하여 차등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기본급을 기준급, 직능급, 직무급 등 3개 분야로 구분한 후 기준급은 근무연수, 직능급 및 직무급은 직급 및 직위만을 기준으로 업무성과와 관계없이 연봉액이 결정되도록 설계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 ❖ 특정업무수행경비로 매월 80,000원씩 지급하면서, 대민활동비도 4급이하 전직원에게 매월 50,000원씩 중복 지급
 - 중복 지급한 대민활동비 환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

- ❖ 직원 보수와 직결되는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이사장에게 포괄 위임하여 이사장의 전횡이 우려되고(인사규정, 보수규정), '이사장이 인정하는' 기업체 근무경력은 '법인'이면 업종, 기업규모 등과 관계없이 근무경력의 50%를 인정(경력 및 호봉사정기준 별표1 제3호)하는 등 경력인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결여
 -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보수규정 등에서 직접 규정하고, 경력인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합리적인 경력인정 기준 마련

❖ 행정안전부 「201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심사수당은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회의안건 검토·자료수집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투자·출연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에게 관행적으로 참석수당 지급

○ 관련자 문책, 부적정하게 지급된 수당 회수

❖ 주택대여자금을 대여하면서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무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원에게 규정상 대여대상을 대여일 현재 무주택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택대여자금 1억원을 부당 대여하거나, 기존 주택보유사실을 숨기고 주택구입자금 대어를 신청한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 1억원을 부당하게 대여

○ 관련자 문책, 부적정하게 지급된 주택대여자금 1억원 회수

거울프로젝트 3
투자·출연기관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3. 예산·회계분야

대표이사가 업무추진비 등 사적 사용

- ❖ 대표이사가 본인과 부인의 건강검진비용을 복리후생비에서 사용하고, 호텔 멤버십 카드 연회비 지급 및 업무와 무관한 전 근무지 직원 부친상 화환비용 등으로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 관련자(대표이사, 팀장 등) 문책 및 사적사용 금액 환수

- ❖ 대표이사가 민간기업 사장에게 가방을 구입(248천원)하여 전달하는 등 개인적인 선물비로 7건 2,498천원을 사용하고, 00재단 창립3주년 기념행사 티켓(300천원)을 구매하는 등 민간 단체 창립총회 등에 개인적 후원금으로 37건 4,660천원 부당 집행
 - 관련자(대표이사, 팀장 등) 문책 및 사적사용 금액 환수

- ❖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00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식비를 집행하는 등 휴일 및 자택부근 등에서 개인적인 식사비로 법인카드 사용
 - 관련자(대표이사, 팀장 등) 문책 및 사적사용 금액 환수

- ❖ 대표이사가 교통사고 치료차 병가로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도 지인과의 식사비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153천원을 집행하는 등 총 22건 2,822천원을 사적으로 집행하고, 사무국장은 새벽 01:03에 지인과 식사비 명목으로 153천원을 집행하는 등 2명, 총 5건 업무추진비 423천원을 사적으로 집행
 - 관련자(대표이사, 팀장 등) 문책 및 사적사용 금액 환수

심야시간대 등 법인카드 부당 사용

- ❖ 이사가 업무협의 명목으로 20:53분 00나룻터에서 125,500원 집행 후 곧이어 새벽 00:46분 00주점에서 162,000원 집행하고, 같은 날 새벽 02:12 00주점에서 51,000원을 집행하는 등 심야시간(23:00이후)에 2차 또는 3차에 걸쳐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
 - 관련자 문책,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 환수

- ❖ 00본부장이 출퇴근시 주유비로 총 1,598천원을 수탁사업비에서 사용하고, 00본부장이 중구 소재 주점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160천원을 사용하는 등 총 50명이 주점(호프집 등) 등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준(23:00이후 사용금지)에 맞지 않게 총 197건 18,158천원 부적정 사용

 - 관련자 문책,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 환수

- ❖ 서울시 00팀장이 00기관에서 파견나온 팀장의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자신의 자택 근처 단란주점 등에서 고교동창 및 인척 등과 음주 및 식사 등 사적 용도로 7,026천원을 사용하고 위 법인카드를 결제

 - 관련자 문책 및 사적사용금액 환수, 서울시 팀장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 ❖ 00창작촌에서는 00:07 서대문구 소재 주점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14만원을 사용하고, 00페스티벌 비상근시스템인 예술감독이 법인카드를 상시 소지하면서 03:18 자택부근 주점에서 업무와 관련없이 29만원을 결제하고 축제 관계자 회의비용으로 처리

 - 관련자 문책 및 사적사용금액 환수

- ❖ 市 주관부서 팀장, 담당자와 업무추진 간담회 후 23:22 호프집 69천원, 익일 01:28 000그릴에서 양주 등을 취식하고 그 대금 1,180천원 등 총 1,249천원을 대행사업비에서 집행하고, 심야시간 택시 이용 11회 196천원, 음식점이용 14회 543천원 등 총 739천원 사적 용도 사용

 - 사적사용한 금액 환수 및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자 등 문책

- ❖ '09.1월~'11.4월중 787건 76,790천원 상당을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사용내역을 담당자가 별도 관리하고 사용목적, 사용자 등의 증빙서류를 미첨부하여 회계처리하였으며, 준공식 행사 간담회 후 식사비 1,176천원을 3회로 분할하는 등 총 13건 11,250천원을 부당하게 분할 결제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

 - 사적사용한 금액 환수 및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자 등 문책

- ❖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하면서 주유비 5건 377,600원을 수탁사업비에서 집행하거나, 퇴근시 택시를 이용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총 7건 101,500원을 사적으로 사용

 - 사적사용한 금액 환수 및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자 등 문책

❖ 심야시간대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사용목적, 집행대상 등을 명확히 하지 않은채 단순히 업무관련자 접대비 등으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11건 1,137,300원을 부당집행

○ 법인카드 부당사용자 등 문책

❖ 용산구 ○○장어(일반음식)에서 간담회비로 1,080,000원을 사용하고, 2회에 걸쳐 분할 결제하거나, 간담회 참석자 5명이 358,000원(1인당 71,600원)을 사용하여 1인당 접대단가 (40,000원)를 초과하였음에도 초과집행사유를 명기하지 않음

○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관련자 경고조치 및 재발방지 주의 촉구

촉·부의금품 부당 지급

❖ 대표이사가 업무연관이 없는 00예술단 대표의 장인사망에 조의금을 지출하고, 000 교수 정년퇴임 축하화분비용으로 집행하는 등 승진·영전, 출판기념회 및 학술대회 축하 등 업무 관련 없는 자에게 부당 집행하였으며, 00원장이 직원 형부상에 조의금(50,000원)을 지출하는 등 촉·부의금품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집행

○ 관련자(대표이사, 팀장 등) 문책 및 사적사용 금액 환수

❖ 대표이사가 00그룹 000실장에게 취임축하화분을 전달하는 등 유관기관의 장이 아닌 자의 승진·영전축하, 전시회, 민간단체 창립총회 등에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하고, 00원장은 00재단 창립기념에 축하화환을 전달하고 직원 자녀출산, 유관기관 세미나 등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 관련자(대표이사, 팀장 등) 문책 및 사적사용 금액 환수

❖ 대표이사가 업무연관이 없는 000법률사무소 000 부친상에 조의금 100천원을 지출하는 등 업무관련 없는 자에게 부당하게 집행

○ 관련자(대표이사, 팀장 등) 문책 및 사적사용 금액 환수

❖ 대표이사가 참기름세트(14박스, 77만원)를 구입하여 비상근 이사 및 감사 14명에게 추석 명절선물로 지급하는 등 명절선물 등으로 663만원 부적절 집행

○ 관련자(대표이사, 팀장 등) 문책 및 사적사용 금액 환수

- ❖ 꽃감을 구입하여 재단 명의로 유관기관 및 단체에 설 선물로 전달하는 등 명절 선물구입비로 부당 집행하고, 00학교 후원의 밤 행사에 재단 명의로 후원금(1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신고·등록되지 않은 후원행사 등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 관련자(대표이사, 팀장 등) 문책 및 사적사용 금액 환수

허위 회계서류 작성 등

- ❖ 흥인동 소재 식당에서 내부직원 간담회를 실시하고도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서류를 작성하여 수탁사업부대경비에서 집행하고, 직원회식 비용을 대외기관 회의비에서 집행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
 - 관련자 문책 및 사적사용 금액 환수
- ❖ 직원들과의 식사대금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유관기관 직원과 업무협의 명목으로 108천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 재단 운영비를 직원 격려 비용으로 부적정하게 집행
 - 간담회 등 접대성 경비 관련규정 준수 철저
- ❖ 회의비 및 운영비 총 39건 32,764천원을 집행하면서 특별한 이유없이 88건으로 분할 결제하고 집행내역 미기재 등으로 사용용도를 불명확하게 하는가 하면 1인당 기준단가 4만원 초과, 증빙서류에 주된 상대방 인적사항 미기재 등 부적정하게 회계 처리
 - 사적사용한 금액 환수 및 업무추진비·회의비 등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
- ❖ 회의비 예산으로 직원생일 축하케익을 구입하는가 하면 회의 명목으로 호프집에서 사용하는 등 회의비 예산을 직원 격려, 회식 등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주점에서 사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집행
 -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금액 환수
- ❖ 문화상품권 60매 및 USB 15개를 구매하고도 사실과 다르게 크레파스 등 5종을 구매한 것으로 회계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
 -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및 관련자 문책

특정업체와 부당계약 체결로 특혜 제공

- ❖ 대표이사 지시로 00센터 인테리어 공사를 대표이사의 친구가 사장으로 있는 00업체에 의뢰하여 수의계약으로 시공하는가 하면, 대표이사가 전시기획 분야(70백만원 상당) 용역을 자신이 잘 아는 000에게 맡기도록 지시함
 - 대표이사 '경고', 市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재임용 제외 조치
- ❖ 市 직원으로부터 다큐멘터리 제작을 00미디어에서 수행토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00미디어가 1억1천만원의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혜 제공
 -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팀장, 담당 문책
- ❖ 입찰에 참가한 3개 업체에 대하여 참가자격 요건(등록여부)의 적정여부 검토없이 무등록 업체를 포함한 3개 업체 모두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상정하고, 원장이 추천하였다는 이유로 무등록업체인 "0000"의 평가점수를 가장 높게 부여하여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고 부당하게 계약 체결
 - 해당업체 고발 검토, 관련자 징계 조치
- ❖ 용역계약의 상대방이 부도, 파산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필요시 새로운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함에도, 자회사격인 다른 업체가 용역을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묵인한 후 실제 매입대행업무를 완수하지 않는 원계약자에게 부적정하게 용역비를 지급
 - 정당한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가 용역을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

부당한 수의계약으로 예산낭비 초래

-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용역·물품구매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에 의한 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정금액 851백만원인 행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총 17건 2,144백만원을 수의계약하여 경쟁입찰 대비 207백만원 예산 낭비
 - 계약발주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절차 수행

- ❖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 전문공사 발주시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업체와 공사를 도급하여야 함에도 '09~'11년까지 총 9건(해당금액:137백만원)의 전문공사를 미등록 업체와 부적정하게 수의계약

 - 계약발주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절차 수행

- ❖ 계약체결 전 '아이디어 상상체험관' 등 6건(1,934백만원)을 사전에 00기획 외 2개 업체에 행사준비 작업을 시킨 후 수의계약 체결하여 경쟁입찰 대비(낙찰하한율 87.745% 적용시) 237백만원 예산낭비 초래

 - 계약발주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절차 수행

- ❖ 추정가격이 22,005천원인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2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수의계약

 - 계약발주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절차 수행

- ❖ 홍보물 인쇄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비가 77,748천원이므로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발주하여야 하는데도, 서울시에서 계약상대자를 지정하여 협조요청하였다는 사유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여 16,326천원 예산낭비

 - 계약발주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업무 적정 처리

- ❖ 조형물 설계, 제작(임대) 운영사업 제안공모(추정가격 : 254,000천원)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공고한 후 개찰결과 유찰되었음에도 20일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재공고 등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재공고 입찰에 부칠 시간이 없다는 사유로 최초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에 각각 사업을 분리하여 부적정하게 수의계약

 -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 ❖ 일반입찰에 의해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지 않고, 상가 광고물을 협약(예정가대비 평균 104%)으로 계약 체결하여 '09~'10년 지하도상가 광고입찰 평균 낙찰률(123.9%) 보다 19.9% 낮게 계약함으로써 3년간 1,042백만원의 세입손실 초래

 - 협약에 의한 계약방법 재검토 및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 문책

- ◆ 지하도상가 벽면, 기둥 등의 광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위탁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市로부터 승인받았다는 이유로 광고물이 계약과 달리 추가 설치되었음에도 변상금(5,819천원) 부과 등 미조치
 - 추가 설치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등 조치 및 담당자 문책

동일사업 분할 계약으로 회계질서 문란

- ◆ 계약금액 58백만원인 「본점 건물 사인물 설치 용역」을 추진하면서, 옥외 사인물 설치용역(계약금액 29백만원)과 옥내 사인물 설치 용역(계약금액 29백만원)으로 분리발주한 후 2건 모두 동일한 업체와 수의계약
 - 향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 발주하도록 주의 조치
- ◆ 「매뉴얼 제작 및 보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일사업을 2건으로 분리하여 일체의 과업지시 및 산출내역 없이 특정인과 부당 수의계약
 - 대표이사 경고 및 관련자 문책
- ◆ 00센터 리모델링 등 공사는 동일구조물 공사로 총 금액이 51백만원이므로 공개경쟁 입찰하여야 함에도 6건으로 분할하여 100% 견적금액으로 수의계약함으로써 통합발주에 의한 일반 공개경쟁 대비 6백만원을 낭비하는 등 5건의 동일공사를 17건으로 분할 발주하여 총 16백만원 예산 낭비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 ◆ 재단직원 채용을 위한 대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서류전형, 필기 및 면접시험(일반운영비 37백만원)은 단일사업으로 20백만원 이상인 경우이므로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실시하여야 하나, 서류전형과 필기 및 면접시험을 분리하여 00업체 외 1개 업체와 각각 수의계약 체결
 - 부당 수의계약한 관련자 문책
- ◆ 홍보물 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이므로 전자공개수의계약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국/영문, 노트/달력, 리플렛/도록’ 등으로 분리하여 20백만원 이하로 나누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 부당 수의계약한 관련자 문책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 ❖ 사장이 KBS '체험 삶의 현장'에 출연하면서 공사의 업무와 관련없는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1천1백만원을 공사 예산으로 집행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동 프로그램에 자막광고를 하면서 광고비 예산이 부족하자, 협찬금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유통개선적립금에서 5천만원 부당 집행
 - 담당직원, 팀장, 본부장 경고조치

- ❖ 퇴사직원과의 회식비(155천원)를 인건비에서 사용하는 등 2010년 예산집행 잔액 2,674천원(인건비 2,234천원, 사업비 440천원)을 경상경비로 부당하게 전용하여 사용
 - 회계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 ❖ 시설장비유지비(전산관리유지비 등)는 건물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통신시설 등 장비유지 관리의 용역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노후전산장비 교체 유지보수 평가수당(1,800천원)을 전산유지비로 지출하는 등 총 36건 6,041천원의 시설장비유지비를 예산의 목적과 다르게 집행
 - 시설관리용역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관련자 문책

- ❖ 00개발원은 주차료 및 식대 159천원을 회의비에서 집행하고, 업무관련 오찬비용(640천원)을 사업비에서 집행하는 등 예산의 목적과 다르게 부적정 집행
 - 회의비 및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관련자 문책

- ❖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예산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산전용 등 예산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나, 전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그룹웨어 대장관리 고도화 계획 수립' 용역(사업비 17백만원)을 추진하면서 예산의 변경절차 없이 기본경비의 자산취득비로 집행
 - 계약관련 업무절차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 ❖ 00개발원은 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내에 용역직원의 복리후생비(명절선물비, 경조사비, 직원간담회 등)로 연 7,332천원을 편성하였음에도, 시설관리용역 운영비를 별도로 자체예산에 편성하여 용역직원에 대한 경조사비(2건 150천원), 격려비(15건 5,188천원), 식사비(20건 5,977천원) 등으로 총 11,315천원을 부당 집행
 - 예산편성 및 집행을 부적정 처리한 관련자 문책

- ❖ 공무 관련 해외출장시에는 국외여비 등 자체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대표이사의 해외출장비용인 항공료와 숙박비 총 1,300천원을 사업비에서 집행하는 등 총 4명의 해외출장 경비 7,435천원을 사업비에서 부적정하게 집행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시급성이 없다는 사유로 재검토 및 예산 전액(158백만원) 삭감토록 통보된 사업에 대해 예산을 반영하여 발주하는 등 부적정하게 예산 편성 및 집행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자 징계, 팀장 문책

- ❖ 업무추진비를 별도 편성하고서도, 다른 비목(잡비, 판매잡비, 기타 매입부대비, 광고 선전비 등)에 업무추진비로 편성해야 할 예산(접대비, 간담회비, 직원회식비 등)을 편성하여 사실상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예산편성기준 위반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여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토록 통보

- ❖ 광고선전비(홍보활동비)예산 총 86,029천원을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접대비로 집행하는가 하면, 2010년도 홍보활동비 예산이 36백만원임에도 45백만원을 집행
 -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촉구하고 관련자 문책

- ❖ 제주 ○○○ 아트페스티벌 간담회 비용으로 278,000원을 결제하면서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여비교통비에서 집행하는 등 총 6건 1,213,200원을 목적외 사용
 -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계약절차 이행 부적정

- ❖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조례」제23조 등에 따른 예산타당성 검토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보화사업 중복여부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6개 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음
 - 계약관련 업무절차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 ❖ 조사용역사업을 발주하면서 추정금액이 154백만원 이므로 계약규정에서 정한 20일 이상을 공고하여야 하는데도 10일간으로 단축 공고하여 2번 유찰되고 결국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등 5건을 계약규정에서 정한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처리
 - 계약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을 준수하도록 주의조치

- ❖ 지하도상가의 음료자동판매기(10대) 위탁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운영자를 추천으로 선정하여 타 시설의 평균낙찰률(114.1%) 대비 낮은 104.8%로 계약함으로써 8,598천원의 수입손실 초래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자 문책

- ❖ 지하도상가 음료자동판매기를 위탁받은 7명 중 5명은 관할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설치·영업하는가 하면, 4명은 생활보호대상자 등으로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데도 대리인 지정을 부당하게 승인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 소홀
 - 대리인 승인 취소 및 영업신고토록 조치하고, 담당자 문책

용역검수 및 정산 등 부적정으로 사업비 과다 지급

- ❖ ‘전자도서관 구축 정보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을 00업체와 계약체결하여 ’08.5.31일 용역 완료보고를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유 없이 검수를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고 60여일 경과 후 검수조서를 작성하면서 납품완료 일자를 당초 납품일이 아닌 ’08. 8.13로 작성하는 등 부적정하게 검수
 - 검수기간 준수 등 계약관련 업무절차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 ❖ 00업체에 시설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실제 납부한 보험료 등을 확인하지 않고, 월정액으로 지급함으로써 ’10.4~’11.12월까지 보험료, 기타경비 등 46,057천원 과다 지급
 - 용역비 정산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 문책 및 과다 지급된 용역비 환수

- ❖ 설문조사용역을 추진하면서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용역대금 잔금 9,500천원을 부당 지급하고, 컨설팅, 사업계획수립, 평가지표개발 등을 위한 전문가 약정 명목으로 총 57회에 걸쳐 49명의 대학교수 및 타 기관 연구위원에게 산출내역도 없이 총 159,950천원을 부적정 집행

 - 대표이사 경고 및 관련자 문책, 용역사업에 따른 계약시 과업내용 및 비용 산출근거 등 절차이행 준수

- ❖ 5호선 방화역 등 27역의 스크린도어(32,868백만원)가 기관사 출입문 열림시 종합제어반 모니터에 해당정보가 나타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나타나지 않는데도, 이를 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부적정하게 검수

 - 물품검사 및 검수 부당처리자 문책, 시공업체 하자보완 통보

- ❖ 올림픽대로 및 노들길의 미끄럼방지시설이 종방향(진행방향)으로 설계 및 시공(3,880㎡) 되었는데도 시공단가가 비싼 횡방향으로 시공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정산하고, 추가 80㎡를 더 시공한 것으로 정산하여 공사비 31,225천원 과다 지급

 - 과다 지급된 공사비 환수 및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자 문책

- ❖ 본사 및 첨단산업센터 등 7개소에 대한 시설물 용역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근무직원의 출근부, 자격요건 적정여부, 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내역, 장비 및 재료비 사용에 대한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에 대한 정산없이 전체 계약 부기금액 대비 월정액으로 용역대가를 지급함에 따라 402백만원의 금액을 과다하게 지급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및 과다지급된 용역비 환수

- ❖ '서울000연구소 산업정보실 구축공사(계약금액 1,467백만원)' 계약업체인 (주)00정보통신에게 신소재 700개를 납품받으면서 설계단가 대비 저가의 소재를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감액치 않고 14,094천원 과다지급

 - 과다지급액을 업체로부터 환수조치하고 준공을 소홀히 한 관련자 문책

- ❖ 2010년에 이어 2011년도에 서울디자인재단 영문판 홍보리플렛을 추가제작하면서 변경된 12면에 대한 번역료만 지급하여야 함에도, 계약(계약금액 8,100천원)을 체결하면서 전체 30면에 대한 번역료를 지급하여 18면에 대한 번역료 923천원을 과다지급

 - 공사비 등 과다지급액을 환수조치하고 준공 소홀한 관련자 문책

- ❖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용역원가 산정시 이를 계상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부당 계상하여 '09.5월~'11.12월까지 총 8건에 대한 사업소세 5,440천원을 과다 지급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 ❖ 용역대가는 계약상의 금액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에 건물 자산관리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계약상 용역비 외에 '관리업체 직원 식사보조비' 명목으로 총 10,364천원을 부당하게 추가지급
 - 부당하게 추가지급된 비용(10,364천원) 환수 및 관련규정에 의거 업무를 적정 처리토록 조치
- ❖ 공사 수행시 환경보전비, 교통소통대책용역비, 잔토처리 등에 대한 정산을 잘못하여 총 69건 공사비 147,038천원을 과다 지급하고, 총 20건 126,414천원 예산낭비
 - 과다 지급된 공사비(147,038천원) 환수, 계약문서 작성시 교통소통대책비를 정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담당자 문책
- ❖ 청소·경비·시설물관리 업무를 민간위탁(16,255백만원)하면서 용역원의 실제 근무일수, 4대보험 가입여부 등 확인없이 허위 작성된 출근부 등에 의거 용역비를 총 34,154천원 과다 지급하고, 위탁업체가 규정에 맞지 않게 미화원, 경비원 등을 임의채용하였는데도 관리감독 소홀
 - 과다 지급한 용역비(34,154천원) 감액,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자 문책
- ❖ 화장로가스냉각기청소를 총 92회 시행하는 용역계약(116,216천원)을 체결하고서는 69회만 청소하였는데도 일일업무일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92회로 준공처리하여 29,054천원의 용역비 과다지급
 - 과다 지급한 용역비(29,054천원) 환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자 문책

선금 지급 부적정

- ❖ 계약금액 1천만원 미만인 용역계약이나 계약기간이 60일 이하인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48일에 불과한 용역에 대해 계약금액의 50%인 선금 409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4건 980백만원의 선금을 부당하게 지급
 - 선금 지급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 ❖ 선금 지급시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보증증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00신문과 용역계약을 체결(계약금액 74백만원)하고 계약금액의 50%인 선금 37백만원을 지급하면서 이행보증증권을 받지 않음
 - 선금 지급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 ❖ 용역계약(계약금액 6,500백만원)을 체결하면서, 협약서에서 선금 발생이자를 정산하기로 정하였음에도, 행사비를 정산하면서 이미 지급한 선금 30억원에 대해 사업종료시까지 발생한 이자 1,326천원을 계상하지 않음
 - 선금 지급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제안서 평가점수 부당산정

-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 구성은 7명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정성적(주관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반영하여야 함에도, '000운영' 외 186건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하면서 116건은 제안서 평가 위원을 3~6명으로 과소구성하였고, 124건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하고 합산 적용한 결과, 그 중 6건이 협상 적격자 및 협상순위(1,2위 선정 업체)가 뒤바뀌는 경우가 발생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 ❖ 일정금액 이하 정보화사업에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음에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대기업이 입찰하였음에도 이를 무효로 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시에도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소속직원 4명 등 6명만으로 평가하여 대기업과 계약체결
 -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문책
- ❖ 봉안용기 19개 품목 35종에 대해 심사위원 평가(60), 실적 및 신인도(10), 가격(30) 점수를 합산하여 품목별 상위 1~4개 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하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가격점수를 산정토록 입찰 공고하였음에도, 가격점수 산정시 100분의 60으로 산정하지 않고, 입찰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함으로써 25만원 이하 도자기함 등 5개 품목 10종의 납품업체 순위가 바뀌는 등 부적정하게 납품업체 선정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자, 팀장 문책

기타 지적사항

- ❖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시 시스템하자 보수 보증기간을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여, 하자보수기간이 51일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다른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 금액 37,348천원을 중복으로 투자하여 예산낭비
 -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문책

-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추진하면서 전년도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연도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3년동안 매년 특별한 사유없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발주를 계약기간 만료 후로 지연시켜 45~95일간 기존 유지보수업체와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추진 소홀
 -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문책

- ❖ 소속직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강사료 45천원을 지급하는 등 총 845천원의 강사료 부당 지급
 - 부당지급한 강사료 845천원 환수

- ❖ 재단물품을 관리함에 있어 '04년 재단 설립 이후 한 번도 물품 수급계획을 작성하지 않았고, '07년 11월 서울시 종합감사에서 재물조사 미실시에 대해 지적 받았음에도 '10년까지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다가, '11년에 재물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수탁공간을 제외한 부분 조사에 그쳐 총 2,807개의 물품 중 186개 물품(101백만원 상당)의 위치 및 손·망실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물품관리 소홀
 - 물품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 문책

- ❖ 장애인콜택시는 중형승합(2497cc)으로서 차량정비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종합 정비업에 등록된 업체와 계약하여야 함에도 자동차종합정비업이 아닌 소형자동차정비업 (장애인콜택시 정비 불가)에 등록된 업체와 3년에 걸쳐 총 1,820백만원 수의계약(단독응찰로 2회 유찰)하여 차량 정비용역 시행
 - 자동차정비업 작업범위 위반업체 범칙금 부과

❖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재단 「회계규정」 제6조에 따라 회계관계직을 지정 운영하여야 하고,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데도, 별도의 회계관계직 지정 없이 지출, 계약 등 회계업무를 처리하여 왔고, 회계관계직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일반 신원보증 외에 별도의 재정보증 설정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회계업무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저해

○ 회계관직 지정 및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가입 조치

❖ 당초 계약규정 제정('99.6월)시에는 국가계약법령만 있었으나 '05.5월 지방계약법령이 제정되어 '06.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사무 처리시 국가계약법령과 지방 계약법령이 혼용되어 혼선 초래

○ 계약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 관련 예규와 서울시에서 정하는 재무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비

❖ 2010. 9월 게임업체 프로그램 지원사업(지원비용 : 150백만원)을 추진하면서 지원업체에 호환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당초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통하여 호환이 가능한 14개 업체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나 나머지 3개사에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로 호환이 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지원하여 31백만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 2010. 6월 市 직원 000로부터 파리출장시 여행경비 일부(항공료, 숙박비)를 직무관련업체(용역업체의 하도급업체)인 00컴퍼니가 부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 업체에게 000의 여행경비 3,086천원을 부담토록 하고, 2010. 9월에도 000로부터 자신의 상급자인 000 과장의 여행경비 일부를 00컴퍼니가 부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 업체에게 000 과장의 여행경비 3,344천원을 부담토록 함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및 市 직원 문책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현금 지출은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가능하며, 정당한 채주 이외의 예산집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회계규정 및 시행내규에 전도금 교부시 취급 담당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운영하여 상위규정 위배

○ 상위규정에 맞게 자체 회계규정 개정 요구

◈ 간접연구경비(연구비 총액 기준 10% 계상)는 기타 연구 활동 및 연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경비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연구소 회계담당은 연구소장 및 연구실 장에게 연구소 겸직에 대한 보전수당을 지급하고자 '10년도 ○○연구소 운영활동지원비에서 매월 100만 원(소장 600천원, 실장 400천원)씩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원장 방침을 규정에 맞지 않게 수립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토록 함

○ 담당자 문책 및 사적사용분 환수 조치

거울프로젝트 3
투자·출연기관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4. 시설물 관리 분야

사용료, 임대료 등 미부과로 수입손실 초래

- ❖ 00극장에서는 1시간(11:00 ~12:00)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오전시간 사용료 339천원의 25%인 84,750원(부가세 제외)만 부과하는 등 727,150원(부가세 포함)의 대관료를 과소 부과하고, 00센터에서는 조명 등 부대시설 대여료 648천원(부가세 제외)을 부과하지 않는 등 총 1,412,400원(부가세 포함)의 부대시설 대여료를 미부과
 - 대관료 부과업무를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주의 조치, 업무 관련자 문책

- ❖ 지하도상가 무상사용기간 만료('08.9.28)후 市로부터 경비초소(7.45㎡)에 대해 임대료 부과를 통보 받았음에도 경비초소 임대료 14,803천원 미부과
 - 임대료 추징(부과) 및 향후 처리방안 검토

- ❖ 체육시설 사용료(추산액)는 사용허가시 지정 기한까지 납부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행사를 취소해야 하며, 사용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 ○○○주경기장 사용허가시 000(주)에게 추정사용료 2억원을 행사전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허가하고서는 1억원만 징수 후 사용허가
 - 정산 사용료 149백만원 중 차액 49백만원은 현재까지 법인 무재산 및 행방불명 등으로 미징수하여 세입손실 초래
 - ○○○경기장내 공공용지(25㎡)에 실외기, 자판기 등을 무단 설치한 000(주)에 대해 '09.8.17일 시정토록 통보한 후 철거 등 시정하지 않고 계속 무단사용하고 있음에도 변상금 18,704천원 미부과
 - 미납된 사용료 징수방안 강구 및 변상금 부과, 담당자 문책

위탁관리업체 관리감독 소홀 및 특혜 제공

- ❖ 시설위탁운영자가 연수시설을 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지도 않고, 일반인에게 부적정하게 대여 운영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 소홀
- ❖ 수익사업인 커피전문점, 꽃집, 매점 등의 시설에 대해 서울시 승인 없이 00업체와 위·수탁 운영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하였고, 00업체가 식당, 예약실을 계약면적보다 초과 사용하고, 매점을 신규 설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 ❖ 00업체에 식당, 연수실, 웨딩시설 위탁시, 당초 제안한 시설투자(인테리어, 가구교체 등) 비용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추가 투자한 금액(100백만원) 비율에 따른 적정 연장기간이 아닌 업체에서 요청한 2년 연장 요청을 그대로 반영하여 특혜 제공
- ❖ 서울형사회적기업인 00업체에게 건축물 1층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면서 서울시 승인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이후 허가되지 않은 면적을 무단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공유재산의 사용료 징수 및 관리 부적정
 - 대표이사 경고 및 시설물 관리·감독자 중징계
 - 시설물을 무상 임대한 관련자 경고
 - 행정재산 계약기간 연장 재검토 및 서울형사회적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방안 검토(市 주관부서)
- ❖ 식당, 연수실, 웨딩 위·수탁 운영계약서('09.12.31)에 수탁자는 시설 등을 재위탁할 수 없고, 이익배분은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18 대 82(재단:00업체)의 비율로 정산하여야 함에도, 00업체는 웨딩전문업체에 웨딩업무 일체를 재위탁하고 웨딩전문업체에서 수입금을 별도 관리토록 하고 있는데도 방치
- ❖ 대식당, 연수실, 웨딩 위·수탁 운영계약서('09.12.31)에 의하면 웨딩시설물 대관료를 1건당 15만원씩 부과하여야 함에도, 00업체로부터 비수기 웨딩활성화 방안으로 웨딩홀 사용료를 무료로 하겠다는 통보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웨딩대관료 19건 2,850천원의 재단수입 손실 초래
 - 누락된 매출액 수입조치 및 계약위반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

시설물 감독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 문책

- ❖ 위탁시설의 이익배분을 운영계약서에 따라 정산하지 않고, 재단 행사와 워딩업체 매출을 총 매출액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기로 계약을 변경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여 2,010천원의 수입손실 초래
 - 누락된 매출 수입 조치 및 관련자 문책

- ❖ 매점 및 회원 운영계약서에 매월 관리비 및 수수료로 총 매출액의 10%를 지급하도록 계약 하였음에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의로 재단매출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거나, 임의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 손실 초래
 - 누락된 매출 수입 조치 및 관련자 문책

- ❖ 연수시설 위탁업체가 장기투숙자, 예약착오로 인한 객실변경 등을 이유로 총 86건 14,263천원의 사용료를 부당 감면하였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위탁기관 관리·감독 부적정

- ❖ 위탁업체에 필요한 사무기기는 자체 조달하여 사용하도록 운영계약을 하였음에도 위탁업체에서 사용할 문구류를 재단 예산에서 구입하여 지원하는 등 2,282천원의 예산 낭비
 - 시설물 감독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 문책

기타 지적사항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버스도색용 도장시설은 개발제한 구역 내 버스차고지에 설치할 수 없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인 ○○공영차고지 내에 대기배출 시설인 버스도색용 도장시설(144㎡)을 151,110천원의 예산으로 '09.6.26. 설치하여 운영
 - 적합 용도로 용도변경 등 조치하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자 문책

- ❖ 청계천의 복개구조물 및 집수정 등에서 3년간 준설한 총 4,336톤의 하수준설토를 바닥, 지붕 등의 아무런 조치없이 노출된 상태로 청계천 하류의 산책로 및 수로와 연결한 둔치상에 부적정 보관
 -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

- ❖ 市와 별도 협의 및 승인없이 '11.11.2. 이사장 방침으로 기존 주차장관리소 외에 ○○주차장 관리소를 증설하였으며, 잠실 통합전산센터 리모델링(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교체)을 위한 '11년 예산 55,172천원을 통합센터를 본사로 이전하는데 임의 전용하고,
 - 증설 및 이전관련 추가 소요인원 9명을 충원하기 위해 일용직을 채용하여 '11.12~'12.5월 97,650천원 상당의 인건비를 집행하는 등 편법 운영
 - 공영주차장 주차장관리소 증설 운영 재검토(市 주관부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 ❖ 혼잡통행료(2,000원)를 납부하지 않고 통행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市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등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체납률이 37.88%(14,361건, 135,080천원), 30건 이상 상습체납자 24명(총11,760천원)이 발생하여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부합하는 방안 검토 추진(市 주관부서)

- ❖ 공영주차장 월정기주차권 발급시 대중교통 환승,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후 감면하여야 함에도, 주차요금 감면신청자(12,538건, 478,849천원)의 증빙자료 확인없이 감면 처리하였고, 이중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2,258건 68,597천원 감면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자 문책

거울프로젝트 3
투자·출연기관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5. 공사 분야

내부순환도로 집수구 설계 · 시공 부적정

- ❖ 내부순환도로 교면포장 개량사업 설계용역(174백만원)에 포함하여 집수구를 확대 개량하는 설계를 시행하면서, 슬래브의 철근 피복두께가 40mm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조적 안전성 검토나 市 도로관리부서와 협의없이 슬래브 두께 250mm중 최대 140mm를 절취하고 철근을 절단하는 것으로 기준에 맞지 않게 설계하였고, 이 사실을 미리 알았으면서도 준공기한이 도래되었다는 이유로 설계용역을 준공처리
- ❖ 시공 과정에서 설계대로 시공시 철근 절단 등 구조물 훼손이 발생하게 되자 설계변경없이 시공자에게 절취 슬래브 두께만 변경(설계 140mm→변경 40mm)하는 것으로 도면을 작성, 시공토록 지시하고
 - 노출된 철근 위에 몰탈 덧씌우기 후 상부 표면을 방수층없이 시공하여 시공된 몰탈이 구조물에서 분리되어 철근 노출 등이 예상되고
 - 철근 피복두께는 도로교 설계기준(50mm이상)에 못미치는 20~30mm밖에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교량 슬래브 끝부분의 내하력과 내구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 시공된 집수구(480개, 4.84km)는 배수로 바닥보다 20~30mm 높게 돌출 시공됨으로써 집수효율 제고라는 당초 목적 달성없이 예산만 낭비(264백만원)하였음.
- ❖ 또한, 공사구간중 “강변북로~성산램프~홍제램프” 구간은 아스팔트 포장(6회)시 매회 실시하여야 할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않음
 - 구조물 상태평가 및 조치방안 마련(市 주관부서), 추가 시공분은 재설계 · 시공하고, 설계업체 및 책임기술자 부실벌점 부과 및 관련자 문책

홍제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과다 설계 및 공사비 정산 부적정

- ❖ 홍제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마포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공사감독하면서, 당초 설계내역에 조경공과 저수호안공의 조경석 산출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수량이 잘못 산출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 저수호안공의 조경석 쌓기 면적이 증가(4,293㎡)되는 설계변경시, 할증률(15→5%)은 줄이면서 뒷길이와 실제적용은 조정하지 않고 수량을 산출함으로써 8,987톤을 과다 반영하여 255,860천원 예산을 낭비하고,

- 홍제천 우안 자전거도로 옆 조경공 조경석쌓기 구간은 사급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시공자가 관급자재 309톤(8,253천원)을 유용하여 시공하고, 공단은 그대로 준공 처리하였으며
- 과다 설계되어 구매된 관급자재인 조경석 21,603톤은 공사 최대 사용분 15,318톤과 사급자재 대신 유용한 309톤을 인정하더라도 최소한 5,976톤(25톤 덤프트럭 239대분, 168백만원 상당)은 관급자재 수불부 및 납품송장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그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음
- 또한, 세월교 등의 구조물 시공을 위한 거푸집(3,502㎡)은 유로폼으로 시공되었으나, 합판거푸집으로 정산하여 공사비 23,200천원 과다 지급
- 관급자재(조경석) 유용분 및 과다 지급된 합판거푸집 공사비 등 31,453천원 환수
-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은 관급자재(조경석)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는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 및 변상조치 검토

기타 지적사항

- ❖ 지하도상가 출입구 개선공사(7,949백만원)를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위탁받아 공사 감독하면서, '11.6.27일 등 3회의 설계변경시 지하도상가 출입구 캐노피 마감재인 "SST'L 강판설치" 신규비목(5개 출입구, 816.1㎡) 단가를 과다하게 산출(적정 149,764원/㎡ → 설계 306,492원/㎡) 하여 공사비 161,480천원 과다 계상
 - 과다 계상된 공사비(161,480천원) 감액 및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자등 문책
- ❖ 공사원가계산시 노무비는 표준품셈에 의한 노무량에 시중노임단가 등을 적용한 단위당 노무비를 산정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공사 발주하여야 하는데도, '11년 청계천 조경시설 보수공사(172백만원)의 목재면도장 공종의 노무비 단가를 과다계상(4,325원→10,602원/㎡) 하여 14,104천원 예산낭비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자 문책

거울프로젝트 3
투자·출연기관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6.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분야

개인정보 관리 업무 소홀

- ❖ 재단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관리자 페이지를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아니하여 외부에서도 쉽게 접속이 가능하고, 개인정보가 식별 가능한 형태로 관리되어 '12.6월 현재 회원가입자 34,56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오남용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회원 가입시 정보주체의 동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 관리
- ❖ 재단 업무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사용자의 초기 비밀번호를 쉽게 알 수 있는 사원번호(4자리 숫자)로 설정하고 퇴직자 386명(총 퇴직자 535명의 72%)의 ID를 즉시 삭제하지 않는 등 계정관리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 노출 위험 초래
 - 정보화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 시행

정보통신 보안관리 미흡

- ❖ '12.2월 14개 영업점에 설치된 순번대기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유지보수업체에게 영업점별 접근을 허용하고서 '12.6월 감사일 현재까지 회수하지 않고 있는 등 유지보수업체 및 프로그램 개발업체 총 6개 업체에게 필요 이상으로 원격접속 허용 및 권한 회수 조치 미실시
- ❖ '정보시스템 환경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무선랜 환경을 구축하면서 자체 보안대책 수립 및 국가정보원장의 사전보안성 검토없이 시행하고, 무선랜 사용가능 단말기(노트북 등) 통제 등 보안대책이 미흡하여 내부 업무정보가 보안위협에 노출
 - 외부용역업체의 내부시스템 접근 최소화 대책 수립으로 보안 강화
 - 보안대책 수립후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 검토 및 수시 점검 보완
- ❖ 국가중요시설인 공동구의 관리자·점용자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출입목적·인적사항 등을 기록하는 등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함에도, 점용기관이 매분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정기점검을 위해 공동구에 출입한 직원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는 등 '10.1~'12.3월 총 11,130명 중 297명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기록 후 출입한 10,833명 중 948명은 출입목적 등을 미기재 하는 등 보안관리 소홀
 - 안전점검 미실시 기관에 대한 제재방안 강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

거울프로젝트 3
투자·출연기관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7. 사업자 선정분야

공모작품 심사점수 부당산정

- ❖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공모작품 예선심사시에는 심사운영세칙 제13조에 의거 기획력, 연출력 및 기획력, 마케팅 가능성 및 자금력 등 심사항목별 배점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2010년 극장용 장편애니메이션 제작지원(제작비 450백만원) 작품 선정 시 제출된 7편 중 4편을 선정하는 예선심사에서 종합점수를 잘못 계산하여 탈락하여야 할 5위 업체가 3위로 선정되고, 본선심사에서는 위 5위 업체의 작품이 1위로 선정되는 등 부적정하게 산정함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창작공간 입주자 선정 업무처리 부적정

- ❖ 00예술창작센터에서는 '11년도 무용부문 입주작가 선정심사시, 신청자 18명 중 6명이 00학교 출신인데도 심사위원 5명 중 같은 대학 재직교수 2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선정자 총 10명 중 00학교 출신이 4명 선정되는 등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 저해
 - 입주자 선정 시, 심사위원 제척기준 마련 등 심사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인증심의 부적정

- ❖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인증기준에 적합한 시설에 대하여 인증 심의를 하여야 함에도, 현장 실사단 평가결과 4개 대영역 평균이 70점 이하(50,8점)이고 필수항목에서 1점을 받아 인증 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임에도 인증심의회에 상정하여 적정시설로 인증하는 등 보조금(1개소 당 평균 76,568천원) 부당 지원
- ❖ 심의회위원회에서는 현장실사단의 '적정' 의견을 심의회에서 임의로 '부적정'한 것으로 의결하는 등 21개 시설에 대하여 기준에 위배되게 심의함
 - 데이케어센터 인증심의 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한 관련자 경징계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체 선정 부적정

- ❖ 사회복지시설 위탁체(34개소) 신규 및 재위탁 선정을 위한 심사를 하면서 법인 대표 및 이사의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이사가 업무상 횡령혐의로 선고받은 00법인을 부적정하게 위탁운영체로 선정
 -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체 선정 절차 준수 및 위탁체 공모시 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주의 조치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자 선정 부적정

- ❖ 2010~2011년 일자리창출사업 「행복한 여성가게 1+1 프로젝트」사업의 참여자격은 서울시 소재 3인 이하 소규모 여성창업자이어야 함에도, 인천에 사업장을 둔 창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등 15,360천원 부당 지원
- ❖ 프로젝트 참여근로자 6명을 재단에서 직접 고용하고, 소규모 창업자인 것처럼 인건비 (5,980천원)를 프로젝트 사업비에서 부당 지급
- ❖ 1+1프로젝트 운영 명목으로 2명을 계약직(사업지원)으로 채용하면서, 인건비 21,713천원을 기간제 근로자 예산이 아닌 여성창업자에게 지원해야할 프로젝트 사업비에서 부당 지출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거울프로젝트 3
투자·출연기관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8. 지원금 정산·관리 분야

예술지원사업 지원금 정산 및 관리 부적정

- ❖ '08년부터 '11년까지 4년간 총 3,254개 예술지원사업자에게 51,016백만원을 지원하면서 19개 예술지원사업자가 정산기한으로부터 109일 ~ 1,160일이 지나도록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지원금 미정산 상태로 방치
- ❖ '09년부터 '11년까지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08년도 당해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2개 단체를 '09 ~ '11년도 지원사업자로 각각 선정하여 총 176백만원 부당 지원
- ❖ '10년 센터 운영 프로그램 지원사업자가 사업비 정산시 사업 참여자 6명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장비(5,100천원 상당)를 임대하면서 구체적 증빙자료 없이 입금증만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는 등 정산을 소홀히 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 소홀
- ❖ '08년~'11년 기간 동안 지원한 대부분의 예술지원사업의 경우, 보조출연자, 무대·의상 제작자 등은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증빙 없이 지출하였고, 공연장 대관, 통역비, 홍보물 제작 등도 구체적 산출내역 등의 증빙서류 없이 입금증만으로 정산처리 하는 등 정산업무 소홀
 - 정산서 미제출 단체에 대한 지원금 반환, 다른 지원사업 지원 제한 등 적극적 지원금 관리 방안 마련, 지원금 정산 처리요령 등에 대한 직원 교육 및 철저한 관리감독 실시, 미정산단체 부당지원 관련자 문책, 정산관리를 소홀히 한 재단 기관경고

서울○○○축제 추진 부적정

- ❖ ○○○축제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위 ○○○축제를 제안한 '서울○○○축제집행위원회'에 축제를 위탁하기로 하고 6년 연속 ○○○축제를 위탁하여 매년 500~ 680백만원씩 총 3,530백만원 예산 지원. 이로 인해 ○○○ 축제가 집행위원회 위원인 특정연주자 중심으로 진행되어 특정인들의 연주활동 지원창구처럼 되는 등 특혜 제공
- ❖ '06년부터 '11년까지 ○○○축제를 집행위원회에 위탁(대행)하면서 수입금 처리에 대하여 매년 점차적으로 집행위원회에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귀속 약정하여, 재단에서 소요비용을 모두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장권 판매수입 등 5년간 총 1,097,433천원 상당을 사후정산 절차 없이 집행위원회에 귀속시켜 특혜 부여

- ❖ ○○○축제를 대행하는 공연기획사가 기획사 자체 공연사업비 15,991천원을 ○○○축제 사업비에서 선지급 후, 감사가 진행되자 집행위원회 계좌로 입금시키는 등 10일~290일간 ○○○축제 사업비 유용
- ❖ 집행위원회에서 상근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등 집행위원회 운영비 총 64,575천원을 축제사업비에서 부당 집행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정산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 감독 소홀
- ❖ '08년부터 '11년까지 서울시 문화마케팅 명목으로 당초 ○○○축제 개최목적과 관련이 적은 해외공연을 4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해외 연주자까지 참여(4년간 46명의 연주자 중 26명) 시켜 연주비 등을 지급하는 등 부적정한 사업 운영으로 예산낭비
 - ○○○축제 추진방법, 수익금 처리, 프로그램 구성 등 전반 개선방안 마련 조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정산 부적정

- ❖ 00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가 당초 120,067천원보다 감소된 84,198천원으로 집행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시비 보조금을 비례하여 정산한 후 초과액을 반환 조치토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적정한 것으로 통보하는 등 182,948천원의 보조금 환수액 반환 미조치
 -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등 적정조치 및 관련자 문책

뮤지컬 공연사업 수익금 배분약정 불합리

- ❖ '08.4월 00업체와 '0000' 뮤지컬 공연에 관하여 협약하면서 제작사의 손실을 보전한다는 이유로 관람료 총매출액의 30%만 문화재단에 납부토록 하는 등 매년 제작사에 지나치게 유리하도록 부적정하게 약정
 - 민간과 공동으로 사업 추진시 투자비율 등에 따라 수익금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 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 문책

거울프로젝트 3
투자·출연기관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9. 일반사업 분야

희망플러스 · 꿈나래 통장 중간조사 미 실시 등 관리 부적정

- ❖ 2011.7월부터 2009년 2·3차 희망플러스 및 1차 꿈나래 통장 참가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면서 자치구로부터 2011.11월에 소득·재산 자격기준 초과자 157명(희망플러스 124, 꿈나래통장 33)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자에 대하여 약정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 조사기간이 도래된 2009년 1,2,3차 희망플러스 통장 참가자(17,456명)의 2회차 조사 및 2009년 2차 꿈나래 통장 참가자(4,156명)와 2010년 희망플러스 1차·2차 참가자(2,800명) 등에 대해서 중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등 참가자 관리 소홀
- ❖ '07년 시범사업 참가자에게 지급('10.12~'11.11)한 적립금이 약정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희망통장 만기지급자 98명 중 49명으로부터 2012. 4월 현재까지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는 등 사후 관리 소홀
- ❖ 통장사업 참가자를 2009년에 당초 4,500명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2만명으로 늘렸고 2010년에도 1만 명을 모집하는 등 참가자수를 대폭 확대하였으나, 민간후원금이 계획대로 모이지 않아 당초 계획보다 시비 분담금이 증가
 - 자격기준 초과자에 대하여 소명을 받아 약정해지 등 사후 조치를 실시하고 향후 적기에 중간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 철저(市주관부서)
 - 중간조사를 미 실시하거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 문책
 - 민간후원금 모금방법 다양화 등 대책마련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체험홈 · 생활가정 운영 부적정

- ❖ 자립생활 체험홈 9개소 중 2개소만 적정하게 입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12월에 6개소, 2011.12월에 5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2012.4월 현재 총 20개소 중 14개소가 과소 또는 공실 상태로 운영
- ❖ 자립생활가정은 2012.4월 현재 총 21개소 중 15개소가 과소 또는 공실상태로 운영(입주가능 59명, 실제 15명 입주)되는 등 장애인 입주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시설과다 확보로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예산낭비 초래

- ❖ ○○구 소재 자립생활가정의 경우 입주 장애인이 없어 공실 상태임에도 생활용품(세탁기등) 22종 5,038천원을 구입하는 등 3개소에서 64점 17,396천원 상당을 구매하여 방치하고, ○○구 소재 체험홈을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데도 생활용품(세탁기등 16점)을 회수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 소홀
- ❖ 재단에서 지원하는 일반운영비는 임대료와 관리비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식비 및 소모품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체험홈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한우불고기, 갈비양념, 쌀 등 식료품 및 문구용품 구매비로 운영비 7,393천원을 부적정하게 집행
- ❖ 코디네이터를 채용함에 있어 장애인 자립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곤란한 지체 장애인 (뇌병변 1급) 16명을 채용하여 입주 장애인들의 불만 초래
 - 장애인 자립지원시설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규모 재조정 및 관련자 문책
 - 물품을 부적정하게 구입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문책
 - 운영비 집행기준 마련, 업무관련자 문책
 - 코디네이터 채용기준을 마련하고 코디네이터 과다 채용한 관련자 문책

신용보증 심사 업무 소홀

- ❖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는 (주)000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면서, 평가기준 적용 착오로 연체사실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후 신용사고 발생에 따른 20백만원 대위변제로 기본재산 손실 위험 초래
- ❖ 0000(주)는 '09.2.9.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상담이 거절되었고 같은 해 4.12. 본점을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이전한 사실 등으로 보아 위장전입이 예상되는데도, 담당직원 1인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영업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내부 사진 촬영 없이 외부 간판 사진만 촬영하는 등 현장실사를 소홀히 한 채 신용보증을 하였으며 이후 원금연체에 따른 보증사고 발생으로 276백만원 대위변제로 기본재산 손실 위험 초래
 - 신용보증시 기업의 금융거래, 경영상태 등을 적정하게 평가토록 조치

- ❖ 신용보증시 보증기업의 대표이사,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과점주주인 이사, 동일관계기업은 필수적으로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여야 하는데도, 대표자의 배우자가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필수 입보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용보증하는 등 '09년 ~'12.6월까지 총 130개 보증신청 기업의 배우자(130명) 및 직계존비속(185명)에 대하여 필수입보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용보증
- ❖ (주)00화물운수에 대해 신용보증을 하면서 사업장 및 관리조직이 동일한 동일관계기업인 (주)00특수통운 대표이사 배우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3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하였다는 사유로 연대보증인으로 미설정함으로써 보증사고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 30백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채권회수 기회 상실
- ❖ (주)0000에 대해 신용보증업무를 취급하면서 회사 발행주식 총액의 30%를 소유한 대표이사 동생의 배우자가 과점주주인 이사에 해당되어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여야 함에도 주주명세서에 000과 대표이사가 남남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 믿고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지 않는 등 연대보증인 설정을 소홀히 하여 상기업체 보증사고 발생으로 276백만원의 구상채권이 발생하였음에도 과점주주로부터 채권회수기회 상실

 - 신용보증시 관계규정에 따라 과점주주인 이사, 동일관계기업, 배우자 등 필수입보대상을 정확히 조사하여 입보대상에서 누락되어 채권회수 기회가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 (주)00000이 본점을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기 보증금액을 전액 해지하거나 상환해지시 사업영위 곤란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기한연장품의서에 (주)0000의 사업장을 경기도가 아닌 서울시 용산구(전 사업장)로 기재한 후 팀장 결재를 받아 부당하게 보증기한을 연장하여 보증사고 발생(사고금액 51백만원)
- ❖ (주)00컴퍼니에 대하여 신용보증 조건변경(기한연장) 업무를 취급하면서, 3년 연속 매출액 감소 및 자본 잠식 상태이고 연대보증인인 대표자는 소유부동산 매각 등으로 보증사고 발생시 채권보전조치가 어렵게 된 상황인데도 조건변경(기한연장) 승인함에 따라 보증사고 발생

 - 기한연장 업무처리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기한연장 등 조건변경에 대한 심사기준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문책
- ❖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않거나 보증기간 내에 보증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료를 환급하여야 하는데도 신용보증기업으로부터 보증료를 수납하면서 대출금 조기상환 등 보증기간내 보증채무소멸로 반환하여야 할 보증료 2,883백만원을 환급하지 않고 보유중

 - 보증료 환급대상자를 면밀히 파악하여 즉시 환급 조치

- ❖ 000컴퍼니(주)의 신용사고로 발생한 구상채권 93,265천원에 대하여 상기업체 연대보증인이 103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국세체납(69백만원)이 있다는 사유로 가압류 조치를 유보하였고 이후 2년 이상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 소홀
- ❖ 0000(주)의 보증사고로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보증채무 79백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인 대표이사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보증사고 발생 2개월 전에 매각('10.6.1. 매매대금 455백만원) 하였으므로 채무 부담을 회피할 목적인 사해행위로 추정될 수 있는데도 사해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하지 않는 등 구상채권 회수업무 소홀
- ❖ 채권보전조치를 위해 부동산 가압류시 법원에 공탁하는 공탁금은 보증기업의 채무상환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이를 회수하여야 하는데도, 보증기업 채무상환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법원으로부터 회수 가능한 공탁금 153건 184,300천원을 회수하지 않고 있는 등 공탁금 회수업무 소홀
 - 구상채권 압류를 소홀히 한 관련자 문책, 즉시 채권보존조치를 취하는 등 구상채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 2012.6월 현재 미회수된 공탁금(184,300천원) 전액 회수
- ❖ (주)000스포츠 외 9개업체(융자잔액 1,179백만원)는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후 폐업하여 회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12.6월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고, 특히, (주)0000커뮤니티 외 1개업체(융자잔액 292백만원)는 현장점검일 전에 이미 국세청에 의해 직권 폐업된 상태였는데도 정상가동중인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시설자금 사후관리 업무 소홀
 - 시설자금 상환완료전 폐업기업에 대한 자금회수 조치 및 관련자 문책

지하철 승무관리 부적정

- ❖ 기관사가 승무하기 전에 음주, 약물, 심신상태 등을 확인하는 승무적합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음주여부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본인 문답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최근 3년간 실시된 100만여건의 승무적합성 검사 결과 부적합 사례는 음주 2건에 불과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됨

- ❖ 그동안 자동운전(1인 승무)을 실시하다가 2008.7.8. 사장방침으로 자율적 수동운전이 가능토록 하였으나, 스크린도어 및 출입문 취급, 승객안내방송 등을 담당하는 1인승무 기관사에게는 과도한 업무부담 및 심리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2012.1.21 노사합의로 첫차 및 RH시간 외에는 자동운전으로 변경)
- ❖ 선로 내에는 출입을 통제하고 긴급한 점검 등 필요시에는 종합관제센터장 승인 후 출입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관제소 통제없이 4자리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출입이 가능하며, 모든 역사의 비밀번호가 동일하여 수시출입 가능
- ❖ 승강장 스크린도어 기술규격을 확정하면서 선로출입문 및 기관사 출입문 열림시 종합 제어판에 나타나도록 하고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6호선 봉화산역 등 38개역은 경보음이 울리지 않도록 설계
 - 종합관제소 또는 역 직원을 통한 선로출입통제시스템을 강구하고, 스크린도어 시스템 운용환경 표준화를 추진하여 보완토록 통보
-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이 총 39개인 경우 각 사업장에 1명씩 총 39명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에도 7명의 보건관리자(간호사 7명)만을 선임하여 통합·운영하는 등 보건관리 미흡
 - 보건관리자의 관련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선임·운영하고, 서울시시철도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게 개정 통보.
- ❖ 공황장애, 인적오류(감각을 통한 정보전달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 지병 등을 이유로 각 승무관리소별로 2~8명씩 총 29명의 승무부적격자 명부를 관리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특별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 산업재해승인자 뿐 아니라 유소견자 전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 및 실질적인 정신계통 신체검사가 가능하도록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 건의
- ❖ 본선기관사 유고자(병가, 연가 등) 발생률을 소속 승무관리소 및 본부 운전계획팀의 평가 지표로 설정하고, 반기별로 운전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병가사용 건수(5~20점)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매년 통제를 강화하여 병가 및 연가를 사용하기 부담스럽도록 운영
 - 자체경영평가 및 운전업무 지도점검 평가지표 제도개선 검토

- ❖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고 지각한 기관사 6명 중 4명에 대해 소속장이 근태관리를 하지 않아 정기근무성적평정 및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시 감점 조치되지 않았으며, 000은 07:25까지 출근하여야 함에도 10:53 출근하고, 혈중알콜농도 0.17%로 음주측정되었으나 별도 근태관리를 하지 않음
- ❖ 승무사업소별로 지각, 결근 등을 할 경우 감점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근무평정 등에 반영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따라 형평성 저해
 - 지각자 등 복무위반자에 대한 공통 근태관리기준 실시방안 마련 통보
- ❖ 2012년 1/4분기 7개 승무관리소의 기관사 919명 중 철도안전교육(8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기관사가 17명이고 이 중 실습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기관사가 8명이며,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법정교육시간 6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기관사도 2명임에도 미조치하는 등 근태관리 소홀
 - 철도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공통 근태관리기준 실시방안 마련 통보

기타 지적사항

- ❖ 총 8,430건의 소송사건 중 49.3%에 해당하는 4,154건을 3개 법무법인에, 총 11,669건의 신청대리 등 각종 법무업무 중 61.5%에 해당하는 7,174건을 2명의 법무사에게 집중적으로 위임하는 등 재단 소송위임변호사 및 법무사 운용의 공정성을 저해
 -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세부 운용기준 마련
- ❖ 재단의 주요조직을 구성하는 영업점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이사장에게 일임하여 영업점 확대 등 조직운영에 대한 통제 미흡
 - 영업점 편성사항을 직제규정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영업점의 설치개수를 설정 운영하는 방안 마련

Ⅲ 투자출연기관 감사개요

1. 투자출연기관 감사개요

2. 기관별 감사보고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복지재단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승무분야)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1. 투자출연기관 감사개요

2011.11월부터 2012.7월까지 총 10개 사항 10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조사) 실시

1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특별감사

- 감사기간 : '11. 11. 21 ~ 12. 9(기간 중 15일)
- 감사인원 : 감사1팀장 외 18명
- 감사중점 : 조직, 인사, 예산·회계·수입금 및 물품관리분야 등 전반

2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특별조사

- 조사기간 : '11. 11. 23 ~ 12. 7(기간 중 10일)
- 조사인원 : 조사1팀장 외 2명
- 조사중점 : 상임고문 운영 및 광고비 집행 적정, 인사에 관한 사항 등

3 서울디자인재단 기관운영 종합감사

- 감사기간 : 2011.12.22 ~ 2012.1.13(기간 중 15일)
- 감사인원 : 조사2팀장 외 6명
- 감사범위 : 조직·인사, 예산·회계·수입금 및 물품관리, 디자인 지원사업 등

4 서울여성가족재단 기관운영 종합감사

- 감사기간 : '12. 1. 30 ~ 2. 10(기간 중 10일)
- 감사인원 : 감사3팀장 외 8명
- 감사범위 : 조직, 인사, 회계 및 시설관리, 여성능력개발 지원사업 등

5 서울문화재단 기관운영 종합감사

- 감사기간 : '12. 3. 5 ~ 3. 16(기간 중 10일)
- 감사인원 : 감사3팀장 외 9명
- 감사중점 : 조직·인사, 예산·회계, 市 위탁사업, 재단 자체사업 등 업무 전반

6 서울복지재단 기관운영 종합감사

- 감사기간 : '12. 3. 28 ~ 4. 10(기간 중 10일)
- 감사인원 : 감사5팀장 외 5명
- 감사중점 : 조직, 인사, 회계 및 복지서비스 지원 분야 등 전반

7 지하철 승무분야 특정감사(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 감사기간 : '12. 4. 9 ~ 4. 20(기간 중 9일)
 - 서울도시철도공사(4. 9. ~ 4. 20), 서울메트로(4. 16. ~ 4. 20)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7명(각 공사 3명)
- 감사중점 : 사고경위, 승무 안전관리 실태, 승무원 인력관리 등

8 서울시설관리공단 기관운영 종합감사

- 감사기간 : '12. 5. 14 ~ '12. 5. 25(기간 중 10일)
- 감사인원 : 감사1팀장 외 20명
- 감사중점 : 조직·인사, 재무·회계, 시설물 관리·운영 및 안전관리 적정
각종 공사감독, 용역관리, 시공 적정여부 등

9 서울신용보증재단 기관운영 종합감사

- 감사기간 : '12. 6. 18 ~ 7. 6(기간 중 15일)
- 감사인원 : 감사3팀장 외 13명
- 감사중점 : 조직·인사, 예산·회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보증 적정여부
구상채권관리, 출연금 등 기본재산관리 적정여부 등

10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감사

- 감사기간 : '12. 7. 16 ~ 7. 20(기간 중 5일)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11명
- 감사중점 :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여부, 경조사비 집행 적정 등 예산목적외 사용여부,
예산집행절차 투명성 확보 여부 등

2. 기관별 감사보고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특별감사 결과보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의 조직·인력, 예산·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① 감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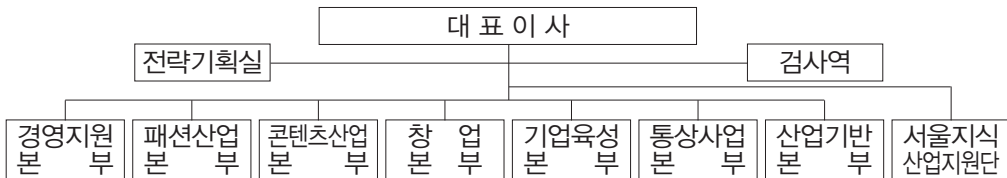
☞ 감사기간 : 2011. 11. 21. ~ 12. 9. (기간 중 15일)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18명

☞ 감사범위 : 2006. 1월 이후 처리한 업무전반
※ 경제진흥실 및 기타 유관 실·국 포함

SBA 현황(2011.12.15.현재)

- 설립 : 1998. 3. 31.
- 조직 : 1실 7본부 1단 (29팀 1해외무역관)



○ 인력

구분	합계	1급 이상	2~3급	4~5급	6~7급	무기계약직	단기계약직	파견근로직
정원	155	9	34	77	35	-	-	-
현원	342	3	37	72	31	55	107	36

○ 자산 및 예산

- 기본재산 : 274억원(서울시 268억, 우리은행 5억, 중소기업중앙회 1억)
- 2011년 예산 : 1,389억원(시 예산 1,156억원, 자체수입 233억원)

II 감사결과

1. 조직 및 인력운용

□ 별도직군 무단 신설 및 부당 정원 증원 등 자의적인 인력운용

- ◆ 수탁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채용한 계약직은 사업이 종료되면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 직제 및 정원 조정은 서울시 승인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 2008.9.9 계약직 3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대표이사 방침으로 ‘사업지원직’이라는 별도직군을 무단 신설하여 채용 당시 업무분야와 무관한 감사, 인사, 예산 분야 등에 종사토록 하여 사실상 일반직으로 운용
 - 패션디자인, 애니메이션 등 특수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채용한 전문직 20명 중 10명을 전문분야와 무관한 보직에 임용하고, 2009.12.31 대표이사 방침으로 ‘전문직 재계약 업무처리지침 개선안’을 수립하여 직제 및 정원규정, 전문직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일반직화하여 운용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 ‘○○무역관’ 방만 운영

- ◆ ○○무역관은 수행업무의 대부분이 본사 업무와 중복되고 실적이 미미함에도
 - 주재관 2명(수석관장, 관장)이 상시근무하면서 현지직원 4명을 채용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연간 434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등 방만 운영
- ◆ 2005년 3월 개관 당시부터 관장직(일반2급)을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 2007.1월 무역관 활성화 명목으로 상위직급인 ‘수석관장’직을 신설하여 D를 특별채용(’07.1.~’09.3)하고
 - 2009.2월 D의 계약기간 중임에도 E를 수석관장으로 이중채용하고, 2009.12월 전문직 정년(만58세)에 도달하자 계약직 가급(정년60세)으로 무단 전환하여 2010.3월 ◇◇구청장 출마를 위해 사직할 때까지 지속 근무토록 함
 - 이후 2011.3월 만 59세로 전문직 정년이 초과된 F를 서울시 승인 없이 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하여 현재까지 근무토록 함
- ○○무역관 설치 및 인력운영 재검토 및 관련자 문책

□ 재단 상임고문 부당 운영

- ◆ 2004.2.1. 대표이사 방침으로 상임고문을 위촉·운영하면서 실제 역할 수행이나 업무실적이 없음에도
 - 2004. 2월부터 2011.10월 사이에 상임고문 4명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매월 300만원씩 총 2억7,200만원을 부당 지급
 - 상임고문 폐지토록 하고 고문료를 부당지급한 관련자 문책

□ 직제에 없는 직위 무단 신설로 정년퇴임자 등 재채용 부적정

- ◆ 계약이 만료된 ○○무역관 수석관장 A를 직제에도 없는 ‘자문역’으로 특별채용(’09.4.~12.)하여 특별한 과제부여 없이 매월 530만원씩 총 4,770만원 지급
- ◆ 2008.12월 정년퇴임한 ○○본부장 B를 ‘자문역’으로 특별채용(’09.1.~12.)하여 매월 530만원씩 총 6,360만원을 지급
 - 2010.3월 또다시 ‘자문역’으로 특별채용하여 매월 420만원씩 총 1,260만원을 지급
- ◆ 2006.12월 정년퇴임한 ○○팀장 C를 직제에도 없는 ‘시설관리반장’으로 특별채용(’07.1.~12.)하여 매월 520만원씩 총 6,240만원 지급
 - 자문역 및 시설반장직을 폐지토록 하고 업무 관련자 문책

□ 특정한 부당 채용

- ◆ 2008.11월 직제에 없는 ‘○○기획담당보좌관’ 직을 임의로 만들어 채용절차도 밟지 않고 G를 특별채용(’08.11.3~’09.11.2.)
 -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계약직은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재계약 할 수 있음에도 14개월간(’09.11.2.~’10.12.31.) 재계약을 체결한 후
 - 2010.6월 직제에 없는 ‘○○TF’를 만들어 팀장직을 겸임토록 하다 재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출근토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 2011.1.20 ‘○○TF’ 팀장을 공개채용하면서 응시자격을 임의로 변경하여 응시자 2명 중 1명을 자격미달로 탈락시킨 후 G를 단독면접하여 부당 채용
 - 규정에 없는 직위는 폐지하는 등 방안 통보 및 관련자 문책

2. 인사 관리

□ 대표이사 채용 부적정

- ◆ 대표이사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키로 하였으나 공개모집과 별도로 서울시 ○○과에서 특정 헤드헌팅사에 후보자 추천을 구두로 의뢰하여
 - 공개모집기간(11.1.19~2.1.) 중 동 업체가 추천한 후보자 12명에 대해 자체검토를 실시하여 H를 선정하여 공개모집에 응모토록 한 후
 - 신문공고를 보고 응모한 일반응시자 4명과 함께 면접시험을 거치는 방식을 취한 후 H를 선발
 - 이후, 동 업체에게 아무 근거없이 SBA를 통해 추천수수료 명목으로 2,530만원을 부당 지급
- 대표이사 채용 방법 및 기준을 정비토록하고 관련과 기관경고

□ 경력직 및 계약직 채용 등 부적정

- ◆ 2011.6.10. 직제에 없는 ○○팀장을 공개채용하면서 인사규정(해당직급 1년 이상)과 다르게 자격기준을 12년 이상 경력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채용공고한 후
 - 응시자 6명 중 3명을 경력부족 등을 이유로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키고 대표이사가 최종 면접에 직접 참여하여 본인의 전 근무지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특정인 I를 선정하고
 - 뒤늦게 직제 및 정원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하여 ○○업무를 총괄하던 △△팀을 ○○팀과 ▽▽팀으로 분리한 후 2011.7.1. 채용
- ◆ 2009.6월 서울시에서 ○○업무를 위탁하면서 ○○조사분야는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토록 명시하였음에도 2011.6.10. 인사규정(해당직급 1년 이상)과 다르게 자격기준을 5년 이상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일반경력직으로 채용공고한 후
 - ○○조사분야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던 특정인 J를 상급자인 ○○실장이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에 직접 참여하여 채용한 후, 감사역 등 채용 경력과 무관한 업무에 종사토록 하면서 인건비는 수탁사업비에서 부적정 지급
- ◆ 운전기사로 특별채용된 경우 운전업무에 계속 근무토록 하여야 함에도
 - 전 대표이사 운전기사로 채용된 K를 현 대표이사가 임용되자 2011.2.21. 운전 업무와 무관한 ○○본부 시설담당으로 전보하고
 - 특별채용절차 없이 2011.2.15. 현 대표이사의 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던 L을 대표이사 운전기사로 임용

❖ 2008.1월 당시 65세로 근무상한연령(만60세)이 초과된 M을 ○○센터장으로 채용하고 68세가 된 현재까지 계약해지 없이 매년 갱신하여 고용

○ 근무상한연령 초과된 M 계약 해지 및 관련자 문책

□ 정원 초과 부당 승진임용

❖ 대표이사 임의로 승진대상인원을 초과하여 부당승진임용하거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기준을 변형하여 운영하고 근무성적 평정기간 임의단축

- 2009.10.1. 5급 → 4급으로 승진계획인원이 6명임에도 N을 추가승진

- 2011.7.1. 4급 → 3급으로 승진가능인원이 2명임에도 O, P를 추가승진

❖ 2011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기간을 임의로 1개월 단축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교육 훈련평점(10%)을 가점평점(10%)으로 변형

○ 부당 승진임용 및 근무성적 평정 업무 관련자 문책

3. 급여 지급

□ 급여 편법인상 등 임·직원 보수 방안 운영

① 임직원 기본급여를 실제보다 높게 산정하여 급여 편법인상('07년도)

❖ 2007년도 임직원 기본급을 산정하면서 급여인상의 기준이 되는 전년도 임직원 기본급을 실제보다 3.74% 높게 산정한 후 이사회에 아무런 설명없이 높게 산정된 급여표에서 3.9%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 이사회에서 정부기준에 따라 전년도 인건비 총액 2% 이내에서 서울시와 협의토록 하고 서울시에서는 총액 2% 이내에서 기본급 2.3%를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승인 하였음에도

- SBA에서 보수규정 개정 시 전년도 임직원 기본급보다 3.74% 높게 인상된 기본급표에 2.3%를 추가로 인상하여 전년대비 총 6.19%로 편법 인상

② 호봉제를 연봉제 전환하면서 급여 편법 인상('09년도)

◆ 2009년도 인건비는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08년 수준으로 동결)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예산승인 시('08.12.31.) 인건비를 동결하도록 하였으나

- 2008.12.29. 1~4급 임직원 급여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한 후
- 2009.2.17. 노조와의 임금협약 시 연봉제 취지에 맞지 않게 직급별로 7년차까지 매년 1%씩 기본급을 인상하는 연차급을 신설하여 인건비를 동결한 2009년에 1급 기본연봉 상한액이 2,723천원 인상
- 승진자의 기본 연봉을 승진 소요연수에 따라 11~26%까지 인상되도록 하고 매년 연봉 상승에 따른 부가급여(시간외근무수당, 각종 성과급)도 동반상승

변 경 전(2008.12.29.)			변 경 후(2009.4.30.)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직 급	하 한액	상 한액	직급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1급 기본연봉	57,534	73,394	1급 보직자	72,013	72,697	73,381	74,065	74,749	75,433	76,117
2급 기본연봉	48,405	64,265	2급 보직자	61,744	62,326	62,907	63,489	64,070	64,651	65,233
3급 기본연봉	43,146	59,006	3급 보직자	53,017	53,511	54,006	54,500	54,994	55,488	55,982
4급 기본연봉	36,503	50,835	4급	42,000	42,420	42,840	43,260	43,680	44,100	44,520

※ 상한액이 낮아진 3~4급의 경우에는 연봉조정급으로 보전

③ 무단 신설한 00직 인건비 부담 인상('11년도)

◆ 연봉제 직원인 00직군 보수는 2011년도 인건비 상승률 4%가 일괄 반영되어 보수규정시행내규에 따라 이미 책정되어 있음에도

- 승진대상이 아닌 00직군 7급 6명을 6급으로 직급 조정한 후, 2011.7.13 대표이사 방침으로 「SBA 00직 직급별 연봉테이블 설계안」을 수립하여 기본연봉을 약 29% (평균 17,129천원→22,091천원) 부담 인상하고,
- 직급조정자를 제외한 20명은 대표이사 방침에서 정한 상한액과 관계없이 종전대로 지급(※ 4급 000의 경우 상한액이 32,411천원임에도 38,228천원 지급)
- 직급별로 7년차까지 매년 1%씩 기본급을 인상하는 연차급을 신설

④ 타 투자·출연기관에서 폐지한 봉급조정수당 및 개인성과급 지급('06년~현재)

❖ 공무원과 민간기업과의 보수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공무원 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2000.7.24.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라 도입된 봉급조정수당은 한시적 제도임에도

- SBA에서는 2000.12월 이를 준용하여 기본급의 42.5%를 매년 지급하는 '봉급조정수당'을 신설한 후, 2006년부터 중앙부처 및 서울시, 타 투자·출연기관에서 지급을 중단하였음에도 계속 지급
- 2009.1월 4급 이상 임직원 성과연봉제 도입 시 봉급조정수당을 기본연봉에 포함하여 매년 연봉상승에 따른 부가급여도 동반상승

❖ 투자기관은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집행기준에 의거 2010년부터 개인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기관성과급만 지급)

- SBA 등 출연기관은 현재까지 기관성과급은 물론 개인성과급도 지급하는 등 투자기관보다 높은 보수체계 운영
- SBA 보수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통보 및 업무 관련자 문책

□ 지급대상이 아닌 직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 등 부당 지급

① 관리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지급

❖ 「출연기관 예산관리 공통기준」(시장방침)에 의거 인건비성 보전경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와 협의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관리자('11년 이전:임원 및 2급이상 관리자, '11년 이후:임원을 비롯한 실질적인 관리자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 2008.3.12. 대표이사 방침으로 「진흥원 시간외 근무 관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와 협의 없이 관리업무수당을 무단 신설하여 1급 본부장급 관리자 7명에게 실제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업무수당 명목으로 월30시간 상당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2008.6월~2011.11월까지 총 241,250천원을 부당지급하고
- 2011.9월 2급 본부장까지 대상을 확대하면서 2011.7월부터 소급 적용하여 2명에게 총 7,224천원 부당지급

② 시간외 근무수당을 성과급 명목(타겟인센티브)으로 부당 지급

❖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무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성과급은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할 수 없음에도

- 2008.3.11.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 시 월 20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개인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연 2회(3월, 9월) 타겟인센티브로 선지급키로 협약한 후
- 연장근로에 대한 사후 금전적 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을 아무 근거없이 실제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10시간(관리자 20시간)을 기본으로 부여한 후 2008.6월~2011.9월까지 8회에 걸쳐 총 1,675명에게 1,682,607천원을 타겟인센티브로 부당지급하고
- 추가로 정규직원 874명에게는 실제 근무한 10시간분 시간외근무수당 948,490천원을 전년도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함

〈타겟인센티브 부당 지급 현황〉

연번	지급시기	합 계	실제근무와 관계없이 부당지급			실제근무 후 차등지급
			관리자 (월 20시간)	정규직 (월 10시간)	계약직 (월 10시간)	정규직 (월 10시간)
1	2008.6월	163,275,200	15,442,920	58,879,380	30,073,520	58879,380
2	2008.9월	348,796,640	15,442,920	133,811,195	65,731,330	133,811,195
3	2009.3월	330,328,480	35,027,390	126,836,930	41,627,230	126,836,930
4	2009.3월	334,945,380	35,027,390	120,367,885	59,182,220	120,367,885
5	2010.3월	337,698,470	35,825,340	120,981,760	59,909,610	120,981,760
6	2010.9월	348,419,950	35,825,340	123,052,485	66,489,640	123,052,485
7	2011.3월	361,170,170	37,941,335	127,065,633	69,097,570	127,065,632
8	2011.9월	406,463,110	37,941,335	137,495,218	93,531,340	137,495,217
합 계		2,631,097,400	248,473,970	948,490,486	485,642,460	948,490,484

- 타겟인센티브 제도는 폐지, 시간외 근무수당은 관리자를 제외한 실제 시간외 근무자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 ◇ 정년퇴직 특별교육프로그램(공로연수) 참여자 2명에게 지급하지 않아야 할 직책급, 시간외 근무수당 및 타겟인센티브 등 총 18,207천원을 부당지급
- ◇ 전 대표이사 Q의 2009년도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성과급 산출시 포함하지 않아야 할 부가 월봉(1,666천원)을 포함·적용하여 3,987천원 과다지급
- ◇ 교육훈련 해외파견('10.1.6~12.26.)으로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에게 2010년도분 성과급 6,276천원 부당지급
 - 부당 지급한 급여·수당 환수 조치 및 업무 관련자 문책

4. 계약 및 회계

□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업무추진비 등 집행)

◆ 주점, 노래방, 퇴직자 및 업무무관자에게 경조사비 지급 등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총375건 35,162천원 사적인 용도로 사용

- 서울시청 ○○팀장 R은 2010.9월~2011.7월 동안 SBA에서 파견나온 ○○팀장 S가 소지한 법인카드를 빌려 자택 근처에서 고교동창 및 인척 등과 음주 및 식사 등 총 38건 7,026천원 사적 사용
- 임원의 호텔 멤버십 카드 연회비, 본인과 부인의 건강검진비용 등으로 총 3,144천원 사적 사용
- 본부장급 직원의 출퇴근 주유비 1,598천원을 수탁사업비에서 사적 사용
- △△센터장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로터리클럽 정기모임 식대비 등으로 총 59건 2,428천원 사적 사용
- 주점, 노래방 등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준(23시 이후 사용금지)에 맞지 않게 총 197건 18,158천원 부적정 사용
- 기타 업무외 택시비 사용, 퇴직자 및 업무무관자에게 경조사비 지급 등으로 2,808천원 부적정 사용

◆ 내부직원 간담회를 실시하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직원 회식비용을 대외기관 회의비, 사업운영비 등에서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총 285건, 31,130천원을 회계처리 부적정

- 사적 사용한 업무추진비 전액 환수, 서울시 직원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등 관련자 문책

□ 시설관리 용역 검사 소홀로 대가 과다지급

◆ 2010.2.1 본사 및 첨단산업센터 등 7개소에 대한 시설물 용역관리 계약을 체결한 (주)○○에게 매월 대가를 지급하면서

- 근무직원의 출근부, 장비 및 재료비 사용에 대한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에 대한 정산 없이 전체 계약부기금액 대비 월정액으로 용역대가를 지급함에 따라 402백만원 과다 지급
- 과다 지급된 용역비 환수 조치 및 업무 관련자 문책

5. 사업 집행

□ 공사분할 수의계약으로 회계질서 문란

- ◆ 공개경쟁입찰 대상인 청년창업센터 리모델링 등 동일구조물 공사를 6건으로 분할하여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함으로써 일반 공개경쟁 시 발생하는 낙찰차액분의 예산을 낭비하는 등
 - 2009.7월 ~ 2011.10월까지 5건의 공사를 17건으로 분할 계약하여 총 16백만원 상당의 예산 낭비 및 회계질서 문란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 행사대행업체 사용료 부당징수

- ◆ 2011. 서울패션위크 행사 대행업체인 (주)○○은 SBA(패션산업본부)와 행사장(패션센터 본사)을 무료로 사용토록 계약 체결하였으나
 - (주)○○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대학패션위크의 행사대행업체 (주)△△으로부터 행사장 사용료 명목으로 12백만원을 부당하게 징수
- 부당하게 징수한 행사장 사용료 12백만원 환수 조치

□ 부적정한 업무집행으로 예산 낭비

- ◆ 사업추진에 필요한 변리사 채용 시에는 특허청 지식센터운영지침에 의거 변리사 연봉을 55백만원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 2009년도 61백만원(3명), 2010년도 62백만원(2명), 65백만원(1명)으로 계약함으로써 총 103백만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
- ◆ 2009년 「중소기업 지식 재산권 확보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변리사 등 계약직 9명(변리사 5명, 컨설턴트 4명)을 신규채용하고도 선행기술 조사 등의 명목으로 외부용역을 의뢰하여 155백만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
- ◆ 2010. 9월 게임업체 프로그램 지원사업(150백만원)을 추진하면서 일부 업체에 호환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31백만원 상당의 예산 낭비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 제안서 평가점수 및 공모작품 심사점수 부당 산정

-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 구성은 7명 이상이어야 함에도 2009~2011.10월 현재 총 186건 중 116건(62%)은 3~6명으로 과소구성하고
 - 정성적(주관적)평가시에는 평가위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여야 함에도 124건을 제외하지 않고 합산한 결과 6건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1,2위 선정 업체)가 뒤바뀌는 등 부적정
- ◆ 2010년 극장용 장편애니메이션 제작지원(제작비450백만원) 작품 선정 시
 - 예선심사에서는 종합점수를 잘못 계산하여 탈락하여야 할 ○○업체가 3위로 선정되고, 본선심사에서는 ○○업체의 작품이 1위로 선정되는 등 부적정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 직무관련업체에 여행경비 청탁 및 부당 수의계약

- ◆ SBA 직원 T는 서울시 ○○과 계약직 직원 U로부터 해외출장경비 일부를 부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 직무관련업체인 (주)○○에게 2010. 6월 U의 여행경비 3,086천원 및 2010. 9월 서울시 ○○과장 V의 여행경비 3,344천원을 부담토록 함
- ◆ 2010.3월 T는 U로부터 ○○다큐멘터리 제작(1억1천만원)을 (주)○○미디어가 수행토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 수의계약 대상(5천만원)이 아님에도 (주)○○미디어를 제작사로 지정하는 협약을 법적 근거없이 체결하는 등 특혜를 제공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SBA 관련자 문책
 - ※ 해외출장경비를 수수한 서울시 직원 U 및 과장 V는 중징계 등 요구되었음

6. 기타 조직운영

- ◆ 2011.6.1. ○○팀 회식자리에서 정규직 V가 계약직 W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성희롱 행위 발생
 - 성희롱 가해자 V에 대하여 중징계 요구

Ⅲ 감사결과 조치

1. 총괄

☞ 감사결과 적출된 부적정 사항은 경제진흥실, SBA에 통보하여

- 주무부서인 경제진흥실로 하여금 경영실태 및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책임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

☞ 신분상 조치

-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44명(중징계 8, 경징계 7, 계약해지 1, 경고 26, 훈계 2)을 비위 경중에 따라 엄중 문책
 - SBA : 41명(중징계 7, 경징계 7, 계약해지 1, 경고 26)
 - 서울시 : 3명(중징계 1, 훈계 2)

☞ 행·재정상 조치

- 부당 집행한 예산 790백만원 환수하는 등 총 62건을 시정 등 처분요구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특별조사 결과보고

농수산물공사에서 상임고문을 부당운영 운영하고 있는 점 등 시의회 지적 및 언론 보도사항과 관련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임

I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1. 11. 23 ~ 12. 7 (기간 중 10일)

☞ 조사자 : 조사팀장 외 2명

☞ 조사방법 : 서류 확인 및 관련자 문답 조사

☞ 중점 조사사항

- 상임고문 운영 및 광고비 집행의 적정 여부
- 계약직 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 등

II 조사결과

1. 인사·조직 분야

□ 상임고문 운영 및 퇴직금 부당지급

◆ 농수산물공사 직제규정 제11조의 규정을 근거로 '05.1.25 사장방침으로 상임고문(1명)을 위촉·운영하면서

- 상임고문은 상시 근무하면서 가락시장 환경문제, 도매시장 운영 관련 자문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나, 상시 근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출·퇴근 시간도 불규칙하고, 실제 역할 수행이나 업무실적도 없는데도
- '05.2월부터 '11.10월 사이에 고문료 명목으로 매월 300만원씩 지급하여 상임고문 A 등 4명에게 고문료 등으로 각각 3,900만원에서 1억6,500만원 등 총 2억5,3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근로계약이 아님에도 퇴직금 1,950만원 부당지급

⇒ 상임고문 폐지 및 상임고문에게 지급된 퇴직금 1,950만원 환수, 상임고문 운영 및 퇴직금 부당지급한 본부장 경고 조치

□ 규정을 위반하여 사장 운전원 부당채용

- ◆ '06.9.18. 사장 운전원 최초 채용시 공사 계약직원 운영관리내규에 의거 채용 자격기준이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없는 B를 부당채용

⇒ 규정을 위반하여 직원을 부당채용한 담당, 팀장, 본부장 경고 조치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된 상태에서 재계약 및 보수 부당지급

- ◆ 계약직원 운영관리내규에 따라 '채용결격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사장 운전원 B가 '08.10.18.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08.11.27부터 '09.3.16까지 면허 정지(110일간)되었음에도 계약해지하지 않고 '08.11.26 경징계(견책)조치만 한 후 면허 정지 기간중인 2009.1월 운전원으로 재계약 체결

- ◆ 사장 운전원은 '기관장용 차량 운행 및 관리 업무'만을 수행토록 계약하였음에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08.11.27~'09.3.16)

- 총무팀에서 업무보조로 근무토록 하면서, 김장 나눔축제, 노조창립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지원과 연말 불우 자선단체 방문 등 운전업무와는 무관한 현장업무에 활용하였 으면서도 운전원 보수에 해당되는 급여 9,425,310원을 부당지급

- ◆ 운전원 보수와 일반계약직 '다'급 보수와의 차액 1,480,130원은 환수대상

※ 일반계약직 '다'급 : 주된 업무가 현장업무에 종사하며, 육체적 근로를 주로 하는 자 (계약직원 운영관리내규 제6조)

⇒ 운전원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지급된 급여차액 1,480,130원 환수, 운전원 부당채용 및 재계약, 급여 부당지급한 담당, 팀장, 본부장 경고 조치

□ 자격기준을 임의로 만들어 특정인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부당채용

- ◆ 인사규정에 의거 '일반직 3급 직원의 채용기준은 공무원 6급 이상 경력자, 정부투자기관의 동일 직급에서 1년 이상 경력소지자'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 '09.11.6 당시 공사 학교급식팀에서 전문계약직 C급(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직원 C를 일반직 3급(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 규정에도 없는 '식자재 전문 회사에서 총괄 경력 10년 이상인자'로 자격기준을 임의로 만들어 부당채용

⇒ 자격기준을 임의로 만들어 특정인을 부당채용한 담당, 팀장, 본부장 경고 조치

□ 공개채용 절차 없이 신규직원(8명) 부당채용

❖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의거 직원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채용의 경우에도 시험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함에도

- '09.10.12 '09년 하반기 직원을 신규채용하면서 공개채용이나 특별채용 절차없이 사장 방침만으로 '09년 상반기 직원채용('09.5.6)시 예비합격자 15명중 8명(예비합격 순위에 따라 선정)을 부당채용

※ 부당채용된 8명과 공사 임·직원(퇴직자 포함)과의 관련여부에 대해 확인하였으나, 특이점 발견하지 못함

⇒ 특정인 및 신규직원을 부당 채용한 담당, 팀장, 본부장 징계시효 경과로 경고 조치

2. 예산운영 분야

□ 사장 연고지 출연 프로그램 제작비를 공사 예산으로 지출

❖ 사장이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촬영장소를 경북 의성군('06년 군수출마 지역)으로 선정 하는 방침서 'CEO TV 방송 출연추진('09.4.29)에 사장이 직접 결재한 후

- '09. 5.14 사장이 위 프로그램에 개그맨 D(여, 42세)와 동반출연하여 의성군 소재 외정 황토 못메기 양식장에서 메기잡이, 시식 등의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 당초 '09년 농수산물공사 광고선전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도 않고, 공사의 업무와 관련없는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1천1백만원을 공사 예산으로 부당집행

⇒ 공사예산 낭비를 초래한 담당, 팀장, 본부장 경고 조치

□ 농수산물공사 협찬비를 유통개선적립금으로 부당지출

◇ '09. 7월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금(농수산물공사 자막광고)은 공사에선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공사 광고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가락시장의 경쟁력 확보 등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청과 등 6개 법인에서 적립한 유통개선적립금에서 협찬금 5천만원 부당집행

※ '09.7.19 ~ 9.27까지 11편에 걸쳐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자막 표출

⇒ 사장 출연 프로그램 제작비 및 협찬비를 부당지출한 담당, 팀장, 본부장 경고 조치

Ⅲ 조사결과 조치

⚙ 행정상 조치

- 상임고문제도 및 유통개선적립금 폐지
- 농수산물공사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본청 생활경제과 주의 조치

⚙ 재정상 조치

- 상임고문 4명에게 지급한 퇴직금 19,500천원 환수
- 사장 운전원에게 부당지급된 급여 1,480천원 환수

⚙ 신분상조치 - 경고 9(징계시효 도과로 '경고'처분) 및 기관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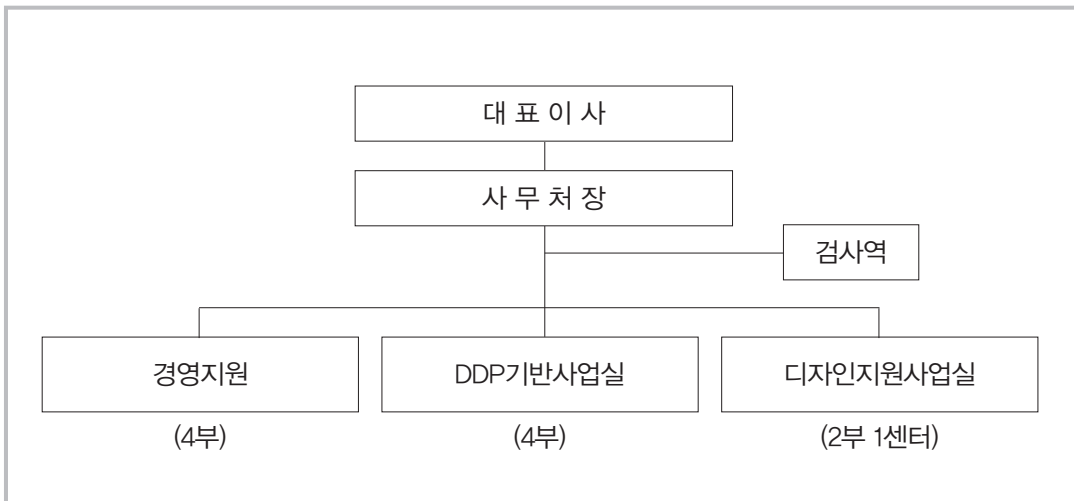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디자인재단 종합감사 결과

I 조사개요

- ☞ 감사대상 : 서울디자인재단
- ☞ 감사기간 : 2011.12.22 ~ 2012. 1. 13(기간중 15일)
- ☞ 감사범위 : 2009.3월 재단 출범이후 현재까지
- ☞ 감사부서 : 서울시 감사관 조사담당관

II 재 단 현 황

- ☞ 설립목적 : 서울의 디자인산업 진흥 및 디자인 문화확산에 기여 및 디자인 경쟁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
- ☞ 설 립 일 : 2009. 3. 2.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범
- ☞ 소 재 지 : 종로구 종로6가 70-6번지
- ☞ 조직체계 : 1처 3실 10부 1센터('12.1.13.현재)



III 조사결과

1. 조직 및 인사 분야

□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자 및 임용결격자 부당채용

- ◆ '11.6.14. 지원자격을 15년으로 한정된 ○○센터장 채용시 임용된 A는 실제경력이 해당분야 13년 4개월로 지원자격 미달이었으나
 - 서울디자인재단 ○○부장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4년 1개월간 책임 연구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경력증명서를 허위발급받아 제출하여 부당하게 채용
- ◆ 또한, 재단 인사규정에 의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채용할 수 없음에도 '09.6월 배임수재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를 재단 ○○부장으로 채용('11.10.4.)

⇒ 허위경력 제출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토록 조치하고, 임용결격자는 즉시 당연 퇴직 조치('12.1.20)

□ 특정한 채용 부적정 및 연봉 과다지급

- ◆ '09.6.30 계약직 4명을 공개채용하면서 ○○이사 B가 ○○부장 C에게 대표이사의 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는 특정한 D, E를 채용토록 지시하여
 - 경력점수를 부풀려 서류전형을 통과시키고 면접위원이 아닌 ○○이사 B가 면접시험에 참석 후 최고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부당채용
- ◆ 재단 인사규정에 따르면 5급 직원의 경우, 해당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함에도 '09.11월 정규직 25명을 채용하면서 ○○이사 B가 부당채용한 해당경력 2년 미만의 상기의 계약직 D, E를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지시하자
 - '재직 중인 계약직에 한해 서류전형 면제'라는 특혜를 주어 2차 필기시험에 응시토록 한 후 D를 정규직으로 부당채용(E는 필기시험에서 탈락)
- ◆ 또한, '10.3.1. 정규직으로 부당 채용된 D에게 석사학위가 있다는 사유로 ○○이사 B가 D의 연봉우대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하자
 - 학력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석·박사 학위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내부방침을 수립하여

- D를 포함하여 석·박사 학위를 가진 12명의 연봉을 '10.3월부터 '11.12월까지 총 40,723천원을 გადა 지급

⇒ 특정한 부당채용과 연봉우대를 지시한 ○○이사 B('12.2.29 임기만료)에 경고하고 서울시 감독부서에 통보하여 재임용 제외 조치 및 관련직원 중징계 요구

□ 인사 전형관리 부적정

- ◆ 재단 인사규정에 의하면 직원채용시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특수 자격을 요하는 경우에도 한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채용할 수 있음에도
 - '09.3월 설립이후 총 23회 63명의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특정 사유없이 비공개 특별 채용하였을 뿐 아니라 인사위원회 의결없이 ○○이사 내부방침만으로 총 10회 26명을 특별채용

⇒ 전형관리 개선토록 지시하고 업무관련자 경징계 요구

2. 회계 및 계약 분야

□ 특정 하도급 업체 선정 및 제품 구매 부당지시

- ◆ 구로디자인지원센터와 강남트렌드센터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주)○○ 외 1개 업체와 계약 후 바닥재공사를 위한 하도급 업체 선정 시
 - ○○이사 B의 친구가 사장으로 있는 (주)○○을 바닥재공사 하도급 업체로 선정토록하고
 - 바닥재는 당초 계약된 국산 우드플라스틱 제품에서 독일제 강화마루로 시공토록 지시

⇒ 부당지시 등 이권에 개입한 ○○이사 B('12.2.29 임기만료)에 경고하고 서울시 감독부서에 통보하여 재임용 제외 조치

□ 편법 수의계약 등 회계질서 문란 및 예산낭비

- ◆ '09년 서울디자인올림픽 행사시 총 6건(1,934백만원)의 용역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약체결과정 없이 (주)○○ 외 2개 업체에게 사전에 행사준비 작업을 지시하고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 공정 경쟁입찰 등 계약절차가 무시되고 경쟁입찰 대비 약 237백만원 상당의 예산낭비를 초래

❖ 지방계약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용역·물품의 경우 전자공개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 재단 설립 이후 '11.12월까지 총 17건(2,144백만원)을 수의계약하여 공정한 계약절차가 무시되고 경쟁입찰 대비 약 207백만원 상당의 예산낭비를 초래

⇒ 부당 수의계약한 직원 주의 조치

□ 관리·감독 소홀로 저가자재 납품 등 예산낭비

❖ '10.12월 서울디자인연구소 산업정보실 구축공사 시 (주)○○으로부터 신소재 제품 700개를 납품받으면서 Nano 등 7종이 설계단가 대비 저가의 소재로 납품되었음에도 이를 감액치 않고 총 14,094천원을 과다지급

❖ '10년 서울디자인한마당 행사대행 용역 협약시 선금 발생이자(1,326천원)를 정산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계상하지 않고 지급

⇒ 과다 지급한 금액 환수조치 및 관리·감독 소홀한 관련자 주의 조치

3. 예산 집행 등 기타

□ 시간외근무수당 등 과다지급

❖ 「'0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부가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정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토록 하였으나

- 서울디자인재단은 소정 근로시간을 174시간으로 적용함으로써 각종 수당 지급률【통상 임금/174(소정근무시간)×1.5×시간】을 인상하여 '09.3월부터 '11.12월까지 시간외·휴일·연월차 근무수당 총 224,410천원을 과다하게 지급

⇒ 「재단보수규정」개정 조치 및 해당 보수규정을 제정한 서울시 감독부서에 주의 조치

□ 국외출장경비 과다지급 및 편법집행

- ❖ 국외출장경비는 직급별·국가별 등으로 차등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09.3월부터 '11.12월까지 ○○이사 등 총 17명에게 4,161천원 과다지급
- ❖ 국외출장경비는 국외출장여비 예산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11.6월부터 '11.12월까지 재단 직원 10명이 5회에 걸쳐 국외출장을 가면서 발생한 경비 48,971천원을 일반사업비에서 편법 집행

⇒ 부당지급한 국외출장경비 환수 및 관련자 주의 조치

III 결과 조치

☞ 문화관광디자인본부(디자인정책과) 통보

- 재단 ○○이사 비위사항
- 직원채용 등 인사 및 계약·물품관련 사항에 대해 관리감독 강화

☞ 신분상 조치 : 22명

- 재단 ○○이사 경고 및 인사자료 통보 비위사항
- 당연퇴직 및 면직 2명
- 징계 3명(중징계 2명, 경징계 1명)
- 주의(16명) 및 기관주의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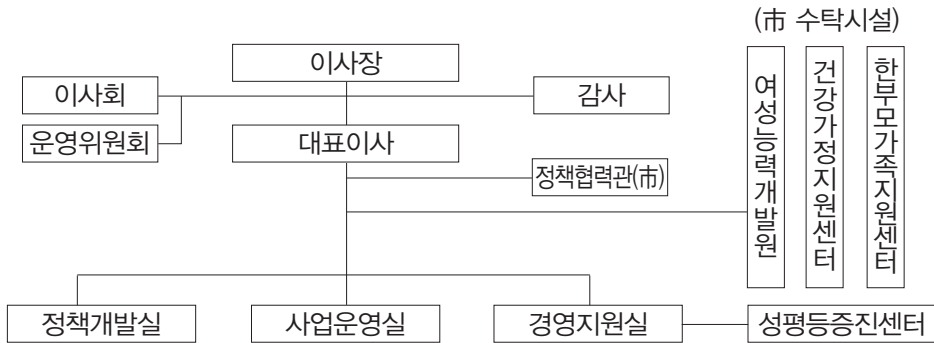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종합감사 결과

I 감사개요

- ☞ 감사기간 : '12.1.30 ~ 2.10(기간 중 10일간)
-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8명
- ☞ 감사범위 : '07.1.1.부터 '11.12.31.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현황(2011.12.31.현재)

- 설립 : 2002.01.24
- 조직 : 3실, 1원 2센터(3개 수탁시설 포함)



○ 인력

구분	계		대표이사 (원·센터장)		1~2급		3급		4~5급		기능직		계약직 (단기)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77	75	4	4	7	4	20	20	48	45	1	2	-	4
여성가족재단	40	40	1	1	7	4	15	15	19	18	1	2	-	4
여성능력개발원	19	19	1	1	-	-	3	3	15	15	-	-	-	-
건강가정지원센터	10	8	1	1	-	-	-	-	9	7	-	-	-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8	8	1	1	-	-	2	2	5	5	-	-	-	-

※ 위촉연구원 및 교육운영, 사업지원인력 명목으로 19명 별도 운영

- 예산(2011년) : 169억원(시 출연금 86억원, 자체수입 48억원, 수탁사업 35억원)

II 감사결과

1. 복무관리 부적정

① 복무규정에 없는 대체 휴무 부당 실시

❖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한 직원에게는 재단 「복무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뿐 대체휴무를 실시할 근거가 없음에도

– 2006.10.11. 대표이사 방침으로 「휴일근무 등에 대한 기준(수당 또는 대체휴무 중 선택 가능)」을 마련하여 2007.1월부터 2011.12월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 ◆◆◆ 외 220명이 총 1,029회에 걸쳐 876일간의 대체휴무를 부적정하게 실시

❖ 대표이사 방침에 관련근거로 명시한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2005.7.1,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대체휴무는 대민서비스기관이나 민원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고,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는 것이 원칙이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에도

– 민원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체휴무를 실시하면서 ■■관리팀 ○○○ 등 총 62명이 휴일근로일로부터 9일~283일이 지난 후 가사정리, 병문안, 하계 휴가 등의 사유로 개인의 필요에 따라 사실상 연가로 부당하게 사용

– △△개발실 ◎◎◎외 72명이 149회에 걸쳐 1일 휴일근무를 하고도 반일씩 2회로 나누어 대체휴무를 부당하게 실시

○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대체휴무를 실시토록 한 관련자 문책

2.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①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 업무와 관련 없이 휴일 및 자택부근 등에서 식비사용 및 선물구입비로 13건 3,511천원 사용

– 민간단체 창립 기념행사 티켓 구매 등 민간단체 창립총회 등에 개인적 후원금으로 37건 4,660천원 사용

– 유관기관의 장이 아닌자의 승진·영전축하, 전시회, 민간단체 창립총회 등에 81건 6,823천원 부당 집행

– 기타 업무연관이 없는 자 등에게 경조사비 지급으로 6,240천원 집행

② 업무추진비 목적외 사용

- ◆ 재단 명의로 유관기관 및 단체에 설 선물로 전달하는 등 명절 선물구입비로 48건 59,890천원 집행
- ◆ ◎◎학교 후원의 밤 행사 등 2007.1.1부터 2009.12.31까지 신고·등록되지 않은 후원행사에 재단 명의로 58건 7,089천원 집행
 - 사적사용한 업무추진비 환수 및 관련자 문책

3. 시설물 관리 부적정

□ 시설물 관리·감독 부적정

① 연수시설을 숙박시설로 부적정하게 운영

- ◆ 여성플라자 연수시설은 「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 또는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 여성복지증진 등을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자만 이용할 수 있음에도
 - 시설위탁운영자 ○○○○○(주)가 연수시설을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의한 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지도 않고, 재단수익창출을 위해 잔여객실에 대해 2011.2.20. 일반인(○○○)에게 1일 77,000원(4인실)을 받고 숙박시설로 대여하는 등 2009.1월부터 2011.12월까지 총 459명(47,742천원)에게 숙박시설로 부적정하게 대여 운영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례가 있음

② 서울시 승인 없이 시설 轉貸

- ◆ 수익사업의 시행 또는 재산의 전대 시에는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 여성가족재단은 수익사업인 커피전문점(1층, 10㎡), 꽃집(1층, 18.5㎡), 매점(3층, 8.7㎡) 등의 시설을 서울시 승인 없이 (주)☆☆☆☆☆☆☆☆등과 위·수탁 운영계약(2008.6~2010.10월)을 부적정하게 체결하였고
 - 2010.2월~3월 리모델링공사 후부터 식당, 예약실을 계약면적보다 각각 25㎡, 15㎡ 초과하고, 매점(8.7㎡)을 신규 설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③ 계약 연장기간 산정 부적정

- ◆ 여성가족재단은 2009.12.31. ○○○○○(주)와 식당/연수실/웨딩 위·수탁계약(3년)을 체결하고, 당초 제안한 시설투자(인테리어, 가구교체 등) 금액이 증가(당초 490백만원→590백만원)하였다는 이유로 2010.2.22.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 추가 투자한 금액(100백만원) 비율(3년:490백만원=X:100백만원)에 따라 적정 연장기간을 검토하지 않고 ○○○○○(주)에서 요청한 2년 계약기간 연장을 그대로 반영하여 계약·변경함으로써 ○○○○○(주)에게 특혜 제공

④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 ◆ 공유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 허가할 경우에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무상사용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 2011.8.5. 여성능력개발원이 서울형사회적기업인 (주)□□□□(대표 ■■■)에게 건축물 1층 143.37㎡(커피판매점 9.9㎡, 보육실 133.47㎡)를 3년(2011.8.1~2014.7.31)간 사용허가를 하면서 서울시 승인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 하였으며,
 - 이후 허가면적 외 1층 46.6㎡(기업사무실 6.6㎡, 북카페 40㎡)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총 189.97㎡의 공유재산의 사용료 징수 및 관리를 부적정하게 운영
- 행정재산 계약기간 연장 재검토 및 서울형사회적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방안 검토하도록 조치
- 시설물관리를 부적정하게 관리·감독한 관련자 문책

□ 시설물 관리소홀로 재단수입 감소 및 예산 낭비

① 웨딩업무 재위탁 부적정

- ◆ 식당/연수실/웨딩 위·수탁 운영계약서('09.12.31)에 수탁자는 시설 등을 재위탁할 수 없고, 이익배분은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18대82(재단:○○○○○)의 비율로 정산하여야 함에도
 - 시설위탁운영자인 ○○○○○는 2011.5월 웨딩전문업체인 ◆◆◆와 피로연(식당업무)을 제외한 웨딩업무 일체를 재위탁 계약체결하고 별도 운영하면서, 예약실에 ◆◆◆명의를 카드결제기를 별도로 설치하여 웨딩 수입금액(피로연 및 웨딩대관료 제외)이 누락되고 있는데도 방지

⇒ 2011.12.1~12.30 ◆◆◆ 카드매출액 : 11,160천원(현금 결제 등은 확인불가)

② 웨딩 대관료 미부과

◆ 대식당/연수실/웨딩 위·수탁 운영계약서('09.12.31)에 의하면 ○○○○○(주)에서 사업을 위해 사용한 웨딩시설물 대관료를 1건당 15만원씩 부과하여야 함에도

- ○○○○○(주)에서 2011.6~2011.8월 비수기 웨딩활성화 방안으로 웨딩홀 사용료를 무료로 하겠다는 통보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웨딩대관료 19건 2,850천원의 재단수입 손실 초래

○ 자체실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매출액 수입조치 및 계약위반사항에 대하여 적정 조치토록 하고 업무관련자 문책

③ 매출액 배분기준 소급적용 부적정

◆ 위탁시설에 대한 재단의 이익배분은 운영계약서에 따라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18대82(재단:○○○○○)의 비율로 정산하여야 함에도 ○○○○○(주)가 초기 투자금액(590백만원) 증가와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 2010.3.8. 재단행사와 웨딩업체 매출을 총매출액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기로 계약을 변경하고, 2010.1월부터 2월까지 소급·적용하여 2,010천원의 수입손실 초래

- 2010.6.15. 직원식대 지급수수료 정산방법을 기존 매출액 기준에서 재료비의 이익 기준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2010.1월부터 5월까지 소급·적용하여 7,411천원의 수입 손실 초래

- 2010.12.15. 직원야근(후불식권) 식대를 1식당 3,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면서 2010.1월부터 12월까지 소급·지급(특근매식비)하여 9,228천원의 예산 낭비

④ 매점 및 여행화가(회원) 매출액 배분기준 부적정

◆ 매점 및 여행화가 운영계약서에 매월 관리비 및 수수료로 총 매출액의 10%를 지급하도록 계약하였음에도

- 2009.9월 계약(운영자 ■■■)한 여행화가의 관리비 등을 산정('09.10월 ~'11.10월) 하면서 총 매출액(27,356천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의로 재단매출을 제외한 금액(17,197천원)으로 정산하여 1,015천원 손실 초래

- 2011.4.19. 계약(운영자 ■■■)한 건강매점의 관리비 등을 산정(2011.6월 ~12월) 하면서 계약서에 따라 총 매출액(12,770천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의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11,612천원)으로 정산하여 115천원 손실 초래

○ 매출액 배분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누락된 매출(10,551천원) 및 과다 지급한 식대(9,228천원) 수입 조치 및 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 문책

4. 시설물공사 등 계약체결 부적정

□ 전문건설업 무등록업체 시공 및 특혜제공

◆ 공사에정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실내건축공사 등의 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업체에게 공사를 도급하여야 하고,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여성창업보육센터 구축 제안서 제출공고』(여성능력개발원 공고 제2009-20호, 기초금액 : 125,363천원)에 전문공사업인 실내건축공사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제한하였음에도

- 입찰에 참가한 3개 업체[○○디자인, (주)■■■■뱅크, ■■■아트(주)]에 대하여 참가자격 요건(등록여부)의 적정여부 검토없이 무등록업체(○○디자인)를 포함하여 3개 업체 모두 평가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원장 ◆◆◆ 등 7인)에 상정하여 여성능력개발원 ◆◆◆가 추천하였다는 이유로 무등록업체인 “○○디자인”의 평가점수를 가장 높게 부여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 체결(2009.3.27) 하는 등 총6건(186,096천원)을 무등록업체인 “○○디자인”과 부당하게 계약체결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10.4.7.『교육장 화장실 보수공사(10,000천원)』와 2011.6.9.『1,2층 창문교체공사(18,000천원)』를 시행하면서 상급자(●●●)가 추천한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등록업체인 “◆◆ENG”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제공

○ 해당업체(○○디자인, ◆◆ENG)에 대하여 고발 검토 및 업무 관련자 문책

□ 부당 수의계약 및 용역의 완성검사 소홀

◆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재단 「회계규정」 등을 준수하여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대가는 상대자의 입회하에 용역 완성검사를 거쳐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함에도

- 여성가족재단에서는 2010.3.8 「일반건축물 여행매뉴얼 제작 및 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뉴얼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일사업을 2건으로 분리하여 일체의 과업지시 및 산출내역 없이 특정인(○○○, ◇◇대 건축학과 교수)에게 「일반건축물 여행 인증매뉴얼 개발(19,000천원)」 및 「일반건축물 여행인증제 운영으로 인한 삶의 질 개선 등의 효과분석 및 탐색적 경제성 평가 연구(19,000천원)」를 수행토록 약정의 방법으로 총 38,000천원으로 부당 계약 하였으며
- 그 중 「일반건축물 여행인증제 운영으로 인한 삶의 질 개선 등의 효과분석 및 탐색적 경제성 평가 연구」는 단순히 “여성행복 건축물 인증사업에 대한 설문조사(2011.1.27~1.30.)”로 일종의 만족도 조사에 불과하며 설문조사기간이 진행중이던 2011.1.28. 이행검사도 없이 용역대금 잔금 9,500천원을 부당 지급

- 그 외 2009.4월부터 2010.12월까지 12개 사업에 대한 컨설팅, 사업계획수립, 평가지표개발 등을 위한 전문가 약정 명목으로 총 57회에 걸쳐 49명의 대학교수 및 타 기관 연구위원에게 산출내역도 없이 최소 950천원에서 최고 11,000천원을 지급하여 총 159,950천원을 부적정 집행
- 용역사업에 따른 계약시 과업내용 및 비용 산출근거 등 절차이행 준수토록 하고 부당 계약 및 용역완성검사를 소홀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 시설관리 용역비 정산 소홀로 과다 지급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용역대가 지급요청시 대가지급은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 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 또는 검사 조서를 작성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 여성가족재단은 2010.4.1. (주)△△△△△와 여성플라자 시설관리용역계약(2,171백만원, '10.4~'12.3)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실제 납부한 보험료 등을 확인하지 않고, 월정액으로 지급함으로써 '10.4~'11.12월까지 보험료, 기타경비 등 46,057천원 과다 지급
 - 여성능력개발원도 2011.2.1. (주)△△△△△와 시설관리 용역계약(799백만원, '11.3~'13.2)하고 매월 용역대가를 집행하면서 정산하지 않고 월정액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2011.3월부터 2011.12월까지 12,064천원 과다 지급
- 과다 지급된 용역비를 환수하고 용역비 정산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 문책

□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자 선정 부적정

- ◆ 2010~2011년 일자리창출사업 「행복한 여성가게 1+1 프로젝트」사업의 참여자격은 서울시 소재 3인 이하 소규모 여성창업자이어야 함에도
 - 2010.6월 인천시 계양구 ■■동에 사업장을 둔 ☆☆F&G(◎◎◎)를 선정하여 2,540천원을 지원하는 등 사업기간(2010.6월~12월, 2011.9월~12월) 중 경기도 등에 사업장을 둔 창업자 8명에게 15,360천원 부당 지원
 - 프로젝트 참여근로자 6명(●●●외 5명)을 여성가족재단에서 직접 고용하고, 소규모 창업자인 것처럼 인건비(5,980천원)를 프로젝트 사업비에서 부당 지급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5. 조직 및 인력운용 부적정

① 계약직 운용 부적정

- ◆ 「직제 및 정원규정」에 따라 계약직은 수탁사업 등 기간의 범위 내 또는 특수한 기술 등이 필요한 수탁사업의 경우 2년 내에만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고, 계약 기간의 연장 시에는 정원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 여성가족재단은 여성발전기금 모니터링 등 2010년도 수탁사업(20개) 수행을 위해 채용한 계약직 4명(□□□, □□□, □□□, ○○○)의 계약기간이 종료(2010.12.31) 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2010.12.29. 계약기간을 6월~1년 연장하고,
 - 2011.1.17. 직원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계약 연장한 계약직 4명을 정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채용인원을 산정하여 직원 3명(□□□, □□□, □□□)을 신규채용하고 계약직은 계속하여 고용하는 등
-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한 관련자 문책 및 여성가족정책실은 재단의 조직·인력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력관리 철저

② 직원채용 부적정

- ◆ 성평등증진센터는 교육운영요원(위촉연구원)을 공개채용(2011.8.26)하면서
 - 채용공고 기간('11.8.26.~9.2)이 진행 중에 업무가 급하다는 이유로 2011.9.1. 2명(■□■, ○○○)을 부당 채용
 - ※ 당시 접수인원은 110명이며, ■□■, ○○○은 공개채용에 응시한 자임
- 인력채용시 재단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 준수

6. 근무평정제도 운영 부적정

- ◆ 근무성적 평정은 「근무평정내규」에 의거 평가 대상자별로 평정비율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에도
 - 2010년~2011년 정기근무평정(4회)을 실시하면서 대표이사 방침으로 규정에도 없는 대표이사 가점(5점)을 신설하고, 평가자별 평정비율을 임의로 변경하여 적용

◆ 근무평정 결과는 직급별, 직종별로 구분·배분하여야 함에도

- 현원이 8명인 일반직 4급의 근무평정 배분기준(S:A:B:C=2:3:2:1)을 임의로 변경(S:A:B:C=1:5:2:0)하고, 2명인 기능직은 전원 A등급으로 평가하는 등 전 직급 및 직종에서 근무평정 배분기준을 준수하지 않음
- 근무평정시 내규 등 규정을 준수토록하고 근무평정제도를 임의로 변경 운영한 관련자 문책

7. 각종 수당지급 부적정

① 대표이사 방침으로 수당 부당지급

- ◆ 휴일근무수당은 재단 「복무규정」에 의거 법정유급 휴일인 공휴일에만 지급할 수 있음에도
- 대표이사 방침(2010.10.3)으로 무급휴일인 토요일까지 임의로 확대하여 2010.10월 ~2011.12월 ■■■(3급)등 39명에게 21,200천원을 부당 지급
 - 휴일근무수당(21,200천원)을 환수 및 관련자 문책

②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 ◆ 가족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고, 이 규정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에 대하여 수당지급이 가능함에도
- 여성가족재단은 가족수당 지급요건이 되지 않는 직원 5명에게 2007.5월부터 2012.2월까지 2,345천원의 가족수당을 부당 지급
 - 여성능력개발원은 가족수당 지급요건이 되지 않는 직원 2명에게 2008.5월부터 2012.2월까지 2,214천원의 가족수당을 부당 지급
 - 부당지급한 가족수당 환수 조치 및 업무관련자 문책



감사결과 조치

☞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은 여성가족정책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통보하여

- 주무부서인 여성가족정책실로 하여금 경영실태 및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

☞ 신분상 조치

- 위법·부당하게 업무처리한 관련자 35명(중징계 3, 경징계 5, 경고 17, 주의 10)을 비위 경중에 따라 엄정 문책

서울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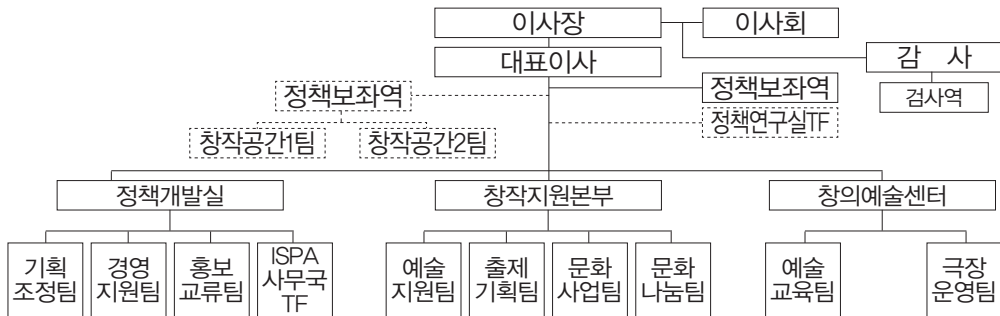
2012년도 우리 시 감사계획에 의거, 서울문화재단의 운영상 문제점 도출 및 개선을 위해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임.

I 감사개요

- ☞ 감사기간 : 2012. 3. 5. ~ 3.16. (기간 중 10일간)
-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10명
- ☞ 감사범위 : 2008. 1. 1.부터 처리한 업무 전반

서울문화재단 현황(2012. 3. 5. 현재)

- 설립 : 2004. 03. 15.
- 조직 : 2본부, 1센터, 9팀(3TFT)



○ 인 력

구분	합계	대표이사	정책보좌역	1~2급	3~4급	5급	6급	7급	계약직
정원	71	1	1	4	17	14	20	14	-
현원	106	0	1	0	6	18	15	15	51

○ 자산 및 예산

- 기본재산 : 1,263억원 (서울시 출연금 800억원, 민간기부금 등 기타 463억원)
- ※ 서울시 현물출연(재단청사 1동) 118억원 미포함
- 2012년도 예산 : 252억원 (서울시 출연금 183억원, 자체수입 등 69억원)

II 감사결과

1. 문화예술사업 운영

□ 예술지원사업 지원금 미정산단체 관리 부적정

- ◆ 예술지원사업 지원금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지원금 반환 등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 '08~'11년간 3,254개 지원사업자 중 (사)○○○ 외 19개 예술지원사업자가 정산기한을 109~1,160일 넘기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미정산 상태로 방치하고, ○○○(대표 ○○○) 등 지원금 미정산 2개 단체에 대해서는 다시 총 176백만원 부당 지원
- 미정산단체 부당지원 관련자(담당 경징계) 문책, 정산서 미제출 단체에 대한 지원금 반환 및 다른 지원사업 지원 제한 등 적극적 지원금 관리 방안 마련 통보

□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추진 부적정

- ◆ '06년부터 국제적 실내악 축제 개최로 국내에서 열세한 실내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SSF)'를 추진하면서
 - 실내악축제 행사는 특정인의 기술·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모를 통해 대행사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06~'11년까지 계속 ○○○에 위탁하여 특혜 제공
 - 사업을 민간위탁 추진 시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이 있는 경우, 사업종료 후 정산하여 초과수입액을 수탁기관에 납부토록 하여야 함에도 매년 점차적으로 수탁단체에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귀속 약정하여 '07~'11년까지 총 1,097,433천원을 사후정산 절차 없이 수탁단체에 귀속시키는 등 특혜 부여
 - 실내악축제 대행사가 자체 공연사업 연주자 연주비로 축제사업비 15,991천원을 10~290일간 유용, 상근직원 인건비 등 단체운영비로 총 64,575천원을 축제사업비에서 부당 집행하였는데도 관리감독 소홀
 - 서울의 문화 마케팅을 명분으로 당초 실내악축제 개최 취지와 맞지 않게 해외공연을 '08~'11년까지 4차례 실시하는 등 예산낭비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본부장, 팀장, 담당 경징계) 문책, 실내악축제 추진방법, 수익금 처리, 프로그램 구성 등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 통보

2. 인사 관리

□ 정원 초과 및 사업계약직 부당 승진임용

❖ 상위 직급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직원의 승진은 「직제규정」에서 정한 직급별 정원 대비 결원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함에도

- '11.1.1.자 정기승진을 실시하면서 7급→6급으로 승진 가능인원이 2명임에도 대표이사 방침으로 5명을 승진시키기로 하고, 최종 승진서열 1, 2위 외에도 ○○○(3위), ○○○(5위), ○○○(10위)을 추가 승진임용 하여 총 3명을 정원초과 부당승진 임용
- '11.7.1.자 정기승진 시에도 6급→5급으로 4명, 7급→6급으로 2명 등 총 6명을 정원초과 부당승진 임용

❖ 사업계약직 직원은 기간제 근로자로 승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 '11.7.1. 대표이사 방침으로 ○○창작아케이드에 근무중인 사업계약직 7급 상당 ○○○(최초 계약기간 '09.5.4.~'11.5.31, '11.4월 '11.12.31.까지 기간연장)를 6급 상당으로 승진 임용하여, '11년도 연봉체결 시 전년 대비 6.0%의 기본연봉을 인상하고도 16.5%의 기본연봉을 추가 인상(전년대비 총 23.5% 인상)하는 등
- '08년~'11년 기간 중 4회에 걸쳐 총 14명의 사업계약직을 승진임용 하여 전년대비 평균 23.1%의 기본연봉을 인상 지급

※ 기본연봉 상승으로 연장근로수당, 직책급, 성과급 등 부가급여 동반상승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본부장 2명, 팀장 1명, 담당 2명 경징계) 문책

3. 법인카드 사용 (업무추진비 등 집행)

□ 업무추진비 등 부당 집행

❖ 문화재단에서 법인카드로 집행한 업무추진비 및 사업비 등 7,537백만원 중 16백만원(0.2%)을 사적 용도 및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부적정 집행

- 대표이사(○○○)가 '08.8.11. 업무와 관련 없는 ○○○○대 ○○○ 모친사망에 근조하 구입비(100,000원)를 집행하고, '08.7.11. ○○○ 연출 ○○아트센터 '폭풍의 언덕' 공연 축하회환을 전달하는 등에 총 65건 5,440천원 부당집행
- 또한 기타 각 부서에서도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 사업비 등을 집행하면서 사적인 용도로 총 16건 1,603천원 사용

- 격려금품은 공로가 많은 상근직원이 퇴직하거나, 명절 등에 상근직원에게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등을 제외하고는 지급할 수 없음에도 '08.8.27. 참기름세트(14박스, 773천원)를 구입하여 비상근 이사 및 감사 14명에게 추석명절 선물로 지급하는 등 총 17건 8,533천원을 사업목적과 다르게 집행

○ 사적 사용한 6,340천원 환수 조치

4. 급여 지급

□ 성과급 지급 부적정

◆ 기관성과급 지급 시 연도 중 입사자 등의 경우에는 월할 계산된 금액을 기관성과급 지급총액(Ceiling)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 '10.12.31. 2010년도 기관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총 22명의 월할계산 대상에 대해 월할 계산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총액에 반영하여 총 29,823,792원이 과다 산정되어 이 중 17,813,157원을 기관성과급 지급대상자 전원에게 부당하게 과다 지급
- '11.10.5. 2011년도 기관성과급 지급 시에도 총 37명의 월할계산 대상에 대해 전액을 지급총액에 반영하여 총 61,851,984원이 과다산정 되어 이 중 39,648,356원을 부당하게 과다 지급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담당 경징계) 문책, 부당하게 과다 지급한 기관성과급 57,461,513원 환수 및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성과급 제도를 내규로 규정 마련 통보

◆ 개인성과급은 근무평가를 실시한 직원에 한해 지급하되, 근무평정 실시 연도 중 입사자는 근무월수만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 '11.5.3. 입사한 5급 ○○○는 2011년도 개인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11.12월까지 근무를 가정하여 월 4%의 정률로 월할 계산하여 기본월봉의 32%(8개월×4%)에 해당 하는 850,550천원 지급하는 등 근무평가 미실시로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닌 17명에게 총 9,805,190원 부당 지급, 월할계산 지급대상 25명에게 전액 지급으로 월할계산 대비 6,998,247원 과다 지급 하는 등 총 16,803,437원 부당 지급

○ 부당 지급한 개인성과급 16,803,437원 환수, 출연기관 개인성과급 폐지(투자기관은 2010년 폐지) 등 성과급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통보

□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기준 불합리

◆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시 문화재단은 「복무규정」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어 ‘월 근무시간’이 226시간이 되므로 월 통상임금을 226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 '08.1월~'10.12월에는 174시간, '11.1월~'12.1월에는 209시간('10.12.27 개정)을 적용하여 총 634,965천원을 과다 지급

※ 월 근무시간 산정 : (주당 근로시간 52시간×52주+8시간)÷12개월 = 226시간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일요일(8시간)+토요일(4시간)

○ 지급기준을 불합리하게 운영한 문화재단 기관경고
시간당 통상임금은 근로기준 법령에 맞도록 보수규정 개정 통보

5. 계약 및 회계

□ 계약업무 처리 및 대가지급 등 부적정

◆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 전문공사 발주 시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업체와 공사를 도급하여야 함에도

- '10.11.29. 2010 서울시 창작공간 페스티벌 행사장 잔디보수 공사(17,800천원)를 하면서 조경식재 미등록 업체인 '○○○○'과 계약체결 하는 등
- '09년~'11년까지 총 9건(해당금액:137백만원)의 전문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등록 업체와 부적정하게 수의계약

◆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용역원가 산정 시 이를 계상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 '10년 서울문화재단 시설통합관리 용역(511백만원) 계약을 체결(○○○, 계약기간 '10.1.1~'10.12.31) 하면서, 사업장 용역인원이 24명임에도 용역원가에 사업소세를 계상함으로써 사업소세 1,982,8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 '09.5.~'11.12월까지 총 8건에 대한 사업소세 5,440,490원을 과다 지급



감사결과 조치

1. 총괄

☞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서울문화재단에 통보하여

-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디자인본부로 하여금 경영실태 및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고
- 관련 직원은 비위 경중에 따라 엄정 문책
 - ※ 시 간부 및 변호사 등 외부인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징계유지 철저

☞ 신분상 조치

- 서울문화재단(26명) : 중징계 2, 경징계 9, 경고 7, 주의 7, 기관경고 1
 - 중징계(2명) : ○○○ 본부장, ○○○ 담당
 - 경징계(9명) : ○○○ 본부장, ○○○ 본부장, ○○○ 팀장, ○○○ 팀장, ○○○ 팀장, ○○○, ○○○, ○○○, ○○○
 - 경고 및 주의(14명) : 별첨
 - 기관경고(1) : 문화재단

☞ 행·재정상 조치

- 행정상 조치 : 32건(시정 13, 주의 17, 개선 2) ※ 현지시정 4
- 재정상 조치 : 9건 117백만원 환수 등

서울시복지재단 종합감사 결과

〈 감사 개요 〉

- 감사기간 : 2012.3.28. ~ 4.10.(기간중 10일)
- 중점감사사항
 -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사업운영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추진실태
 - 복지시설 평가 및 민간위탁 관리 적정성 여부
 - 조직·인력관리의 적정성, 제규정 근거 등

I 일반현황

☞ 설립 일 : 2003.12.31

☞ 인 력 : 정원 7명 / 현원 68명 (정원외 직원 17명 별도)

☞ 예산 및 기금

2012년 예산	기금운용	기본재산
17,464 (市출연금 13,704)	45,276 (市출연금 20,808)	11,500

☞ 2012년 주요사업

- 복지서비스 지원분야
 - 희망플러스 및 꿈나래 통장 45,258백만원(기금)
 - 장애인 자립지원 체험홈·자립생활가정 운영 1,245백만원
 - 서울형 그물망 복지센터 운영 434백만원
- 복지시설 관리 분야
 -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품질관리 285백만원
 - 데이케어센터 인증 및 안심모니터링 109백만원
- 복지정책 개발 분야
 - 사회복지시설 표준 운영비 모델 개발 44백만원 등

II 감사결과

1. 복지서비스 지원

□ 희망플러스 · 꿈나래 통장 중간조사 미 실시 등 관리 부적정

❖ 희망플러스 및 꿈나래 통장사업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과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매칭지원하는 사업으로 참가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증감내용 등을 점검하여 자격기준 초과자에 대하여는 약정 해지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 서울시 복지건강실은 2·3차 참가자 8,247명에 대해서는 10%만 샘플 조사(2011.3.28.~2011.7.28, 6명 자격해지)하고 나머지 참가자에 대하여는 명확한 방침없이 복지재단 주관으로 조사토록 하여
 - 서울시복지재단은 2011.7월부터 2009년 2·3차 희망플러스 및 1차 꿈나래 통장 참가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면서 자치구로부터 2011.11월에 소득·재산 자격기준 초과자 157명(희망플러스 124명, 꿈나래통장 33명)을 통보받았으나, 2012.4월까지 소명을 통하여 부적격자에 대하여 약정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 또한, 조사기간이 도래된 2009년 1,2,3차 희망플러스 통장 참가자(17,456명)의 2회차 조사 및 2009년 2차 꿈나래 통장 참가자(4,156명)와 2010년 희망플러스 1차·2차 참가자(2,800명) 등에 대해서도 중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등 참가자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
- 자격기준 초과자에 대하여 소명을 받아 약정해지 등 사후 조치를 실시하고, 향후 적기에 중간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조치
- ▶ 중간조사를 미 실시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 문책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체험홈 · 생활가정 운영 부적정

❖ 장애인 자립지원시설은 장애인의 입주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시설을 확보·운영하여야 하는데,

- 자립생활 체험홈을 2009.12월 3개소, 2010.5월 6개소 등 9개소 선정하였으나 2개소만 장애인이 적정(시설당 3명~4명)하게 입주하고 7개소는 과소(1~2명 입주) 운영되고 있는데도 11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2012.4월 현재 총 20개소 중 14개소가 과소 또는 공실 상태로 운영되고 있고

- 자립생활가정은 2010.6월에 확보된 5개소 중 1개소만 적정하게 운영되는데도 16개소를 추가 확보하여 총 21개소 중 15개소가 과소 또는 공실상태로 운영되는 등 장애인 입주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시설과다 확보로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예산낭비 초래

◆ 자립지원시설로 확보된 주택 및 구입한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운영협약서 등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 서울시 복지재단에서는 금천구 독산동 소재 자립생활가정을 2010.5월 임차하여 2012.4월 현재까지 입주 장애인이 없어 공실 상태임에도 2010.12 생활용품 22종 5,038천원을 구입하는 등 3개소에 64점 17,396천원 상당을 구매하여 방치

◆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협약서에 의하면 식비 및 소모품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체험홈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 ‘□□□□’이 2010.7.2 당일 437,760원에 상당하는 한우불고기, 갈비양념, 쌀 등의 식품을 구매하는 등 2010년 3~4분기 동안 5개소 운영자가 식료품 및 문구용품 구매비로 운영비 7,393천원을 부적정하게 집행

◆ 장애인 자립지원시설의 코디네이터는 입주 장애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함은 물론 자립생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야하고 생활가정 코디네이터는 자립생활가정 5개소당 1명을 두도록 하였음에도,

- ‘□□□□’ 등 13개 체험홈에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코디네이터를 채용함에 있어 장애인 자립생활 프로그램(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을 운영하기 곤란한 지체 장애인(뇌병변 1급) 17명을 채용하여 입주 장애인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 2010년 설치된 자립생활 가정이 2개소(5명) 이므로 코디네이터를 1명만 채용하여야 하는데 3명을 채용하는 등 기준보다 과다 채용하여 행정보조 업무를 맡도록 하는 등 예산낭비 초래.

○ 장애인 자립지원시설에 대한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운영규모 재조정하고, 입주 장애인을 돌보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코디네이터 채용기준 및 운영비 집행기준 마련

- ▶ 체험홈, 생활가정 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업무관련자 문책

□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인증심의 부적정

◆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2009년~2011년까지 인증심의를 함에 있어 인증기준(4개 대영역 평균 70점 이상, 4개 대영역 개별 취득점수 40점 초과 및 8대 필수항목 1점 초과)에 적합한 시설에 대하여 인증 심의를 하여야 함에도,

- 2009.10.1 인증 부여한 '■■■■■■■■'는 현장실사단 평가결과 4개 대영역 평균이 70점 이하(50.8점)이고 필수항목에서 1점을 받아 인증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임에도 인증 심의에 상정하여 적정시설로 인증하는 등 심의기준에 미달되는 심의제외 대상 9개 시설을 '적정시설'로 의결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인증부여는 물론 보조금(1개소당 평균 76,568천원)을 부당하게 지원 하는 결과를 초래

◆ 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장실사단의 인증기준 및 종합의견을 검토하고, 시설의 향후 운영계획을 평가하여 최종심의 하여야 함에도

- 2010.3.15 '■■■■■■■■'시설 인증심의를 하면서 현장실사단의 '적정' 의견을 심의회에서 임의로 '부적정'한 것으로 의결하는 등 21개 시설에 대하여 현장실사단의 평가결과를 변경하는 등 기준에 위배되게 심의함.

○ 데이케어센터 인증심의 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한 관련자 경징계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정산 부적정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공통 업무처리 기준」에 의하면 법인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의 정산은 사업량의 변동에 따라 보조금도 비례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 기능보강 사업비 120,067천원 [보조금 84,283천원(70.2%)과 자부담 35,784천원(29.8%)]에 대하여 집행검사를 실시하면서 총사업비가 당초 계상된 120,067천원보다 감소된 84,198천원으로 집행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시비 보조금을 비례하여 정산한 후 초과액(21,459천원)을 반환 조치토록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나 적정한 것으로 통보하는 등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노인·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의 집행검사 결과, 검사 소홀로 잘못 정산된 총 64건 182,948천원의 보조금 환수액을 통보하지 않음으로서 반환 미조치

○ 2008~2011년까지 사회복지재단에서 집행검사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재검토 후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등 적정조치 통보

▶ 사회복지재단에서는 사회복지기능보강사업비 집행검사를 소홀히 한 관련자 문책

□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체 선정 부적정

- ◆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계획」에 의하면 위탁체 선정은 최근 5년 내에 사회복지 사업법 및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이사가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음에도,
 - 법인 대표 및 이사에 대한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지 않아 2011.5.11 선정한 영등포구 소재 사단법인 ◆◆◆◆협회 이사 ○○○(2011.6.17 사임처리)은 업무상 횡령혐의로 2010.12.14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청주지방법원)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부적정하게 위탁체로 선정
-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체 선정 절차 및 위탁체 공모시 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주의 조치

□ 연구개발 사업의 정원외인력 채용 부적정

- ◆ 서울시복지재단의 「연구용역 인건비 지급기준」에 공동연구원의 경우 A급은 대학조교수,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월 150만원, B급은 박사학위 소지자,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월 120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2009. 8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의 합리적 지원기준’ 연구에 필요한 외부 A급 공동연구원을 채용하면서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학사학위 소지자(●●●)를 채용하여 A급에 해당되는 인건비 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등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격 미달자 4명을 채용하고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하였음.
- ◆ 위촉연구원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복지재단의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일간신문 등에 모집공고를 하고 「연구용역 인건비 지급기준」의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2008. 1월 ‘◇◇◇◇◇ ◇◇◇◇◇’ 사업에 필요한 연구보조원을 채용하면서 연구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별도 모집광고 없이 재단의 다른 연구에 참여한 적이 있는 연구원(●●●)을 채용하는 등 위촉연구원 11명을 공고절차 없이 채용하였으며,
 - 2008. 1월 ‘◇◇◇◇◇ ◇◇◇◇◇’에 필요한 위촉연구원을 채용하면서 해당 자격기준 부합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지 않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만으로 위촉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56명을 채용
- 연구개발 사업의 정원외인력은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주의조치

2. 인사관리

□ 복무규정에 없는 대체 휴무 부적정 실시

❖ 휴일근무를 한 직원에 대하여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뿐 대체 휴무의 실시근거가 없으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대체휴무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 시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사용이 원칙이고 분할 사용할 수 없음에도,

-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2009.8.13 대표이사 방침으로 ‘휴일근무명령’을 수립하여 4급 △△△ 외 40명이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11년까지 총 55명이 89일의 대체휴무를 사용하였으며,
- 2009.10.18(일) 휴일근무를 실시한 ◎◎◎은 2009.12.11 및 2009.12.15에 4시간씩 분할하여 대체휴무를 사용하는 등 명확한 근거규정 없이 대체휴무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였음.

○ 향후 휴일근무는 복무규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주의 조치

□ 근무성적 평정제도 운영 소홀

❖ 「직원근무평정내규」에 의하면 평정기준일 현재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 휴직 또는 기타 사유로 4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직원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한 후 평가등급별 배분 기준에 따라 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2009년 상반기 일반직 3급 근무평정을 하면서 현원 11명 중 2명이 휴직 및 신규자로 평정대상 제외자이므로 총 9명을 대상으로 배분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평정제외자 2명을 포함한 11명의 배분비율을 적용함으로써 B등급 대상(●●●)이 상위등급인 A등급을 받고 성과급 358천원을 더 받게 되는 등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준과 다른 배분비율 적용으로 총 29명이 상위등급 평정을 받았고 이중 11명이 2,978천원의 성과상여금을 더 지급받았음.

○ 근무평정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 조치하고 업무관련자 문책

3. 급여지급

□ 관리자 연장근로수당 지급

◆ 연장근로에 대한 금전적 보상인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관리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에도,

– 2008. 1월부터 2011. 12월까지 ○○○ 등 관리자 5명은 직책수당으로 월600천원을 받고 있는데도 시간외 근무수당 218,340천원 및 휴일근무수당 30,426천원 등 총 248,766천원을 자체 보수규정에 따라 부당 지급함

○ 관리자 부가급여 지급에 관한 보수규정을 실정에 맞게 정비

□ 가족수당 부당 지급

◆ 가족수당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공무원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에 대하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서울시복지재단은 □□□에게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르고 생계도 같이하지 않는 모친의 가족수당으로 2010.3월부터 2012.3월까지 960천원을 지급하는 등 가족수당 지급요건이 되지 않는 직원(4명)에게 2008. 1월부터 2012. 3월까지 3,900천원의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부당 지급된 가족수당(3,900천원) 환수조치

□ 개인·기관 성과급 지급 부적정

◆ 개인성과급 및 기관성과급은 근무성적평정, 업무성과 등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 지급률을 달리하고 인원비율을 강제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 개인성과급은 인원배분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평가등급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률 50%를 적용하였고,

– 2010년 및 2011년 기관성과급은 근무평정 우수직원(S등급)에 대해서만 기관성과지급률(150%) 보다 10% 인상한 160% 지급하고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A등급, B등급 모두 일률적으로 150% 적용하는 등 관련 규정과 기관성과급 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는 급여 보전식 배분을 하였음.

○ 성과급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기관에 경고조치

4. 업무추진비 집행

□ 업무와 무관한 사적사용

- ◆ 축·부의금품의 지급은 소속 상근 직원 본인 및 배우자, 업무 유관기관 임직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 또는 결혼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함에도,
 - 전 대표이사(●●●)는 2011.8.30. 업무연관이 없는 *** 법률사무소 ***의 부친상에 조의금 100천원을 지출하는 등 총 9건 650천원을 업무관련 없는 자에게 부당하게 집행
- ◆ 법인신용카드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직무수행을 위해서만 집행하여야 함에도,
 - 전 대표이사(●●●)는 2010.7.19부터 2010.9.16까지 60일 간 교통사고 치료차 병가로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도 2010.7.26 ♣♣♣♣에서 지인과의 식사비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153천원을 집행하는 등 총 22건 2,821천원을 사적으로 집행
 - ●●국장(●●●)는 2008.7.24. 새벽 01:03 ♣♣♣에서 지인과 식사비 명목으로 153천원을 집행하는 등 총 5건 업무추진비 423천원을 사적으로 집행
- 사적사용한 업무추진비 3,894천원 환수조치

□ 업무추진비 목적외 사용

- ◆ 축하 화환·화분은 국경일 기념식, 공공기관의 이전, 공공시설의 개소 또는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하거나 전출·입하는 경우에 제공이 가능함에도,
 - 전 대표이사(●●●)는 2008.3.5. ●●● ▣▣▣대 교수 정년퇴임 축하화분으로 50,000원 집행하는 등 승진·영전, 출판기념회 및 학술대회 축하 등에 총 235건 21,450천원을 부당하게 집행함.
- 업무추진비는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주의 조치

5. 계약 및 회계 등

□ 공개경쟁입찰 공고기간 단축

◆ 입찰공고 기간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은 10일,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공고입찰인 경우 10일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복지재단에서는 2011.4.13.「2011 서울시 복지패널 부가조사」용역사업을 발주하면서 추정금액이 154,000천원 이므로 계약규정에서 정한 20일 이상을 공고하여야 하는 데도 10일간으로 단축 공고하여 2번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등 2008.1월 ~ 2011.12월 기간중 5건을 계약규정에서 정한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처리.

○ 계약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을 준수하도록 주의조치

□ 검수기간 미준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검수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연구개발부에서는 ‘전자도서관 구축 정보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을 (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08.5.31일 계약업체로부터 용역 완료보고를 접수하였으나 별다른 사유 없이 검수를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고 60여일이 경과한 '08.8.18 검수조서를 작성하면서 검수조서상 납품완료 일자를 당초 납품일인 '08.5.31이 아닌 '08.08.13로 작성하는 등 부적정하게 검수를 실시.

○ 검수기간 준수 등 계약관련 업무절차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 정보화사업 예산변경 등 절차 없이 추진

◆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에 의하면 예산집행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복지재단 예산총칙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예산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산전용 등 예산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나,

– 2011. 2월 서울시복지재단 기획실에서 전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그룹웨어 대장관리 고도화 계획 수립’ 용역('11.4.2~6.30, 사업비 17백만원)을 추진하면서 예산의 변경절차 없이 기본경비의 자산취득비로 집행하였으며,

❖ 정보화사업은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조례」 제23조 등에 따라 예산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67조 등에 따라 정보화사업 중복여부 등을 검토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타당성 검토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보화사업 중복여부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6개 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 계약관련 업무절차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 자문수당 과다 지급

❖ 서울시복지재단 「회의수당 및 강사료지급기준」(개정 2008.4.14)에 의하면 각종 자문회의 참석수당은 200,000원이며 서면인 경우 100,000원을 지급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2008.9.3 ‘장애인 행복도시 종합계획 수립’ 관련 분과별 서면자문을 실시하고 자문위원 7명에게 각 200천원씩 자문료를 지급함으로써 총 700천원을 더 지급 하였음.

○ 수당지급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Ⅲ 감사결과 조치

☞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은 市복지건강실, 서울시복지재단에 통보하여

- 주무부서인 복지건강실로 하여금 경영실태 및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고
- 관련 직원은 비위 경중에 따라 엄정 문책

☞ 신분상 조치

- 위법·부당하게 업무처리한 관련자 19명을 비위 경중에 따라 엄정 문책
 - 서울시복지재단 (16명) : 경징계 4, 훈계 6, 주의 6, [기관경고 1]
 - 서울시 복지건강실 (3명) : 훈계 1, 주의 2

☞ 행·재정상 조치

- 부당 집행한 예산 22,405천원 환수하는 등 총 27건을 시정 등 처분요구

지하철 승무분야 특정감사 결과보고

I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최근 잇따른 서울도시철도공사 기관사의 사건·사고로 지하철 승무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
- 승무분야 안전점검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발굴된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시민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

- ○○공사 승무원 투신자살('12.3.12, ○○○ 기관사)
- ○○공사 승무원 전보인사 불만사항 차내 방송('12.4.6, ○○○ 기관사)

☞ 감사기간 : 2012. 4. 9.(월) ~ 4. 20.(금), 기간 중 9일

- 서울도시철도(4. 9. ~ 4. 20), 서울메트로(4. 16. ~ 4. 20)
※ 승무 안전점검 : 2012. 3. 15 ~ 3. 30. (기간 중 14일)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7명(각 공사 3명)

☞ 중점감사사항

- 사고기관사에 대한 지도·관리 및 고충처리 적정여부
- 승무 안전관리 실태 및 안전 장애요인
- 승무원 인력관리 및 전직 희망자에 대한 조치 적정 여부
- 기타 인사, 복무, 후생분야 시스템 적정여부 등

II 승무분야 일반현황

□ 기관별 노선현황 및 실태

구 분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총인원(정원)	6,352명(6,518명)					9,183명(9,115명)				
승무방법	1인 승무(기관사)					2인 승무(기관사, 차장)				
운영노선	소계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소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영업거리(km)	152 (148역)	52.3 (51역)	35.1 (38역)	46.9 (42역)	17.7 (17역)	137.9 (120역)	7.9 (10역)	60.2 (50역)	38.2 (34역)	31.7 (26역)
연간수송인원 (만명)	125,086 (823/km)	42,642 (815/km)	24,418 (696/km)	46,461 (991/km)	11,565 (653/km)	150,953 (1,095/km)	17,011 (2,153/km)	74,758 (1,242/km)	28,300 (741/km)	30,884 (974/km)

□ 승무인력 및 근무형태

- ❖ 서울도시철도공사는 7개 승무관리소에서 830명이 기관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 승무PL과 기관사는 개인별 근무일정표(열차 DIA)에 따라 교번제(9조 5교대)로 근무하고, 승무PL은 소속기관사의 교육훈련 및 근태관리에 책임을 짐
- ❖ 서울메트로는 8개 승무사업소에서 1,740명이 기관사 및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음
- ❖ 양 공사 승무원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월 평균 16.4일 근무, 6.5일 비번, 7.5일 휴무하고, 월 근로시간은 151~164시간임(주5일 법정근로시간 174시간)

구 분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소계	운행	대기	편승	기타	소계	운행	대기	편승	기타
근로시간	150:55	68:20	49:59	2:55	29:40	163:54	72:40	53:29	6:03	31:40

※ 양 공사의 감사제출자료 재구성

III 감사결과

□ 승무원 투신자살 (2012. 3. 12. 08:05경)

① 사고기관사 고충면담에 대한 사후조치 부적정

- 2011.5.14. 지도요원 특별면담 및 2011.6.4 병가 허가시 '정신적인 안정과 가료를 요함 (공황증)'이라고 명시하는 등 사고기관사의 공황장애를 인지하고도 철도안전법에 따른 특별신체검사 및 특별적성검사 등 사후조치 미이행
- 2012.2.5. 지도요원은 사고기관사가 '공황장애로 사무직 전직 신청'을 요청하자 이를 개인면담카드에만 기록하고 상급자 보고 및 고충처리시스템 입력을 미이행

② 종료점호 미실시 및 출입금지규정 위반사항 방지

- 승무가 종료된 사고기관사가 종료점호를 받지 아니하고 교대근무지인 △△역을 무단 이탈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가 08:15분 경 사고소식이 전해진 이후 휴대전화 등으로 뒤늦게 확인
- 열차의 운전실에는 열차 담당기관사 이외는 출입이 금지됨에도 교대기관사는 사고자가 불일이 있다며 운전실에 동승을 요청하자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2개역을 이동하여 ○○역에 하차토록 하는 등 제재조치 미흡

□ 승무원 전보인사 불만사항 차내 방송 (2012. 4. 6. 23:03경)

① 사고기관사(○○○)에 대한 수시인사(전보) 조치의 적정성

- 2012.4.9. 수시인사(전보)는 승무관리소별 본선기관사 인력불균형 해소 및 7호선 연장 구간 개통관련 인력충원을 고려, 거주지를 안내하여 적정 시행

② 공사명예 훼손 및 직무태만 등

- 개인적인 인사불만사항을 불특정 다수인이 승차한 차내 방송을 실시하여 익일 저녁 8시 SBS TV뉴스 등에 부정적인 내용으로 보도되는 등 공사명예 훼손

□ 인력운용 및 인사관리

① 승진·전직·전보 인원 및 기준 등 사전 미공개로 인사투명성 저해

- 사전 전직 수요조사를 실시하고도 예상규모 및 우선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고 전직 희망신청서를 인사담당자의 개인이메일로만 비공개 접수하여 대상자가 없거나 결원이 없는 직렬로 다수가 전직을 신청토록 한 후 인사위원회에서 대상자 없음으로 결정하여 인사 불만 야기(○○공사)
-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정기승진 및 정기전보 등을 실시하면서 인사기준 및 방향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음(△△공사)

② 2012년도 전직시행 부적정

- 직렬간 인력 불균형 해소 명목으로 결원이 없는 △△직, ○○직 등을 포함한 전 직렬을 대상으로 결원과 무관하게 임의 전직 실시(○○공사)
- 조직개편 명목으로 전직시험 또는 인사위원회 의결 등 정당한 절차없이 기지 ○○업무 종사자 ○○직 79명을 ▽▽직으로 전직 시행(△△공사)

③ 운전업무 부적격자 및 고충처리자 조치 소홀

- 2012년도 전직 신청 시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 수면장애 등을 최종진단 받은 기관사 6명이 정신장애 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승무중지, 특별신체검사 및 특별적성검사 등 적정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음(○○공사)

□ 승무 안전관리

① 형식적인 승무적합성 검사 (공 통)

- 승무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인 승무적합성 검사가 음주여부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본인 문답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최근 3년간 부적합 건수는 ○○공사는 102만건 중 2건, △△공사는 232만건 중 0건임

※ ○○○기관사도 투신 2시간 전 실시된 당일 승무적합성 검사에서 적합 판정

② 무리한 수동운전 강요로 업무부담 가중(○○공사)

- 2008.7.8 사장방침으로 자율적 수동운전이 가능토록 하였으나 개인별 실적을 관리하면서 우수기관사 표창 및 가점, 자체경영평가, 실적부진자 직무재교육 등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여 수동운전은 95%임(노조간부급을 제외한 전원 참여)

③ 스크린도어 설치 및 출입통제 부적정(○○공사)

- 선로 내 출입은 종합관제센터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148개 전 역사(922개 출입문)에서 동일한 비밀번호를 승무원, 기술관리소 등 4,500여명의 관계자 전원이 공유하면서 수시출입이 가능토록 운영
 - ※ 사고자인 ○○○ 기관사도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임의 출입하여 투신
- ○○역 등 43개역에서 스크린도어 출입문 경보음 울림, 기관사 출입문 열림 시 종합제어반 현시 등이 되지 않게 부적정 설계·운영
- △△역 등 27역의 스크린도어가 설계와 다르게 기관사 출입문 열림 시 종합제어반 모니터에 해당정보가 현시되지 않게 설치되었음에도 부적정하게 검수

□ 건강 및 보건 관리

① 보건관리자 선임 부적정(○○공사)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1명 이상의 보건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함에도 총 39개(본사, 영업관리소 9개소, 승무원관리소 7개소, 차량관리소 6개소, 기술관리소 13개소, 지원단 3개소) 사업장에 7명만 선임하여 통합·운영하는 등 보건관리 미흡
 - ※ △△공사는 26개소 사업장별로 26명의 보건관리자를 선임·운영하고 있음

② 승무원 정신건강(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등 관리 미흡

- 공황장애, 인적오류 등을 이유로 총 29명의 승무부적격자(故○○○ 기관사 포함) 명부를 관리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특별신체검사 등 미이행(○○공사)
- 사상사고 발생 시 3~5일 특별휴가 및 정신과 상담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공사는 원하는 경우에만 상담이 이루어져 실적이 미미('08년 이후 30,300원)하고, △△공사는 지원 실적 없음(공통)
- 철도종사자 정기신체검사(2년주기)에는 공황장애 및 수면장애가 추가되었으나 정신계통 항목은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스스로 작성한 문진표에 '있음'으로 체크한 경우에만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보류' 하여 정확히 판정이 어려움(공통)

③ 병가, 연가 등 실적을 평가지표로 부적정 반영

- 소속부서원 성과급 및 개인종합평정, 우수소속 포상에 활용되는 등 인사관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체경영평가 지표로 기관사 유고율(병가, 연가 등)을 설정하여 개인의 유고가 부서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매년 통제를 강화하여 기관사가 병가 및 연가를 사용하기 부담스럽게 운영(○○공사)
- 반기별 운전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최우수 사업소를 선정하면서 병가사용건수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자체경영평가에 부정적 반영(△△공사)

□ 승무직원 복무관리

① 지각출근자 근태관리 부적정

- 지각출근자는 근무성적평정지침 등에 따라 정기근무성적평정 및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을 위한 개인별 평가시 감점하여야 함에도 지각 출근자에 대한 소속장의 근태관리가 미흡하여 감점조치하지 않고 만취상태로 3시간 28분 지각 출근하여 승무적합성 검사에서 혈중알콜농도 0.17%로 측정된 직원에 대해 교육만 실시하고 별도의 근태관리 미흡(○○공사)
- 지각출근자는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를 근거로 감점기준을 적용하여 근무평정 등에 적정 반영하여야 함에도 승무관리소별로 감점기준을 다르게 정하여 근무평정 등에 반영하여 형평성 저해(△△공사)

② 철도안전교육 미이수자 근태관리 소홀(○○공사)

- 철도안전법 및 기관사지도운용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분기별 철도 안전교육 미이수자 등에 대한 근태관리 소홀

IV 감사결과 조치

☞ 감사결과 적출된 부적정 사항은 ○○공사, △△공사에 통보하여

- 승무직원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과 지도운용기준 등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고
- 관련 직원은 비위 경중에 따라 엄정 문책

☞ 신분상 조치

- ○○공사(8명) : 중징계1, 경징계1, 징계시효경과 경고2, 경고4

☞ 행·재정상 조치

- 행정상 : 23건(시정 9, 주의 7, 통보 7)
 - ○○공사 : 15건(시정 7, 주의 5, 통보 3)
 - △△공사 : 8건(시정 2, 주의 2, 통보 4)
- 재정상 : △△공사 1건 1,358천 환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예산운용 실태와 시 위탁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임

I 감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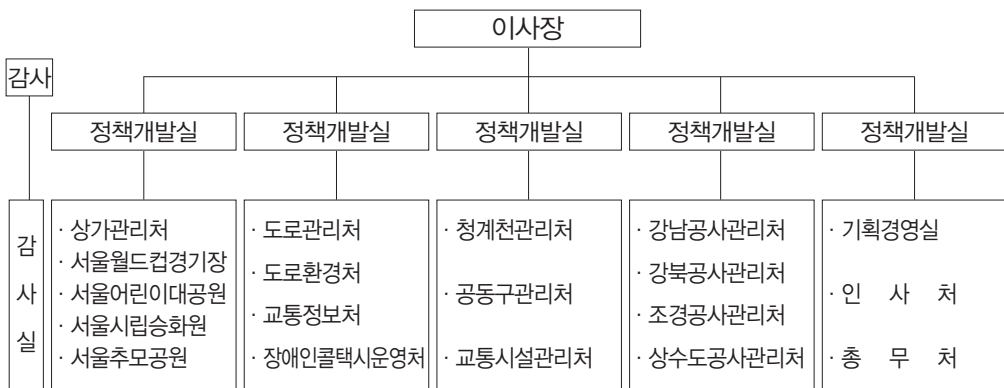
☞ 감사기간 : 2012. 5. 14. ~ 5. 25. (기간 중 10일)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21명

☞ 감사범위 : 2009. 1월 이후 처리한 업무전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현황

- 설립 : 1983. 9. 1.
- 조직 : 5본부 20처(실·원·장) 43팀 20현장관리소



○ 인력

구분	계	임원	일반직				특정직 (무기계약직)	서비스직 (장애인콜택시 종사원)
			소계	1급	2~3급	4급이하		
정원	1,955	5	1,068	16	56	996	469	413
현원	1,817	5	1,014	16	58	940	411	387



감사결과

1. 대행사업분야

1-1 대행사업분야

- 도로관리처 : 자동차전용도로 13개노선 176.72km 도로시설물 관리
- 도로환경처 :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녹지관리, 수방·제설작업
- 교통정보처 : 자동차전용도로 및 간선도로 등 교통관리시스템 운영
- 장애인콜택시운영처 : 장애인콜택시(330대) 24시간 연중 무휴 운영

□ 내부순환도로 집수구 설계·시공 부적정

특수교량인 내부순환도로의 우기시 원활한 배수를 위한 집수구 확대개량 공사를 시행하면서 안전성을 무시하고 슬래브 절취 등 부적정한 설계·시공

《 설계관련 》

❖ 슬래브 절취, 철근 절단 등 구조물 손상이 수반되는 설계를 하는 경우 현재 구조물의 상태 평가와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함에도

- 내부순환도로 교면포장 개량사업 설계용역(174백만원)에 포함하여 집수구(22km, 총1,307개소)를 확대(250×250→300×1,000mm) 개량하는 설계를 시행하면서
- 슬래브의 철근 피복두께가 40mm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조적 안전성 검토나 市 도로 관리부서인 ○○○○○에 절취관련 협의없이 슬래브 두께 250mm중 최대 140mm 절취하고 철근을 절단하는 것으로 제 기준에 맞지 않게 설계하였고, 이 사실을 미리 알았으면서도 준공기한이 도래되었다는 이유로 설계용역을 준공처리

《 시공관련 》 - 집수구 1,307개소 중 480개소 시공(264백만원)

❖ 시공 과정에서 설계대로 시공시 철근 절단 등 구조물 훼손이 발생하게 되자 설계변경없이 시공자에게 절취 슬래브 두께만 변경(설계 140mm→변경 40mm)하는 것으로 도면을 작성, 시공토록 지시하고

- 노출된 철근 위에 몰탈 덧씌우기 후 상부 표면을 방수층없이 시공하여 시공된 몰탈이 구조물에서 분리되어 철근 노출 등이 예상되고
- 철근 피복두께는 도로교 설계기준(50mm이상)에 못미치는 20~30mm밖에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교량 슬래브 끝부분의 내하력과 내구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 시공된 집수구(480개, 4.84km)는 배수로 바닥보다 20~30mm 높게 돌출 시공됨으로써 집수효율 제고라는 당초 목적 달성없이 예산만 낭비(264백만원)하였음.

※ '12~'14년 향후 설치예정 집수구 : 827개(설계가 524,800천원)

❖ 또한, 공사구간중 “강변북로~성산램프~흥제램프” 구간은 아스팔트 포장(6회)시 매회 실시하여야 할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않음

※ 감사기간중 시험의뢰한 결과, 개질아스콘은 체가름시험에 불합격하는 등 품질관리 소홀

○ 구조물 상태평가 및 조치방안 마련

추가 시공분은 재설계·시공하고, 설계업체 및 책임기술자 부실벌점 부과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 교통정보시스템 부당 예산편성 및 집행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에서 사업 재검토 및 예산 전액 삭감토록 결정되었는데도 편법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 신규 정보화사업이 민간위탁금에 편성된 경우 市 본청 주무부서를 경유, 市 ○○○○○의 타당성 사전심사를 받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변경하여 예산을 재편성 집행할 수 없음에도

- ○○○○○에서는 신규 사업인 "2012년도 IPTV 교통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 IPTV 양방향 교통정보서비스 공급시스템의 "시스템 안정화"와 "배경음악 제공"의 2개 사업으로 나누어 주무부서(○○○○담당관)를 경유하지 않고 정보화사업 예산 타당성 심사를 요청하여, 심사결과 "배경음악 제공" 사업은 시급성이 없다는 사유로 재검토 및 예산 전액(158백만원) 삭감토록 통보되었는데도

- "도로전광표지, 영상검지기 기타설비 등 이설 및 음성보완"이라는 내역으로 13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12년도 IPTV 교통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에 전액 반영 발주하는 등 부적정하게 예산 편성 및 집행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 올림픽대로 등 미끄럼방지포장 공사 준공 부적정

◆ 공사 준공시는 설계도면 등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되는 지와 공사 시공부분에 대해 검사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후 준공하여야 함에도

- 2010년 강남도로부속물 정비공사('10.1.1~12.28, ○○건설, 1,004백만원)를 시행하면서, 올림픽대로 및 노들길의 미끄럼방지시설이 종방향(진행방향)으로 설계 및 시공(3,880㎡) 되었는데도 시공단가가 비싼 횡방향으로 시공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정산하고, 추가 80㎡를 더 시공한 것으로 정산하여 공사비 31,225천원 과다 지급

- 과다 지급된 공사비(31,225천원) 환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 장애인콜택시 차량정비 용역계약 부적정

◆ 장애인콜택시는 중형승합(2497cc)으로서 차량정비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에 등록된 업체와 계약하여야 함에도

- ○○○○○○○○○에서는 '09~'11년까지 매년 장애인콜택시 차량관리 및 정비 용역(기간 : '09.9.1~'12.9.30)을 시행하면서
- 자동차종합정비업이 아닌 소형자동차정비업(장애인콜택시 정비 불가)에 등록된 ○○○○○○(주)와 3년에 걸쳐 총 1,820백만원 수의계약(단독응찰로 2회 유찰)하여 차량 정비용역 시행

- 자동차정비업 작업범위 위반업체 범칙금 부과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1-2 공사관리분야

- 市 및 자치구 토목·조경·상수도공사 감독위탁
※ 전면책임감리 및 부분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않는 공사(200억미만)

□ 흥제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과다 설계 및 공사비 정산 부적정

조경석 쌓기 수량 등을 과다 산출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과다 산출된 조경석(5,976톤)은 관급자재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사용처 규명 불가

《 설계관련 》

❖ ○○구(○○○○과)에서는 홍제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07.5.8~ 12.20, ○○엔지니어링, 175백만원)을 시행하면서

- 사급자재가 반영된 조경공의 조경석쌓기(405m, 202톤)는 적산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량을 산출하였으나,

- 관급자재가 반영된 저수호안공의 조경석 4목(400×500×600) 3,910㎡, 6목(500×600×700) 4,403㎡ 쌓기 수량 산출은 적산기준에 따른 "면적×뒷길이(중간치)×실체적률(0.7)×단위중량(2.65)×할증" 산식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 설계시 뒷길이(4목 : 500→600mm, 6목 : 600→700mm)와 실체적률(0.7→1.0)을 착오 적용하는 등으로 적정 수량 보다 6,736톤 많게 설계함으로써 219,943천원을 과다 설계



《 시공관련 》

❖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홍제천 생태하천 조성공사('08.6.27~'09. 12.19, ○○건설, 5,916백만원)를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공사감독하면서

- 당초 설계내역에 조경공과 저수호안공의 조경석 산출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수량이 잘못 산출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 저수호안공의 조경석 쌓기 면적이 증가(4,293㎡)되는 설계변경시, 할증률(15→5%)은 줄이면서 뒷길이와 실체적률은 조정하지 않고 수량을 산출함으로써 8,987톤을 과다 반영하여 255,860천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 홍제천 우안 자전거도로 옆 조경공 조경석쌓기 구간은 사급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시공자가 관급자재 309톤(8,253천원)을 유용하여 시공하고, 공단은 그대로 준공 처리하였으며

〈관급자재 조경석 수량 과다반영 현황〉

규 격	설 계 (○○구청)					준 공 (공단)				
	면적 (㎡)	계약 (톤)	재산정 (톤)	과 다 (톤)	금액 (천원)	면적 (㎡)	구 매 (톤)	재산정 (톤)	과 다 (톤)	금액 (천원)
계	8,313	16,542	9,806	6,736	219,943	12,606	21,603	12,616	8,987	255,860
4 목	3,910	7,149	4,171	2,978	92,735	4,191	6,365	4,196	2,169	57,934
6 목	4,403	9,393	5,635	3,758	127,208	8,415	15,238	8,420	6,818	197,926

- 과다 설계되어 구매된 관급자재인 조경석 21,603톤은 공사 최대 사용분 15,318톤과 사급자재 대신 유용한 309톤을 인정하더라도 최소한 5,976톤(25톤 덤프트럭 239대분, 168백만원 상당)은 관급자재 수불부 및 납품송장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그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음
- 또한, 세월교 등의 구조물 시공을 위한 거푸집(3,502㎡)은 유로폼으로 시공되었으나, 합판거푸집으로 정산하여 공사비 23,200천원 과다 지급
- 관급자재(조경석) 유용분 및 과다 지급된 합판거푸집 공사비 등 31,453천원 환수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은 관급자재(조경석)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는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

□ 회현지하도상가 출입구 개선공사 공사비 과다 계상

◆ 공사감독관은 설계변경시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 ○○○○○○는 회현지하도상가 출입구 개선공사('10.7.26~'12.12.31, ○○○○건설, 7,949백만원)를 ○○○○○○본부로부터 위탁받아 공사감독하면서
- '11.6.27. 등 3회의 설계변경시 지하도상가 출입구 캐노피 마감재인 “SST'L 강판설치” 신규비목(5개 출입구, 816.1㎡) 단가를 과다하게 산출(적정 149,764원/㎡→ 설계 306,492원/㎡)하여 공사비 161,480천원 과다 계상
- 과다 계상된 공사비(161,480천원) 감액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 환경보전비 등 정산 부적정으로 공사비 과다 지급

◆ ○○○○○○는 성내유수지교 보수공사 등 8건의 환경보전비 정산을 잘못하여 공사비 11,143천원 과다 지급하고

- 대치역주변 침수방지 시설공사 등 7건의 공사는 교통소통대책용역비 정산 부적정으로 27,001천원 예산낭비

◆ ○○○○○○는 벚골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공사 등 12건의 환경보전비, 흙막이 가시설공사 등 정산 부적정으로 공사비 63,701천원 과다 지급하고

- 지하문터널 보행로 환경개선공사 등 6건의 공사는 교통소통대책용역비정산 부적정으로 27,790천원 예산낭비

◆ ○○○○○○는 대현산공원 조성사업 등 13건의 환경보전비, 잔토처리 등 정산 부적정으로 공사비 24,499천원 과다 지급

◆ ○○○○○○○○는 공항로주변 송배수관정비공사 등 36건의 환경보전비, 잔토처리 등 정산 부적정으로 공사비 47,695천원 과다 지급하고

- 2011 삼성배수지 배수관 부설공사 등 7건의 공사는 교통소통대책용역비 정산 부적정으로 71,623천원 예산낭비 등

◆ 총 69건 공사비 147,038천원 과다 지급, 총 20건 126,414천원 예산낭비

○ 과다 지급된 공사비(147,038천원) 환수, 계약문서 작성시 교통소통대책비를 정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관련자 문책

1-3 사업운영분야

- 상가관리처 : 29개 지하도상가 2,783개 점포 관리운영
- 월드컵경기장 : 경기장 및 월드컵몰 등 관리운영
- 어린이대공원 : 식물원, 동물원, 놀이시설, 야외공연장 등 관리운영
- 시립승화원 : 화장로(23기), 추모시설, 자연장지, 묘지 등 관리운영
- 서울추모공원 : 화장로(11기) 관리운영

□ 지하도상가 청소 등 용역비 과다 지급

◆ 청소·경비·시설물관리 용역계약서 및 청소·경비용역 표준지침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4대보험에 가입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결원시 그 인건비를 감액하며, 미화원과 관리장은 만65세 이하, 경비는 만60세 이하로 자격요건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 28개 지하도상가를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청소·경비·시설물관리 업무를 '11.2~'13.1 월 민간위탁(총사업비 16,255백만원)하면서

- 용역원의 실제 근무일수, 4대보험 가입여부 등 계약이행에 대한 확인없이 허위 작성된 출근부 등에 의거 매월 용역비로 총34,154천원 과다 지급

- 강남권역을 관리하는 (주)○○○○○○○○은 '11.2.1. 미화원을 채용하면서 만82세('29.0.00生)인 ○○○을 채용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은 미화원, 경비원 등 70명을 2~12개월간 임의로 채용하였는데도 관리감독 소홀

○ 과다 지급한 용역비(34,154천원) 감액,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 지하도상가 광고 및 자동판매기 계약방법 및 관리 부적정

◆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체결시 일반입찰에 의거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고, 광고는 승인받은 장소에 한해 설치할 수 있음에도

- 지하도상가 벽면, 기둥 등의 광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위탁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市로부터 승인받았다는 이유로
- 강남역 등 8개 지하도상가 광고물을 협약(예정가대비 평균 104%)으로 계약 체결하여 '09~'10년 지하도상가 광고입찰 평균 낙찰률(123.9%) 보다 19.9% 낮게 계약함으로써 3년간 1,042백만원의 세입손실을 초래하였고
- 부착된 광고물 중 명동역 3개(10.92㎡), 을지로2·4구역 4개(21.6㎡)의 광고물은 계약과 달리 추가 설치되었음에도 변상금(5,819천원) 부과 등 미조치

- 협약에 의한 계약방법 재검토
추가 설치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등 조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체결시 일반입찰에 의거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고, 음료자동판매기는 계약자가 직접 관리(장애2급이상 제외)하여야 함에도

- 강남역 등 4개 지하도상가의 음료자동판매기(10대) 위탁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운영자를 추첨으로 선정하여 어린이대공원의 자동판매기 평균낙찰률(114.1%) 대비 9.3% 낮은 104.8%로 계약함으로써 8,598천원의 수입손실 초래하였고
- 을지로지하도상가에서 위탁받은 7명중 5명은 관할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설치·영업하고, 4명은 생활보호대상자 등으로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음에도 대리인 지정을 부당하게 승인

- 대리인 승인 취소 및 영업신고토록 조치하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 지하도상가 경비초소 임대료 미부과

◆ 지하도상가를 위탁관리함에 있어 市의 지도·감독을 받아 임대목적물에 대한 임대료 부과 징수 및 무단점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 ○○○○ 지하도상가 무상사용기간 만료('08.9.28)후 市로부터 경비초소(7.45㎡)에 대해 임대료 부과를 통보 받았음에도 경비초소 임대료 14,803천원 미부과

- 임대료 부과 및 향후 처리방안 검토

□ 월드컵 주경기장 사용료 부과·징수 등 부적정

- ◆ 체육시설 사용료(추산액)는 사용허가시 지정 기한까지 납부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행사를 취소해야 하며, 사용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 '08.4.16. ○○○와 ○○○○○○ 오케스트라 콘서트('08.9.27 개최)의 월드컵주경기장 사용허가시 ○○○○○○○(주)에게 추정사용료 2억원을 행사전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허가하고서는 1억원만 징수후 사용허가
 - 정산 사용료 149백만원 중 차액 49백만원은 현재까지 법인 무재산 및 행방불명 등으로 미징수하여 세입손실 초래
 - 월드컵경기장내 공공용지(25㎡)에 실외기, 자판기 등을 무단 설치한 ○○○○○○○(주)에 대해 '09.8.17. 시정토록 통보한 후 철거 등 시정하지 않고 계속 무단사용하고 있음에도 변상금 18,704천원 미부과
- 미납된 사용료 징수방안 강구 및 변상금 부과 사용료 부과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 시립승화원 봉안용기 납품업체 선정 등 부적정

- ◆ 봉안용기 19개 품목 35종에 대해 심사위원 평가(60), 실적 및 신인도(10), 가격(30) 점수를 합산하여 품목별 상위 1~4개 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하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가격점수를 산정토록 입찰 공고하였음에도
 - ○○○○○은 '11.2.17. 입찰참여 업체의 봉안용기 가격점수 산정시 100분의 60으로 산정하지 않고, 입찰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함으로써 25만원이하 도자기함 등 5개 품목 10종의 납품업체 순위가 바뀌는 등 부적정하게 납품업체 선정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 ◆ 용역완성 검사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사항이 계약내용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 ○○○○○은 '10.2.23. ○○○사와 23기의 화장로가스냉각기청소를 총92회(1기당 4회) 시행하는 용역계약(계약금 : 116,216천원)을 체결하고서는
 - 실제 69회(1기당 3회)만 청소하였는데도 일일업무일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92회 청소한 것으로 준공처리하여 29,054천원의 용역비 과다지급
- 과다 지급한 용역비(29,054천원) 환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 사업비 사적용도 사용 등

대행사업비로 배정된 사업추진 부대경비 등을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처리 부적정 등

《 추모공원 》

◆ '09.1~'12.4월 기간중 총 1,988천원 사적용도 사용

- '11.3.31. ○○○○○○○○(○○○)은 市 ○○○○팀장(○○○), 담당(○○○)과 업무 추진 간담회 후 23:22 중구 태평로 소재 ○○○○○ 69천원, 익일 01:28 중구 회현동 소재 ○○○○○○에서 양주 등을 취식하고 그 대금 1,180천원 등 총1,249천원 대행 사업비에서 집행
- 담당자(○○○)는 심야시간 택시 이용 11회 196천원, 음식점이용 14회 543천원 등 총 739천원 사적용도 사용

◆ 총 800건, 88,404천원 회계질서 문란 등

- '09.1~'11.4월중 787건 76,790천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사용하면서,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사용내역을 담당자가 별도 관리하고 사용목적, 사용자 등의 증빙서류를 미첨부하여 회계처리
 - 대부분 공적용도이나 3회 362천원은 직원격려 등 목적 외 사용(○○○○)
- '11.12.27. 준공식행사 간담회후 식사비 1,176천원을 3회로 분할하는 등 총13건 11,250천원을 부당하게 분할 결재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

《 어린이대공원, 월드컵경기장 》 - 사적용도 사용

◆ '11.5.19. ○○○○(○○○)은

- 중구 태평로 소재 ○○○○에서 개인적 용무의 식사비로 72천원을 지출하는 등 '09.2~'12.4월 총 7건 536천원 심야시간대 사적용도 사용

◆ '11.2.24. ○○○○○○ ○○담당(○○○) 등은

- 마포구 성산동 소재 ○○○○에서 개인적 용무로 지인과 만나면서 식사비로 101천원을 지출하는 등 총 4건 355천원 심야시간대 사적용도로 사용

- 사적사용한 2,880천원 환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1-4 시설관리분야

- 교통시설관리처 : 공영주차장(40), 공영차고지(11), 혼잡통행료(2) 관리
- 청계천관리처 : 청계천(8.12km) 및 청혼의 벽 등 문화디지털 관리
- 공동구관리처 : 공동구(6개소, 32.8km) 관리

□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소 증설 운영 부적정

◆ 공영주차장관리 위·수탁 협약서에 의하면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고, 경비는 편성예산에 따라 지출하며, 예산 전용시 공단 ○○○○○의 전용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함에도

- ○○○○○○○는 市와 별도 협의 및 승인없이 '11.11.2. 이사장 방침으로 기존 주차장 관리소(잠실) 외에 강북주차장관리소(종묘)를 증설하였으며
- 잠실 통합전산센터 리모델링(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교체)을 위한 '11년 예산 55,172천원을 통합센터를 본사로 이전하는데 임의 전용하고
- 증설 및 이전관련 추가 소요인원 9명을 충원하기 위해 일용직을 채용하여 '11.12~'12.5월 97,650천원 상당의 인건비를 집행하는 등 편법 운영

- 공영주차장 주차장관리소 증설 운영 재검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 공영차고지 버스도색용 도장시설 설치 부적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버스도색용 도장시설은 개발제한 구역 내 버스차고지에 설치할 수 없음에도

- ○○○○○○○○는 관련규정 검토를 소홀히 하여 개발제한구역인 중랑공영차고지 내에 대기배출시설인 버스도색용 도장시설(144㎡)을 151,110천원의 예산으로 '09.6.26. 설치하여 운영

○ 적합 용도로 용도변경 등 조치하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 혼잡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부적정 등

◆ 혼잡통행료(2,000원)를 납부하지 않고 통행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08.6.22. 제정·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09.4.1.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市 혼잡통행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등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 '09.3.24. 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사전고지, 가산금 부과 등에 따른 징수비용(13,900원)이 과태료(10,000원)를 초과하는 문제로 심사보류된 상태에서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음에 따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미납시 징수하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 부과권을 상실함으로써 체납률이 37.88%(14,361건, 135,080천원), 30건 이상 상습체납자 24명(총11,760천원)이 발생하여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부합하는 방안 검토 추진

◆ 공영주차장 월정기주차권 발급시 대중교통 환승,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후 감면하여야 함에도

- '10.1~'12.5월 잠실역주차장 등 24개 주차장에서는 주차요금 감면신청자(12,538건, 478,849천원)의 증빙자료 확인없이 감면 처리하였고, 이중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2,258건 68,597천원의 월주차요금 감면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 청계천 및 공동구 관리운영 부적정

◆ 사업장폐기물인 하수준설토는 흘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음에도

- 청계천의 복개구조물 및 집수정 등에서 3년간 준설한 총4,336톤의 하수준설토를 바닥, 지붕 등의 아무런 조치없이 노출된 상태로 2개월('10년도 166.25톤 약8개월) 정도 청계천 하류의 산책로 및 수로와 연결한 둔치상에 부적정 보관

○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

❖ 공사원가계산시 노무비는 표준품셈에 의한 노무량에 시중노임단가 등을 적용한 단위당 노무비를 산정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공사 발주하여야 하는데도

- '11년 청계천 조정시설 보수공사(○○○, 172백만원)의 목재면도장 공종의 노무비 단가를 과다계상(4,325원→10,602원/m²)하여 14,104천원 예산낭비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 국가중요시설인 공동구의 관리자·점용자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출입목적·인적사항 등을 기록하는 등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함에도

- ○○○○○○는 ○○○(CCTV케이블), ○○○○○(통신케이블) 등 14개 점용기관이 매분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 정기점검을 위해 공동구에 출입한 (주)○○ 직원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는 등 '10.1~'12.3월 총 11,130명중 297명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기록후 출입한 10,833명 중 948명은 출입목적 등을 미기재 하는 등 보안관리 소홀

○ 안전점검 미 실시 기관에 대한 제재방안 강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

2. 인사 등 지원분야

□ 정원 초과 부당 승진임용

❖ 승진 임용은 인사규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대비 결원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 ○○○에서는 '09.4.1. 일반직 5급을 결원이 없는데도 7명 승진시키는 등 5회에 걸쳐 32명을 결원이 없는데도 승진 임용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 특정업무수행경비와 대민활동비 중복 지급

- ◆ 특정업무수행경비는 예산·결산·감사 등 특정업무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 80,000원 범위내에서 지급이 가능하고, 특정업무수행경비의 일종인 대민활동비와 병급할 수 없음에도
 - ○○○에서는 예산·감사·경영평가·결산·노무업무담당 및 혁신전담 부서원에게 특정업무수행경비로 매월 80,000원씩 예산 편성하여 지급하면서
 - 대민활동비도 4급이하 전직원에게 매월 50,000원씩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는 등 '09년부터 89명에게 53,400천원의 대민활동비 중복 지급
- 중복 지급한 대민활동비(53,400천원) 환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

□ 특정직에서 일반직 전환시 다면평가 운영 등 부적정

- ◆ 특정직에서 일반직 전환시 직군별·직급별 정원의 범위내에서 전환하여야 하고, 다면평가는 10명의 평가위원 점수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야 함에도
 - ○○○는 '10.3.1. 특정직(기술직종)을 일반직 6·7급 24명 전환하면서
 - 일반(토목·건축) 4~6급의 결원이 2명인데도 6명 선발, 관리(토목·건축) 5~8급은 1명이 과원인데도 4명, 관리(전기) 5~8급은 3명이 과원인데도 4명, 관리(조경) 5~8급은 1명이 결원인데도 2명을 선발하는 등 정원과 관계없이 일반직으로 전환하였고
 - 그 과정에서 특정다급에서 토목6급으로 전환대상자 30명의 다면평가위원수가 ○○○은 3명, ○○○ 7명, ○○○ 5명, ○○○ 6명 등 각 직렬 대부분 기준없이 다면평가 운영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감사결과 조치

1. 총괄

☞ 감사결과 적출된 부적정 사항은 市 주관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하여

- 대항사업 운영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고
- 관련 직원은 비위 경중에 따라 엄정 문책

☞ 신분상 조치

- 서울시설관리공단(29명) : 중징계 1, 경징계 6, 경고 22
- 서울시(2명) : 훈계 2

☞ 행·재정상 조치

- 행정상 : 56건(시정 23, 주의 32, 개선 1) - 현지사정 19건 별도
- 재정상 : 16건 506백만원 환수 등

서울신용보증재단 종합감사 결과

2012년 우리시 감사계획에 의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운영상 문제점 도출 및 개선을 위해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임.

I 감사개요

- ☞ 감사대상 : 서울신용보증재단
- ☞ 감사구분 : 종합감사
- ☞ 감사기간 : 2012. 6. 18. ~ 7. 6. (기간 중 15일간)
-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13명
- ☞ 감사중점사항
 - 조직·인사관리 및 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여부
 - 출연금 등 기본재산 관리 적정여부
 -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및 사후관리 적정여부 등

II 감사결과

1. 기본재산 관리

□ 재단 본점용 부동산 매입 부적정

☞ 재단의 기본재산은 그 고유업무인 신용보증의 재산적 기초로서의 특성상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금융기관 예치, 국채 매입 등 단기 환금성 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09.6월 재단 본점건물을 매입하면서 본점 상주인원 및 장래수요를 감안한 청사 소요면적(3,700㎡ 정도) 보다 8배나 넓은 ○○○○○○○(주) 본사사옥(연면적 29,472㎡)을 사무실 임대 등 수익극대화를 이유로 출연금 등 기본재산으로 부당하게 매입하여 '09.12월말 현재 재단 기본재산 4,354억원의 22% 정도를 고정자산화하여 자금 유동성 약화 초래

❖ 부동산 매입시 매입가격, 매입조건, 대금지급 방법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재단에 가장 유리하도록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 적정가격 확보를 위한 감정평가 등 절차 없이 ○○감정원의 탁상감정 결과(945억원)만으로 매입가격(940억원)을 정하고, 통상의 부동산 거래관행과 달리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50%를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명도예정 시점보다 3개월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서도 잔금 지급후 매도자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총 면적의 53%)을 3개월간 무상 사용토록 재단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 3개월간의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 상실, 매매대금 지급재원 마련을 위한 대출금 이자 부담 등으로 재단에 총 16억원 상당 손실 초래

○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2. 급여 지급

□ 특별성과급 임의 지급 등 과도한 보수 지급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특별성과급은 사업비 절감, 수익증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그 밖의 사유에 대해 임의적인 특별성과급 운영은 불가한데도

- '05.11월 직원의 깨끗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해 재단의 투명·윤리경영을 보다 확고히 한다는 사유로 근거없이 '클린이행성과급'을 '06년 복리비 예산에 편성하여
- '06.9.12. 이사장 방침으로 직원상벌규정에 의거 징계를 받지 않은 직원에게 클린이행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전 직원(117명)에게 기본급의 50%씩 총 103,301천원을 지급하는 등 '06~'12년까지 7년간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클린이행성과급' 총 2,230,330천원을 부당하게 지급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자기계발비, 시간외수당 등과 같이 실비성격 또는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인상하거나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없고, 이를 폐지 또는 삭감한다는 사유로 기본급 등 고정급으로 전환이 불가한데도

- 실비 성격으로 지급해야 할 자기계발비를 '06~'08년까지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정액 지급하다가 '09년부터 직원 1인당 12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기본연봉에 편입시키고

- '09.1월 성과·역량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개선하면서 성과연봉의 대폭 확대로 개인 및 조직의 성과향상을 유인한다는 명목으로 실제 시간외근무를 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시간외근무 수당의 일정부분을 성과연봉 재원으로 부당하게 전환하여 시간외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부적정하게 지급

◆ 포상은 업무수행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해 선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09.4.30. 이사장 방침으로 전사적 특별지원업무에 대한 직원격려방안을 마련하여 특별포상금으로 전 직원에 대하여 특별한 공적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규직 1인당 1,000천원, 계약직 1인당 500천원씩 총 178백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고
- 같은해 7.24 또다시 대규모 특례보증 등 비상근무에 따른 직원 격려 포상금 명목으로 전 직원(187명)에게 기본급의 100%씩 총 370,717천원의 포상금을 부당집행하는 등 '07~'11년까지 5년간 총 1,343,786천원을 직원 격려 포상금으로 부당하게 지급
- 지급근거 없는 클린이행성과급 폐지, 포상금등 편성 집행시 관련규정 준수 '09년 연봉으로 부당전환된 자기계발비, 시간외근무수당 재원 재편성
 - ▶ 부당하게 예산을 편성 집행한 재단 관련자[○○○ 등] 문책

3. 인사관리

□ 비상근 전문위원(정책조사역) 운용 부적정

- ◆ 비상근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적격자를 위촉하고 재단 업무 추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 '09.9.3. 이사장 방침으로 비상근 자문위원(정책조사역)을 위촉·운영하면서 위촉대상자(○○○)의 전문성 확인없이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후
 - 특별한 역할수행이나 업무실적이 없음에도 자문료 명목으로 '09.10월 ~ '10.6월까지 9개월간 월 3백만원씩 총 27백만원을 부당 지급
- 비상근 자문위원 운용 폐지 등 재검토

□ 전산 경력직원(3급) 정원초과 부당채용

◆ 재단 「직제규정」 및 「인사규정」에 의하면 경력직원의 채용은 정원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특별채용 하여야 함에도

- '08.1월 전산 경력직원(3급)을 채용하면서 당시 일반직원 3급 현원이 정원보다 2명 초과되어 채용이 불가한데도
- 공개채용 방침(이사장)을 정하면서 인사규정에서 정한 3급 채용요건보다 과도한 자격요건을 설정하여 응시자 6명 중 5명이 자격요건 미달자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전원 면접을 실시한 후 '08.1.28. ○○○을 채용키로 확정하고 이사회 승인 없이 부당 채용

○ 경력직원 채용시 관련규정 준수

□ 계약직(단기근로자) 채용관리 부적정

◆ 재단 「단기근로자 운용요령」 및 「인사규정」에서 계약직의 채용은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 등을 공고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는 등 공개채용 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09~'12년도까지 총 415명의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채용인원의 30%인 124명을 공고절차 없이 채용부서장의 추천만으로 특별채용하는 등 계약직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

○ 계약직 채용시 공개채용 등 관련 규정 준수

4. 회계 및 계약

□ 업무추진비 등 부당집행

◆ '09.1월~'12.5월까지 법인카드로 집행한 업무추진비 등 총 1,705백만원 중 26백만원(1.5%)을 사적 용도 및 목적외 사용 등으로 부적정 집행

- 前이사장(○○○) 등이 호텔 멤버십 회원 가입비 결제, 업무 무관자에게 축하화환 전달, 심야시간·휴일에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으로 총 258건 15,835천원 사용
- □□지점장(△△△) 등은 각종 회의 관련 경비로 사용해야 할 회의비를 직원 생일 축하 케이크 구매, 직원 격려·회식비 등 목적외로 총 148건 10,221천원을 부적정하게 집행

○ 사적 사용한 업무추진비 등 15,835천원 환수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과소계상으로 경영성과 왜곡

- ◆ 재단 「회계규정」에 의하면 매년 결산시 구상채권 대손충당을 위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기말의 구상채권 잔액에서 재보증보전금을 차감한 금액에 구상채권 대손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10년 결산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계상하면서 재보증기관으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보전금까지 포함하여 재보증보전금을 산정하고, 대손율은 감사보고서 대신 내부 전산 자료에 따라 낮게 산정(재단 56.34%, 실제 59.67%)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적정충당금 50,389백만원보다 7,801백만원 적은 40,588백만원만 계상하는 등
 - '09~'11년까지 3년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과소계상하여 총 11,796백만원의 손실을 축소한 결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재단 경영성과 왜곡
- 2012년 결산시 재단 규정에 맞게 구상채권상각충당금 계상
 -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 부적정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정보통신부 내지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하면 소규모('08년 10억원, '09~'11년 20억원) 정보시스템 구축(유지보수 포함) 사업에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는데도
 - '08.2월 '2008년도 재단 업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면서
 - 대기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주)(당시 업무담당자인 △△△의 前근무처)를 부당하게 입찰에 참여시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업체로 선정하는 등 '08~'11년까지 4년간 계속하여 사업참여 자격이 없는 ○○○○○(주)와 부당하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 체결
-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문책

5. 신용보증 및 구상채권 관리

□ 보증심사 업무 소홀

- ◆ 타 시·도로 사업장 이전시에는 신용보증을 해지하되, 상환해지 할 경우 기업을 계속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기한연장이 가능함에도

- '11.6.27. (주)○○○○○○에 대한 보증기한 연장업무를 취급하면서 보증심사 당시 담당자(△△△)는 (주)○○○○○○이 제출한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와 직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한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11.6.14. 이미 본점을 서울에서 경기도(□□시 ▲▲▲구 소재)로 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기보증금액을 전액 해지하거나 상환해지시 사업영위 곤란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 기한연장품의서에 (주)○○○○○○의 사업장을 경기도가 아닌 서울시 ◎◎구 (전 사업장)로 기재한 후 팀장 결재를 받아 부당하게 보증기한 연장
- 기한연장 업무처리시 관련규정 준수, 재단 관련자(△△△) 문책

□ 필수입보대상자에 대한 연대보증인 설정업무 소홀

- ◆ 신용보증시 보증기업의 과점주주인 이사 등은 필수적으로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여야 하는데도
 - '09.7.29. (주)○○○○(대표자 △△△)에 대해 신용보증(보증금액 285백만원)하면서 (주)○○○○ 대표이사 동생의 배우자인 이사 □□□은 회사발행주식총액의 30%를 소유하여 대표이사 소유주식 65%와 합하면 소유주식 합계액이 발행주식 총액의 50% 초과하므로 필수입보대상인 과점주주인 이사에 해당되는데도
 - (주)○○○○에서 제출한 주주명세서에 과점주주인 이사 □□□과 대표이사가 “남남”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 믿고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지 않는 등 연대보증인 설정업무 소홀
- 신용보증시 연대보증인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구상채권 회수업무 소홀

- ◆ 보증채무 이행 등에 따른 구상채권 확보를 위해 채무관계자 소유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채무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임의상환을 요청한 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 '09.8월 ○○○○○○○(주)의 보증사고 발생으로 재단에서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구상채권(93,265천원, '12.6월 기준)의 회수업무를 취급하면서 '10.3월 ○○○○○○○(주)의 연대보증인(△△△)이 연 103백만원('09년 기준)의 급여를 지급받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국세체납(69백만원)이 있다는 사유로 가압류 조치를 유보하였고, 그 후 2년이 훨씬 지난 감사일('12.6월) 현재까지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채권회수 업무 소홀
- 기본재산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채권회수 업무 철저

6. 기 타

□ 직원 주택구입자금 대여 부적정

◆ 재단 「복지규정」에 의하면 주택구입자금은 무주택 직원이 주택마련을 위하여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대여할 수 있음에도

- '11.4.21. 주택구입자금을 신청한 ○○○(당시 △△△△부장으로 주택자금 취급 부서장)은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새로운 주택 구입으로 무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직원주택자금대여취급및관리요령」에서 대여대상을 대여일 현재 무주택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택구입자금 1억원을 부당 대여하는 등 무주택자가 아닌 자에게 총 2건 2억원의 주택구입자금을 부당 대여

○ 부적정하게 지급된 주택대여자금 회수,

- ▶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 ○○○) 문책

□ 중소기업육성기금 시설자금 지원기업 사후관리 미흡

◆ 시설자금 대출잔액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상환완료시까지 정기적으로 정상가동 여부 등을 점검하여 목적외로 사용시 회수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 시설자금을 용자받은 (주)□□□□□□(대표 △△△)와 9개업체는 시설자금을 용자(용자잔액 1,179백만원)받은 후 폐업하여 회수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12.6월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 특히, (주)○○○○○○○○(대표자 ▲▲▲)와 1개업체(용자잔액 292백만원) 현장점검일 전에 이미 국세청에 의해 직권폐업된 업체인데도 정상가동중인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회수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소홀

○ 시설자금 상환완료전 폐업기업에 대한 자금회수 조치, 관련자(○○○) 문책



감사결과 조치

1. 총괄

☞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은 市 경제진흥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통보하여

- 주무부서인 경제진흥실로 하여금 경영실태 및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책임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고
- 관련 직원은 비위 경중에 따라 엄정 문책

☞ 신분상 조치 : 34명(경징계 10, 주의 24)

☞ 행·재정상 조치

- 행정상 조치 : 48건(시정 15, 주의 28, 통보 5) ※ 현지시정 5건 별도
- 재정상 조치 : 7건 3,201백만원

☞ 제도개선 검토과제

- 포괄위임 등 각종 불합리한 재단 규정 정비 : 인사규정 등 5건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감사 결과

투자·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임

Ⅰ 감사개요

- ☞ 감사대상 : 9개 투자·출연기관
- ☞ 감사기간 : 2012.7.16. ~ 7.20. (5일간)
-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11명
- ☞ 감사범위 : '10.1.1.부터 '12.6월말 현재 업무추진비성 경비 집행실태
- ☞ 주요 감사분야
 -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여부
 - 경조사비 집행적정 등 예산목적 외 사용 여부
 - 예산집행절차 투명성 확보 여부
 - 업무추진비성격 경비의 변칙 예산편성 및 집행 여부
 - 기타 업무추진비 집행 시 개선 필요사항 점검 등

II 감사결과

1. 분야별 지적사항

1-1 업무추진비 이중 편성

접대비,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성격 경비를 업무추진비에 일괄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에 회의비, 잡비, 기타매입부대비, 광고선전비 등으로 분산 편성하여 업무추진비로 사용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 비목에 일괄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등 6개 기관에서는 업무추진비를 별도 편성하고서도, 다른 비목(잡비, 판매잡비, 기타매입부대비, 광고선전비 등)에 업무추진비로 편성해야할 예산(접대비, 간담회비, 직원 회식비 등)을 편성하여 사실상 업무추진비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함.

- ① ☆☆☆는 2011년 예산편성시 업무추진비 372백만 원을 편성하고서도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을 잡비 등 사업비 예산에 954백만 원을 편성하여 사용
- ② ★★★는 2011년 예산편성시 업무추진비 145백만 원을 편성하고서도 업무추진비 비목에 편성해야할 경영혁신활동비, 세미나 및 워크샵비용, 노사협의회 운영비 등을 잡비예산에 290백만 원을 편성하여 사용
- ③ ○○○는 2011년 예산편성시 업무추진비 179백만 원을 편성하고서도 업무추진비 비목에 편성해야 할 유관기관 교류협력비, 분야별 업무추진비 등을 잡비예산 속에 658백만 원을 편성하여 사용
- ④ ●●●에서도 2011년 예산편성시 업무추진비 51백만 원을 편성하고서도 업무추진비 비목에 편성해야 할 지역주민간담회, 기관운영비 등을 잡비예산에 167백만 원을 편성하여 사용
- ⑤ ◎◎◎은 2011년 예산편성시 접대비 51백만 원을 편성하고서도 업무추진비 비목에 편성해야 할 간담회비 등을 잡비예산에 139백만원을 편성하여 사용
- ⑥ ◇◇◇는 2011년 예산편성시 업무추진비 42백만 원을 편성하고서도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을 사업비 예산에 564백만 원(대외협력비 89백만 원, 회의비 457백만 원, 광고선전비 18백만 원)을 편성하여 사용

1-2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세출예산액 초과 집행

광고선전비를 업무추진비(접대비, 간담회, 직원 회식비 등)로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사용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행정안전부)」에 의하면 광고선전비는 신문, 방송광고, 선전비 등에 집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 ① ☆☆☆ 공사 ◆◆◆은 2009.1월부터 2011.2월까지 ☆☆☆공사 기업 이미지 홍보활동을 한다는 명목하에 광고선전비(홍보활동비) 예산 총 86,029천원을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접대비로 집행하였고,
 - 또한, 2009년도 홍보활동비 예산이 30백만원임에도 36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0년도에도 홍보활동비 예산이 36백만원임에도 45백만원을 집행
- ② ☆☆☆ 공사 ○○○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3월부터 2012.6월까지 총 434건 57,279천원을 목적외로 집행하였고
 - 2011년도 홍보활동비 예산이 36백만 원임에도 5백만원이 초과된 41백만원을 집행

1-3 법인카드 위법·부당 사용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휴일, 심야, 자택인근에서 증빙자료 없이 사용하는 사례 및 유흥주점 등 법인카드 사용 금지 업종에서 사용

□ 법인카드 사적용도 사용

- ④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87호 2011. 12. 23.)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사적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법인카드 사용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④ ☆☆☆외 7개 기관 임직원은 공휴일, 자택인근, 심야(24시 이후)에 업무와 관련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지출품의 때 업무와 관련 있는 것처럼 집행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262건 17,348천원을 사용

- ① ☆☆☆ 임직원 53명은 2010.1.1부터 2012.6.30.까지 심야(24시 이후)에 개인적 용도로 일반주점, 호프집, 카페일바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업무와 관련 있는 것처럼 허위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161건 10,199,360원을 사적사용
- ② ★★★★★공사 ○○○은 2010.02.07(일) 19시 57분 자택인근 ○○○(일식)에서 식사비로 250,800원을 결제하는 등 2010.2월부터 2011.2월까지 공휴일 자택인근에서 총 11건 2,943,820원을 사적사용
- ③ ○○○ 임직원 13명은 업무와 관련없이 심야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업무와 관련있는 것처럼 지출품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2010.1.1부터 2012.6.30.까지 총 18건 1,029,000원을 사적 사용
- ④ ◎◎◎기관 임직원 8명은 자택 인근에서 지인과 식사를 하거나, 퇴근 시 택시를 이용하고도 업무와 관련있는 것처럼 지출품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2010.1.1부터 2012.6.30.까지 총 48건 1,051,760원을 사적사용
- ⑤ ◇◇◇ 조직지원부 팀장(○○○)은 2010.2월부터 2011. 5월까지 업무용 차량(산타페)으로 출퇴근하면서 주유비 5건 377,600원을 수탁사업비에서 집행
- ⑥ ◆◆◆ 직원 5명은 퇴근시 택시를 이용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2010.1월부터 2012.6월까지 총 7건 101,500원을 사적으로 사용
- ⑦ ▲▲▲ 임직원 5명은 2010.1월부터 2012.6월까지 심야, 자택 근처 등에서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고서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총 12건 1,645,030원을 사적사용

□ 법인카드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87호 2011. 12. 23.)에 따르면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휴일, 관할구역을 현저히 벗어난 원거리 지역 사용,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사용시에는 집행품의, 출장명령, 사전 내부결재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함에도
- ◇ ☆☆☆공사 외 7개 기관에서는 업무와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공휴일, 심야(23시 이후), 관할구역을 현저히 벗어난 지역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도 집행목적, 접대대상 등 구체적인 입증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지출품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2010.1.1부터 2012.6.30.까지 총 291건 27,995,700원을 불투명하게 집행
 - ① ☆☆☆ 임직원 90명은 공휴일, 원거리 지역, 자택인근, 심야시간대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사용목적, 집행대상 등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업무관련자 접대비, 직원 간담회 등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2010.1월부터 2012.6월까지 총 255건 22,195,400원을 부당하게 집행

- ② ▼▼▼ (■■■■)은 심야시간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사용목적, 집행대상 등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업무관련자 접대비 등으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0.1.1.부터 2012.6.30.까지 총 11건 1,137,300원을 부당집행
- ③ ○○○공사 ♥♥♥은 2010.1.1부터 2012.6.30.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자택인근에서 업무 관련성 입증이 안 되는 자와 식사를 한 후 법인카드를 결제(총 결제금액 3,870천원)하고 지출품의 때 업무와 관련 있는 것처럼 지출품의서를 작성토록 하는 방법으로 법인카드 부당사용

□ 사용 제한 업종에서 법인카드 사용

-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87호 2011. 12. 23.)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유흥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등)과 레저업종(노래방, 골프장 등), 위생업종, 사행업종 등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 ◆ ☆☆☆공사 임직원 9명은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인 노래주점(단란주점 유사)에서 총 12건 3,270,000원을 부당사용

1-4 축의·부의금품(화환) 및 선물 집행 부적정

업무 관련성이 없는 외부기관 직원이나 집행대상이 아닌 자에게 경조사비, 축하화환, 선물 등 부당집행

□ 업무와 관련 없는 자에게 경조사비 지급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87호 2011. 12. 23.)에 따르면 축의·부의금품은 1건당 5만원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 간에 지속해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입증자료 첨부)하여야 함에도
 - ① ☆☆☆ 쏠쏘쏘는 경조사비(화환)를 집행하면서 업무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건설 관련 유관인사’ 등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352건 18,500,000원의 경조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
 - ② ★★★ 쏠쏘쏘는 ○○○대 교수(♣♣♣) 자녀결혼 축의금으로 100,000원을 집행하였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장 외 3인도 총 14건 1,100,000원의 경조사비를 직접 업무 연관성이 없는 자에게 부적정하게 집행

- ③ ○○○ 4개 부서는 前 부시장(●●●)의 자녀결혼에 축의금 100,000원을 집행하는 등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자에게 총 40건 2,500,000원의 경조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
- ④ ◇◇◇ ■■■은 지인(♫♫♫)의 자녀결혼에 축의금 100,000원을 집행하는 등 총 9건 850,000원의 경조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
- ⑤ ▲▲▲ ♫♫♫은 업무연관이 없는 前 *** 사장의 부친상 부의금으로 1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총 7건 700,000원을 업무 관련 없는 자에게 축·부의금을 집행
- ⑥ ♫♫♫ ***는 前 ○○○ 사장의 부친상 부의금으로 50,000원을 지급하는 등 총 24건 1,898,000원을 업무 관련 없는 자에게 경조사비로 집행
- ⑦ ◇◇◇ □□□은 前 시 직원(○○○)의 자녀결혼에 축의금 50,000원을 집행하는 등 총 3건 150,000원의 경조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
- ⑧ ♫♫♫ ●●● 등 2인은 前 사무국장(ㄱㄱㄱ)의 자녀결혼에 축의금 50,000원을 집행하는 등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자에게 총 3건 150,000원의 경조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

□ 지급대상이 아닌자에게 화환비 지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87호 2011. 12. 23.)에 따르면 축의·부의금 대신 화분 또는 화환을 지급할 수 있으나 가급적 5만원의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화환·화분 제공은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식, 관계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때에만 의례적인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음에도

- ① ☆☆☆ ♫♫♫ 등 5명은 지급대상이 아닌 기관직원의 승진, 영전 등에 경조화환비로 총 61건 5,960,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
- ② ★★★ 총무처 등 4개 부서에서는 첼리스트(■□■) 독주회 축하화환(150,000원)을 제공하는 등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축하화환비로 총 3건 400,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
- ③ ○○○공사 사장(■■■)은 ○○○ 사외이사(♫♫♫)의 개인출판기념회에 축하화환(100,000원)을 제공하는 등, 지급대상이 아닌 기관직원의 승진·취임축하 등에 축하화환비로 총 25건 2,330,000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고, 동 공사 ▽▽▽지사장(♫♫♫)은 前 관리이사의 법무사 개업 축하화환으로 100,000원을 집행하는 등 총 4건 400,000원을 부당하게 집행
- ④ ◇◇◇ ■■■는 ♫♫♫ 부친 개인출판기념회에 축하화환(100,000원)을 제공하는 등 지급대상이 아닌 기관직원의 승진·취임축하 등에 축하화환비로 총 34건 2,649,15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

- ⑤ ▲▲▲ 前 대표이사(◆◆◆)는 지인인 (주)쇼쇼자동차 회장(●●●)의 박사학위 취득에 축하화환(100,000원)을 제공하는 등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축하화환비로 총 4건 400,000원을 부당하게 집행
- ⑥ ☒☒☒ ❖❖❖은 지인인 서예가(▽▽▽)의 개인전에 축하화환(80,000원)을 제공하는 등 2명의 서예가 개인전에 축하화환비로 총 3건 250,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
- ⑦ ◆◆◆ ❖❖❖은 서울시 ❖❖❖팀장 영전 축하화환(50,000원)을 제공하는 등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축하화환비로 총 3건 150,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

□ 외부기관 명절선물비 부적정 집행

❖ 명절선물은 소속 상근직원 및 차 하급 기관 대표자 등에게 의례적인 수준(3만 원)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 ① ◆◆◆에서는 잡비를 집행하면서 용역업체 등 업무관련자 등에게 명절선물비(1인당 45,000원)로 총 5회 38,660,48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
- ② ◆◆◆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사외이사 등에게 명절선물비(1인당 5만 원~10만 원)로 총 6회 11,968,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
- ③ ○○○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청사관리자, 자문위원 등에게 명절 선물비(1인당 47,000원)로 총 7회 6,253,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

1-5 회계처리 기준을 맞추기 위한 변칙적 회계 처리

한도사용 초과를 숨기기 위해 분할결제하거나, 회계서류를 허위작성·처리하는 등 편법집행

□ 한도사용 초과를 은폐하기 위해 분할결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87호 2011. 12. 23.)에 따르면 건당 50만 원 이상은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고, 결제시에는 사실에 부합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 ① ❖❖❖는 2010.6.9(수) 21시 28분 용산구 보광동에 있는 00장어(일반음식)에서 간담회비로 1,080,000원을 사용하고, 2회에 걸쳐 분할결제(500천원, 580천원)하는 등 총 4건 4,868,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

- ② ○○○○는 2010.12.21(화) 19시 21분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일반음식)에서 간담회비로 1,380,000원을 사용하고, 460,000원씩 3회로 나누어 분할결제 하는 등 총 5건 4,131,64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
- ③ ○○○○에서는 2010.1.27(수) 21시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일반음식)에서 간담회비 명목으로 1,129,700원을 사용하고, 3회에 걸쳐 분할결제(500,000원, 500,000원, 129,700원)하는 방법으로 총 17건 14,236,5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

□ 1인 접대비용 한도 초과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87호 2011. 12. 23.)에 따르면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 ① ○○○○ ◇◇◇과는 2010.9.29(수) 부서운영비로 직원 8명이 회식을 하면서 총 466,000원(1인당 58,250원)을 사용하여 1인당 접대단가(4만 원)를 초과함에도 초과집행 사유를 명기하지 아니하는 등 총 14건 5,384,62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
- ② ◆◆◆ ○○○○본부는 2010.5.27(목) 간담회 개최시 간담회 참석자 5명이 358,000원(1인당 71,600원)을 사용하여 1인당 접대단가(40,000원)를 초과하였음에도 초과 집행 사유를 명기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2010.5월부터 2010.12월까지 총 10건 3,065,000원의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
- ③ ○○○○○ 숲소숲부는 2010.3.18(목) 간담회 개최시 직원 12명이 861,260원(1인당 71,770원)을 사용하여 1인당 접대단가(40,000원)를 초과하였음에도 초과집행 사유를 명기하지 아니하는 등 2010.10월부터 2012.6월까지 총 3건 3,244,260원의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

❖ 회계규정 부적정 운영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87호 2011. 12. 23.)에 따르면 현금 지출은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가능하며, 정당한 채주 이외의 예산집행은 금지하고 있음에도

- ○○○○에서는 집행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회계규정 및 시행내규에 전도금 교부시 전도금 취급담당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운영하여 상위 규정을 위배

❖ 「※※※ ※※연구소 운영규정 제33조」에 의하면 간접연구경비(연구비 총액 기준 10% 계상)는 기타 연구 활동 및 연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경비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 ❖❖연구소 회계담당(●●●)은 연구소장 및 연구실장에게 ❖❖연구소 검직에 대한 보전수당을 지급하고자 '10년도 ❖❖연구소 운영활동지원비에서 매월 100만 원 (소장 600천원, 실장 400천원)씩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기관장 방침을 규정에 맞지 않게 수립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토록함

□ 기타 회계처리 부적정

- ❖ ☆☆☆외 7개 기관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후 회계처리하면서 건별 집행품의를 하지 않고 매월 1회 일괄 지출품의만 하는 등 회계처리 부적정
- ❖ ◆◆◆ 前 ♡♡팀장(▣▣▣)은 사실에 부합하게 회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문화상품권 60매 및 USB 15개를 구매하고도 사실과 다르게 크레파스 등 5종을 구매한 것으로 회계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고,
 - 또한 수탁사업비에서 10.12.30(목) 중구 남산동2가 소재 식당에 600,000원을 행사 명목으로 선결제하고, 그 중 260,000원을 직원회식비로 부당사용
- ❖ ◎◎◎ 연계사업팀(♡♡♡ 외 1인)은 제주 해비치 아트페스티벌 간담회 비용으로 278,000원을 결제하면서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하여야 하나, 여비교통비에서 집행하는 등 총 6건 1,213,200원을 목적외 사용

Ⅲ 감사결과 조치

1. 조치사항 총괄

☞ 신분상 조치 : 총 28명(징계 4명, 경고 18명, 주의 6명)

- 투자기관 - 21명(징계 3, 경고 13, 주의 5)
- 출연기관 - 7명(징계 1, 경고 5, 주의 1)

☞ 행·재정상 조치

- 행정상 : 55건 (시정 18, 기관주의 28, 개선 9)
- 재정상 : 56,370,430원 환수

거울프로젝트 3
투자·출연기관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 투자·출연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발행일	2013년 4월
발행	서울특별시
발행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기획/편집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편집인	송병춘 감사관 이해우 감사담당관 조미숙 감사총괄팀장, 임지훈
디자인/인쇄	디자인세륜

©서울특별시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